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중심으로



2023년 2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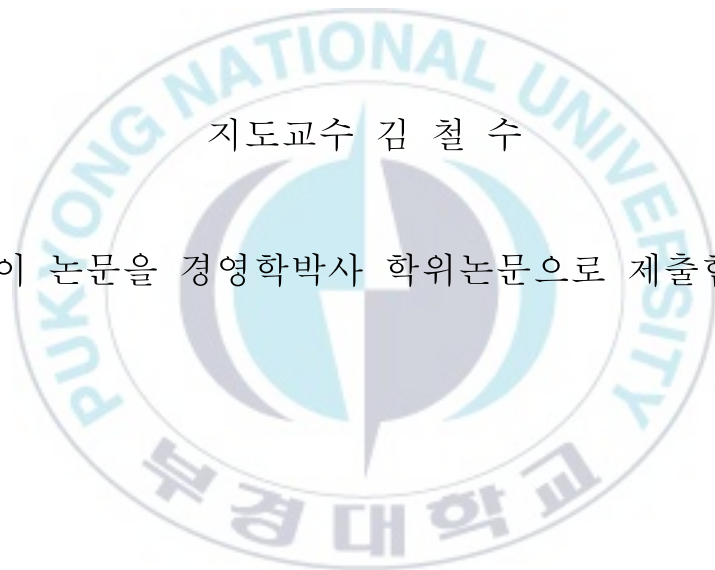
오 동 민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철 수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오 동 민

오동민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17일

주 심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인)

위 원 경제학박사 이 양 기 (인)

위 원 경제학박사 신 학 승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안 태 전 (인)

위 원 경제학박사 김 철 수 (인)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3.	선행연구	7
II.	서류 일치성 판단의 본질과 당사자의 이해 균형	14
1.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변천	14
2.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본원칙	19
가.	신용장 특성에 따른 은행의 역할과 책임	19
나.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의 한계	31
3.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신용장 거래의 지향 가치	39
가.	신뢰성	39
나.	합리성	42
다.	공정성	44
III.	이해 균형을 위한 가치관점의 사례 검토	49
1.	신용장의 신뢰성에 관한 사례	51
가.	신용장 지시와 확실성	51
나.	기대이익과 예측가능성	56
2.	신용장 거래의 합리성에 관한 사례	65
가.	합리적 수준의 유연성	65
나.	변화를 수렴하는 수용성	72
다.	서류의 진정성	79
3.	이해 균형 조절을 위한 공정성에 관한 사례	86
가.	수익자 측 공정성 조절 수단	87
나.	발행의뢰인 측 공정성 조절 수단	91

IV. 이해 균형을 고려한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의 재정립과 UCP 개정 방안.....	95
1. 신용장의 신뢰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95
가.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확실성.....	95
나. 기대이익의 합치를 기대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	100
2. 신용장의 합리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105
가. 서류의 정규성과 기능성을 보충하는 유연성.....	105
나. 사적자치의 인정과 관행의 수용성.....	110
다. 서류 발행자의 책임관계와 서류의 진정성.....	115
3. 신용장의 공정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121
가. 수익자 측 이익 보호.....	121
나. 발행의뢰인 측 이익 보호.....	124
4. 이해 균형 중심의 지향 가치별 일치성 판단 기준.....	128
가. 신용장 거래 단계별 최적 지향 가치 적용.....	128
나. 지향 가치 강화 목적 UCP 개정 제언.....	131
V. 결 론.....	134
참고문헌	138
국문요약	151
ABSTRACT	153

- 표 목 차 -

[표 1] 우리나라 주요 무역 결제방식의 변화	14
[표 2] 우리나라 수출 결제방식의 변화	16
[표 3] 우리나라 수입 결제방식의 변화	17
[표 4] 신용장 특성에 따른 이해 균형	25
[표 5]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과 목적	31
[표 6] 2007년 UCP 600 개정이후 2021년까지 ICC의 Opinon 분포	50
[표 7] 신뢰성 관련 사례별 쟁점	64
[표 8] 합리성 관련 사례별 쟁점	86
[표 9] 공정성 관련 사례별 쟁점	94
[표 10] 신용장 사용방법에 따른 환어음 유무	103
[표 11] 신뢰성 기반 ICC 의견별 당사자의 이해 균형과 시사점	104
[표 12] 합리성 기반 ICC 의견별 당사자의 이해 균형과 시사점	120
[표 13] 공정성 기반 ICC 의견별 당사자의 이해 균형과 시사점	127
[표 14] 신용장 거래 단계별 지향 가치의 적용성	128
[표 15] UCP 등의 개정 제언 정리표	131

- 그림 목 차 -

[그림 1] 서류의 일치성 판단 가치의 균형	39
[그림 2]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공정성 조절 수단	44
[그림 3] 제시된 AWB의 운송인 표시	76
[그림 4] 제시된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의 서명	81
[그림 5] UCP 500, Position Paper No. 4. 기명대리인 서명 방법	116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국제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은 급부로서 물품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 의무를 동반한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행 위험인 “신용위험(credit risk)”¹⁾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의(good faith)만으로는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당사자의 상업신용(commercial credit)을 은행이 개입하여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매개로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²⁾시켜 상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장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매수인의 자기신용 하에 발행된 신용장이 주를 이루었으나,³⁾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 이후 상공업의 발달과 무역량의 확대⁴⁾에 따라 매수인은 한정된 자금력으로 인해 신용장 발행능력의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수입상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누리고⁵⁾, 금융기관은 관련 금융비용을 수입하게 되어 신용장의 활용성을 확장하였으며,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국제매매거래의 결제방식⁶⁾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의 무역결제방식은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⁷⁾에서 “구매자 시

1) 배정환 (2014), 무역대금결제실무, 도서출판 삼영사 p.102.

2) 윤광운 (2012), 무역실무와 경영 제2판, 도서출판 탐북스 p.218.

3) 이대우·양의동 (2014), 개정8판 신용장론, 두남 p.63.

4) 이대우·양의동 (2014), 상계서, p.63.

5) 20세기 초반 상인은행(The Merchant Bank)을 대신해서 자금력이 풍부한 전업 은행들이 무역어음 인수나 화환신용장업무에 진출하면서 신용장거래가 확대됨.
: 이대우·양의동 (2014), 상계서 p.63.

6) 배정환 (2014), 전계서, p.28.

7) 판매자 시장 (seller's market) : 가능한 공급보다 증권이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시장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s://url.kr/sb249h>, (접속일자 : 2022.06.05.)].

장(buyer's market)"⁸⁾으로의 전환"⁹⁾¹⁰⁾¹¹⁾이라는 세계무역환경 변화의 기조에 발맞추어 신용장 또한 “거래교섭력의 비대칭성”¹²⁾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

무역거래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의 관계에서 수출상이 대금결제방식으로 신용장을 채택한다는 것은 수용 불가능한 재무적 위험(unacceptable financial risk)을 내포한 수입상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수출상이 신용장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입상의 신용위험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출상은 단지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만으로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은행을 통하여 신용장대금을 할인받음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수입상은 자신의 신용도(creditworthiness)에 불문하고,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으로의 신용 치환 아래 “수입대금의 결제 시기 조절”¹⁴⁾을 통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운송서류를 포함한 서류의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출상의 화물선적에 대한 의무 이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상과 수입상은 무역대금결제 메커니즘에서 신용장이라는 매개체의

8) 구매자 시장 (buyer's market) : 공급이 초과되어 낮은 가격과 구매자의 의도에 따른 조건이 성립되는 상황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s://url.kr/sb249h>, (접속일자 : 2022.06.05.)].

9) 배정한 (2014), 전게서, p.25.

10) 이윤지·이길남 (2018), 신용장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장 거래수수료 절감 방안 : 한국에서의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33(2). p.27.

11) 김병학·홍길중 (2006),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8(3), p.109.

12) 유 천 (2018),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 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상호성-유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4). p.292.

13) Roberto Bergami (2011), *Risk Management in Australian Manufacturing Exports: the Case of Letters of Credit to ASEAN*, Victoria University, Australia. Thesis of Ph.D., p.129.

14) 자신의 신용도가 열악할 경우, 선지급이 요구되나, USANCE 신용장을 활용하여 연불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선택은 필연적 결과물이다. 두 당사자는 공통적으로 각자 거래은행의 개입을 통하여 자금 유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서류의 일치성을 제어한다면, 수출상의 대금회수위험과 수입상의 수입물품 인수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용장만의 이점이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거래의 근간인 매매계약과 발행의뢰인으로부터의 주장과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성”¹⁵⁾ 그리고 서류만을 검토 대상으로 한정하는 “추상성”¹⁶⁾을 정의함에 있어 그 주체는 무역거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은행이다. 발행은행은 신용장 상의 발행의뢰인인 “수입상의 지급대리인”¹⁷⁾으로서 역할을 하고, 발행은행으로부터 결제(honour)·매입(negotiation)을 하도록 수권받은 지정은행은 수출상의 청구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신용장상에서 독립성과 추상성을 향유하면서, 신용장의 지급권과 청구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즉, 신용장 서류심사 기준인 엄밀일치의 기준이 그것이다. 발행은행과 지정은행은 대리권의 수입인인 자신과 위임인을 위험에서 보호하면서, 서류의 일치성을 전제로 신용장의 최대 효익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발행은행은 지급의 가부를 결정하며, 신용장거래의 실질적 종결권을 가지기에 서류일치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엄밀일치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띤다. 수출상으로부터 신용장 요구 서류를 제시받아 청구하는 지정은행은 기본적으로 엄밀일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최초 제시서류의 약 70%에 달하는 서류의 불일치비율”¹⁸⁾에서 시작하여 여러 번의 치유과정을 반복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지만, 당사자의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은행관습에 대한 이해도 차이 또는 신용장조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서류 일치성의 완전무결함을 기대하기는

15) UCP 600, Article 4, a.

16) UCP 600, Article 5.

17) 강호경·임목삼 (2009),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1, p.8.

18) UCP 600, Introduction.

어렵다. 따라서 서류 불일치에 기인하여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을 통보받은 지정은행은 반드시 지급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으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할 것으로 엄밀일치의 기준을 잣대로 지급거절 사유에 대해 아무런 항변없는 전적인 동의는 사실상 어렵다. 이는 수출상과 수출상의 청구대리인인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기원과 발전은 서류의 일치성 판단에 있어 엄밀일치의 기준으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면서,¹⁹⁾ 신용장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왔다. 그러한 토대 아래,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에 있어 대금결제수단으로 송금방식 선호, 신용장 거래 수수료 부담, 국내외의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축소, Open Account와 같은 송금방식에 대한 무역금융 제공 그리고 계속거래 기업 간의 신뢰 구축에 따른 송금방식으로의 선회 등의 사유로 신용장의 활용성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서류심사의 효율성과 자기방어라는 관점만을 강조한 결과라 하겠다.

신용장 초기에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은 추심에 의한 후불지급으로 발행은행의 편향된 권한에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지정은행의 신규수익원 창출 목적 아래 신용공여를 통한 수출대금의 선지급²⁰⁾이 확대되었으며, 지정은행 또한 발행은행의 고객사인 이유로 상호 우호적인 견지에서 유연한 서류 검토기준의 소요가 대두되었다. 서류심사 기준의 한 축으로 엄밀일치의 기준과 더불어 상당일치의 기준이 자리잡게 된 배경이다.

그간의 서류일치성에 관한 기준의 양분된 입장은 발행은행의 엄밀일치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지정은행의 하자의 경중에 불문한 금반언과 신의칙에 대한 과한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이 또한 은행 자신과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각자의 고객사인 신용장의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를 대변하고자 하는

19) Toyota Tsusho Corp. v. Comerica Bank, 929 F.Supp. 1065 (1996).

20) 수출상과 수출상의 거래은행이자 신용장의 지정은행의 신용공여 계약에 따라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불문하고 신용장의 청구대금을 선지급하여 수출상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있다.

것이며, 기초 거래와 대금결제수단인 신용장 거래에 있어 당사자의 균형점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신용장통일규칙이 주창하는 바는 “당사자 간의 이해 균형”²¹⁾으로 대변된다. 서류의 독립·추상성이라는 신용장의 특징은 “당사자 권리 보호의 균형”²²⁾으로 틀을 이루고 있으며, 서류심사의 일반 해석원칙의 관점에서 엄밀일치의 기준과 상당일치의 기준이 양립하며 무역시장에서의 변화에 기대어 “이익 균형”²³⁾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왔다.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자 신용장 생태계에 녹아든 신용장의 특징과 서류심사의 기준이 무역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을 보호하고 무역을 촉진시키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성상들이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대리인인 은행 즉, 발행은행, 지정은행은 각각의 고객사인 수출상과 수입상 앞 신용공여에 대한 별도의 구상권을 가짐에도 과도한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 계약 당사자들에게 신용장 사용을 억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관행이 온전히 축적되고 법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UCP와 ISBP 상에 규정된 기준을 토대로 신용장 거래 현장에서 서류심사기준의 인지부조화로 발생하는 괴리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ICC 은행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를 기반으로 엄격·상당일치라는 양립된 원칙의 틀을 벗어나 신용장 거래가 지향하는 가치 특성인 신뢰성·합리성·공정성을 토대로 신용장 거래가 당사자의 이해 균형에 닿을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신용장의 활용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21) 김기선 (2011), 신용장거래관습 최적편성 방안의 모색 : UCP600 제14조 (b)항의 재해석,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9. p.112.

22) Harvard University (1980), Fraud in the Transaction: Enjoining Letters of Credit During the Iranian Revolution, *Harvard Law Review*, 93(5), p.1001.

23) 서지민 (2018), 영미 판례법상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 - 2016년 미국의 Margo International v. LHB AG 판결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32(1). p.275.

더불어, 은행에 편향된 과도한 무게중심이 신용장의 실수요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에게 조금이나마 옮겨갈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 필수 지침서인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행(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ISBP 745)이 표방하고 있는 바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들 신용장 준거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신용장 관련 단행본과 학술지 그리고 구속력을 가지는 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문헌적 고찰을 하였으며, 신용장의 지향 가치 특성을 기반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원 판단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ICC Banking Commission)의 공식의견(official opinion)을 통한 사례별 유권해석을 고찰하는 사례분석방법을 병행하였다.

신용장의 특성 및 서류심사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측면과 서류 일치성에 관한 사례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한 상무적 측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논문은 국회전자도서관, E-article, DBpia, Riss 등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경유하여 수집하였으며, 국외 자료의 경우는 WestlawNext의 Secondary Sources와 HeinOnline을 통해 확보하였다.

국내 판례는 대법원 중합법률정보 및 CaseNote를 이용하였으며, 국외 판례는 WestlawNext 및 Casemine을 통하여 검색하였다.

ICC's Opinion은 ICC digital Library를 통해 2007년 UCP 600의 개정 이후 2021년까지 개진된 전체 Opinion 총 216개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중 당사자의 이해 균형과 신용장 거래의 가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26개의 사례를 엄선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중심으로 연구의 전반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행 연구를 통해 서류 일치성 판단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2장은 신용장 거래의 이해를 돕고자 서류 일치성 판단의 본질인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추상성과 일치성 판단의 경향과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이루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신용장의 지향 가치들을 엄선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엄선한 신용장의 지향 가치인 신뢰성, 합리성, 공정성 측면에서 ICC 은행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사례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에 비추어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지향 가치를 신용장 거래 단계별로 대입하여 적용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UCP 등의 개정 제언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과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20세기 초 팽배하던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하였으며, 통일되지 않은 신용장 관련 규칙과 자국 중심의 배타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세계무역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²⁴⁾ 1933년 ICC가 UCP를 제정한 가장 큰 이유도 신용장 관행에 관한 개별 국가의 국내법 우선 기조에 의하여 야기되는 혼동을 완화시키는데 있었다.

24) UCP 600, Foreword.

그 목적에 부응하고자 무역 시장 변화의 수용 노력에 더하여 “거래당사자의 이익 균형”²⁵⁾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의 판례 등을 토대로 최초 제정 이후 6차에 걸쳐 현재 UCP 600 버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신용장 관련 규칙은 관습법과 판례법을 기초로 제정한 규칙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의 통일상법전과 같은 신용장 관련 법률을 법제화한 경우가 극히 소수인 현실에서 법률보다는 관행과 관습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원의 수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 조정 수단으로 관습법을 형성하는 ICC Banking Commission의 신용장 전문가 집단의 의견, 판례법의 근간이 되는 신용장 관련 국·내외 판례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신용장 거래의 신뢰성·합리성·공정성 그리고 법리적 성격을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신용장의 유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접근 방법 중 선행 연구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신용장의 특성 및 서류심사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측면의 연구, 둘째, 서류 일치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시사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실무적 측면의 연구이다.

먼저, 신용장의 특성 및 서류심사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측면의 연구를 전개한 강호경·임목삼 (2009)은 신용장 서류심사의 엄격성과 그의 예외인 엄격일치의 완화가 시대적인 요구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엄격일치론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제통일규칙 및 국내외 판례를 통해 상당일치론을 토대로 한 심사의 기준과 합리적인 신용장 거래관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상당일치론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일치에서 상당일치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은행의 객관적·합리적이면서도 면밀한 서류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⁶⁾

25) 강원진 (2011), 신용장거래에서 사기 및 서류위조에 따른 지급이행과 지급거절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9, p.160.

26) 강호경·임목삼 (2009),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1.

강원진 (2011)은 신용장거래는 독립성·추상성에 기인하지만 사기 및 위조에 대해서는 UCP 및 ISBP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영미법 하의 판례를 통해 사기 또는 기만이 있는 경우 은행에 인수·지급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fraud rule을 영미법 판례를 통하여 조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독립성·추상성의 원칙과 fraud rule의 적용은 상충관계에 있다.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존중됨으로 인하여 발행의뢰인은 사기가 있음에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선의의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상업적 특수성과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법의 통일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상충되는 원칙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²⁷⁾

김상조·이재달 (2013)은 서류심사 기준의 대세인 엄밀일치원칙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당한 주의 의무, 완전성 요건, 문면상의 정규성 요건, 서류 상호 간의 모순성, 연계성 요건, 상태성 요건,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용인되는 요건으로 분류 및 분석하였으며,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엄격일치의 완화라는 변화에 대하여 서류제시자인 수익자와 서류심사자인 은행에게 서류일치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²⁸⁾

김철수 (2016)는 화환신용장의 서류검토와 관련하여 기본원칙인 엄밀일치원칙은 기능적인 범위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물품의 동일성 그리고 비서류적 요건은 계약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미법 하의 판례와 UCP 600과 ISBP 745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 물품 일치성에 대한 엄격성의 완화와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부분적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신용장 활용성 강화 목적 아래 그러한 실정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했다.²⁹⁾

27) 강원진 (2011), 신용장거래에서 사기 및 서류위조에 따른 지급이행과 지급거절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9.

28) 김상조·이재달 (2013),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우리나라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9(2).

29) 김철수 (2016),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엄밀일치원칙에 관한 재고찰, 국

서지민 (2018)은 Mago International v. LHB AG 사건을 토대로 신용장의 서류심사 해석원칙에 관한 엄격일치의 원칙의 법이론 및 국내외 판례들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시된 서류의 일치성 판단에 있어 개별적인 서류 하나만이 아닌 서류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써 파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례법 이론을 적용할 것과 이익균형의 보장 측면에서 신용장 서류 심사의 상당일치원칙의 본질적 기능과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였다.³⁰⁾

Arthur Fama, Jr. (1985)는 신용장 발행은행의 서류심사에 있어 발행은행의 재량권의 부여와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발행은행과 매수인의 보호장치로서 정확히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발행은행과 매수인의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엄밀일치의 원칙과 엄밀일치의 원칙의 완화적인 접근법으로 수익자에게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일치의 원칙이 가지는 기술적 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칙적 접근법으로 분기(分岐)된 기준(The Bifurcated Standard)을 내세우고 있다. 이 분기된 기준은 발행은행과 수익자 간에서는 엄격한 일치를 적용하고,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 간에 있어 실질적 일치를 요구함으로써 은행에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선택의 자유(leeway)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은행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융통성 없는 기계적인 원칙의 적용보다는 서류의 명확한 일치를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분기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기제로서 신용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가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¹⁾

Steven C. Rattner (1985)은 신용장의 일치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대다수의 법원은 신용장에 포함된 모든 조건에 대하여 정확한 일치를 요구

제상학, 31(2).

30) 서지민 (2018), 영미 판례법상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엄격일치원칙의 적용과 한계 : 2016년 미국의 Mago International v. LHB AG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2(1).

31) Arthur Fama, Jr. (1985), Letters of Credit: The Role of Issuer Discretion in Determining Documentary Compliance, 53 *Fordham L. Rev.* 1519.

하는 기계적(mechanical) 엄밀일치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동 원칙은 신용장의 신뢰성을 주요 강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반면, 상당일치의 원칙은 서류의 일치 기준을 단순화시켜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발행은행의 확실성에 위해가 되는 요소로 단순히 서류를 취급하는 대신 발행은행이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건의 일치성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신용장의 기본 법칙을 위배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감퇴시키면서, 부당한 지급거절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발행은행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양분된 원칙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용장이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한 공정한 장치로 유지하는데 핵심 요소인 신뢰성(reliability) 과 지급보장(payment assurance)을 고려한 경제적(economic) 엄밀일치원칙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³²⁾

Mohd Hwaidi (2014)는 매도인과 지정은행은 요구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나 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당사자의 의무이행 강제력을 부과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위험 즉, 당사자의 의무이행 회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영국법하에서 엄밀일치원칙의 기본적 성격과 적용 범위 그리고 UCP 600과 영국법 조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엄밀일치원칙은 국제은행관행에서 보여주는 엄밀일치의 완화라는 기초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의무이행 보장에 대한 불균형성과 초국가적인 기준 그리고 일치성에 관한 방향성 등은 UCP 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³³⁾

둘째, 서류 일치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시사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상무적 측면의 연구로 김재명 (2007)은 화환결제수단 분

32) Steven C. Rattner (1985), Letters of credit : A return to the Historical Documentary Compliance Standard, 46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457.

33) Mohd Hwaidi (2014), The story of the English strict compliance principle in letters of credit and its consistency with the UCP.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Regulation*, 29(2).

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하나인 ICC DOCDEX의 화환신용장부 운송서류와 관련한 사례를 기준으로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비교하여 DOCDEX 결정과의 충돌 여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운송서류 기재사항의 일치성 정도 즉, 엄격일치와 상당일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축적된 ICC DOCDEX·Opinion 등이 UCP 및 ISBP 에 녹아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³⁴⁾

김종철 (2009)은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신용장 및 여타 서류 상의 물품명세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 분석에 더하여 물품명세 기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부가함으로써 일치성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³⁵⁾

전순환 (2013)은 ISBP 745 상 상업송장의 개정 내용과 심사기준 그리고 기반 사례를 분석함과 더불어 계속적인 심사기준을 구축할 것과 통일된 송장양식의 부재에 따르는 혼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심사원칙에 벗어나는 송장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였다.³⁶⁾

한낙현 (2016)은 컨테이너화물 운송의 실태를 근거로 선하증권에 대한 본선적재부기는 누구에게 필요하며 누가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은행의 거래관행에 따른 효율적 서류심사를 위하여 복합운송에 경우에도 수취식 선하증권이 아닌 선적식 선하증권을 신용장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불합리를 타개할 담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역설했다.³⁷⁾

이정선 (2017)은 한·중의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 절차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대(對)중국 신용장 발행과 지급거절 통지 시 주의사항과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34) 김재명 (2007), ICC DOCDEX 사례로 본 화환신용장부 운송서류 기재사항의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9.

35) 김종철 (2009), 화환신용장거래에서 물품명세의 충족여건 - 신용장과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24(3).

36) 전순환 (2013), ISBP 745에서 송장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관세학회지, 14(3).

37) 한낙현 (2016), 화환신용장거래의 통관절차 상 수취 B/L에서 요구되는 “본선적재부기”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17(4).

하였다. 이에 신용장조건으로 분쟁 발생 시 중재 문언을 삽입할 것과 지급 거절통보 시 하자사항이 단일 통지(single notice)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³⁸⁾

조성란 (2019)은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의뢰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서류적 조건을 부가하는 사례를 살펴 신용장의 국제적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신용장 이용을 저해시키는 비서류적 조건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 신용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비서류적 조건의 대처에 대한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있을 UCP 개정에 비서류적 조건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를 제안하였다.³⁹⁾

이상 선행 연구의 효용성으로는 신용장 관련 규칙 특히, UCP를 위시하여 제정된 국제규칙과 축적된 국제무역관행에 대하여 이론적·법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ICC 공식의견과 분쟁 조정 사례, 법원 판례와 같은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용장의 본질에 기인한 유효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서류 심사 기준 및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용장 거래에서 각각의 연구 주제와 목적에 따라 적의하게 시도된 것이라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의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무역 거래의 대금 결제방법으로 신용장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당사자⁴⁰⁾의 관점에서 신용장이라는 수단 선택의 당위성을 뒤로 한 채 선례를 바탕으로 이론적 완결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38) 이정선 (2017),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무역학회지, 42(2).

39) 조성란 (2019), 신용장의 비서류적조건 허용사례로 본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83.

40) 매도인(수익자) 및 매수인(발행의뢰인)은 신용장을 결제 수단으로 채용할 지를 고민하며, 발행은행은 신용장 발행의뢰의 거절 여부, 지정은행은 신용장의 사용에 따른 선지급 또는 추심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Ⅱ. 서류 일치성 판단의 본질과 당사자의 이해 균형

1.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변천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결제 방식은 크게 “송금방식”⁴¹⁾, “신용장 방식”⁴²⁾, “추심방식”⁴³⁾ 그리고 “기타방식”⁴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 및 수입 통계가 제대로 산출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년간의 무역 결제방식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의 지속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출결제방식은 1999년 송금방식 40.75%, 신용장방식 30.97%의 비중으로, 수입결제방식은 2003년 송금방식 47.87%, 신용장방식 38.84%의 비율로 각각의 결제방식 비중에서 신용장방식과 송금방식 간의 역전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최근년인 2021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수출결제방식 중 송금방식 70.26%, 신용장방식 7.58%를 기록하였고, 수입결제방식 중 송금방식 75.29%, 신용장방식 13.5%를 기록하여, 송금방식의 압도적인 활용과 신용장방식의 낮은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주요 무역 결제방식의 변화

[단위:%]

구 분	수출 결제 방식 ⁴⁵⁾				수입 결제 방식			
	송금	신용장	추심	기타	송금	신용장	추심	기타
2021년	70.26	7.58	8.29	13.87	75.29	13.50	2.24	8.97
2020년	69.29	7.94	8.46	14.31	73.57	13.70	2.62	10.12
2019년	68.67	9.20	8.97	13.15	72.55	15.53	2.44	9.47

41) 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 T/T, M/T + 사후송금방식 COD, CAD)

42) 신용장방식 (일람출급 신용장 + 기한부 신용장)

43) 추심방식 (D/P + D/A)

44) 기타방식 (무상거래, 기타유상, 계좌이체(상호계산방식), 분할영수(지급)방식, 임가공 지급방식의 위탁(수탁)가공 무역

2018년	68.28	9.46	7.79	14.46	73.58	15.23	2.63	8.55
2017년	68.91	9.16	8.14	13.78	72.87	15.80	2.75	8.57
2016년	67.06	9.45	9.45	14.04	69.73	17.76	2.94	9.57
2015년	65.55	10.06	9.58	14.80	69.47	18.83	2.57	9.13
2014년	64.52	12.18	9.40	13.90	71.21	19.68	2.18	6.93
2013년	64.70	12.54	9.27	13.49	70.72	20.27	2.62	6.38
2012년	63.63	13.71	9.39	13.27	69.43	21.42	3.18	5.96
2011년	62.44	15.02	8.20	14.34	68.05	23.03	3.13	5.79
2010년	60.20	15.57	7.31	16.92	66.22	23.54	3.48	6.75
2009년	59.85	16.37	6.56	17.22	64.06	25.24	3.57	7.13
2008년	58.48	18.86	6.94	15.71	63.36	27.14	3.44	6.06
2007년	57.35	18.52	8.24	15.89	61.05	28.21	3.82	6.92
2006년	56.02	18.93	9.79	15.26	58.69	29.96	4.24	7.10
2005년	54.20	19.93	11.27	14.60	52.24	35.10	5.20	7.46
2004년	52.68	21.49	12.76	13.07	50.41	37.31	5.67	6.61
2003년	50.12	22.89	15.18	11.81	47.87	38.84	6.84	6.45
2002년	47.89	24.10	17.10	10.90	42.59	43.99	7.37	6.04
2001년	44.60	26.77	18.87	9.77	35.29	49.93	8.53	6.25
2000년	42.92	27.58	22.64	6.86	28.52	54.27	10.15	7.05
1999년	40.75	30.97	23.73	4.55	21.94	56.02	13.11	8.93
1998년	37.16	38.83	20.35	3.66	16.40	62.09	12.56	8.95
1997년	29.35	43.15	24.88	2.62	10.35	76.09	7.73	5.8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재구성

우리나라 수출결제방식의 변화 중 주목할만한 점은 1998년, 2009년, 2015년 그리고 2020년의 기록이다. 1998년은 수출총액 0.03% 감소, 송금방식 0.23% 증가 그리고 신용장방식은 0.13%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은 수출총액 0.14% 감소, 송금방식 0.12% 감소와 신용장방식 0.25%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수출총액 0.08% 감소, 송금방식 0.07% 감소, 신용장방식 0.24% 감소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45) 연도별 송금, 신용장, 추심, 기타 항목 합산 시 100%로 산출됨.

에는 수출총액 0.05% 감소, 송금방식 0.05% 감소, 신용장방식 0.18% 감소라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수출 결제방식의 변화

[단위:백만불, %]

구 분	수출 결제 방식					
	수출총액	증감율	송금	증감율	신용장	증감율
2021년	644,400,368	0.26	452,755,061	0.27	48,846,548	0.20
2020년	512,498,038	▲ 0.05	355,112,123	▲ 0.05	40,712,760	▲ 0.18
2019년	542,232,610	▲ 0.10	372,372,284	▲ 0.10	49,909,630	▲ 0.13
2018년	604,859,657	0.05	413,016,146	0.04	57,247,248	0.09
2017년	573,694,421	0.16	395,314,671	0.19	52,573,998	0.12
2016년	495,425,940	▲ 0.06	332,251,266	▲ 0.04	46,807,353	▲ 0.12
2015년	526,756,503	▲ 0.08	345,313,827	▲ 0.07	53,007,553	▲ 0.24
2014년	572,664,607	0.02	369,498,730	0.02	69,734,086	▲ 0.01
2013년	559,632,434	0.02	362,054,424	0.04	70,201,404	▲ 0.07
2012년	547,869,792	▲ 0.01	348,603,202	0.01	75,118,608	▲ 0.10
2011년	555,213,656	0.19	346,665,385	0.23	83,373,389	0.15
2010년	466,383,762	0.28	280,781,924	0.29	72,608,845	0.22
2009년	363,533,561	▲ 0.14	217,578,051	▲ 0.12	59,504,623	▲ 0.25
2008년	422,007,328	0.14	246,800,544	0.16	79,609,324	0.16
2007년	371,489,086	0.14	213,062,676	0.17	68,813,167	0.12
2006년	325,464,848	0.14	182,340,759	0.18	61,598,685	0.09
2005년	284,418,743	0.12	154,167,751	0.15	56,674,563	0.04
2004년	253,844,672	0.31	133,737,202	0.38	54,540,388	0.23
2003년	193,817,443	0.19	97,138,956	0.25	44,367,652	0.13
2002년	162,470,528	0.08	77,808,821	0.16	39,162,716	▲ 0.03
2001년	150,439,144	▲ 0.13	67,092,808	▲ 0.09	40,266,270	▲ 0.15
2000년	172,267,510	0.20	73,934,503	0.26	47,508,129	0.07
1999년	143,685,459	0.09	58,555,759	0.19	44,498,069	▲ 0.13
1998년	132,313,143	▲ 0.03	49,162,162	0.23	51,380,251	▲ 0.13
1997년	136,164,204	#DIV/0!	39,965,344	#DIV/0!	58,761,487	#DIV/0!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재구성

수입결제방식의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기 또한 수출결제방식과 마찬가지로 1998년, 2009년, 2015년 그리고 2020년의 실적이다. 1998년은 수입총액 0.36% 감소, 송금방식 0.02% 증가 그리고 신용장방식은 0.47%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은 수입총액 0.26% 감소, 송금방식 0.25% 감소와 신용장방식 0.31%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수입총액 0.17% 감소, 송금방식 0.19% 감소, 신용장방식 0.21% 감소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수입총액 0.07% 감소, 송금방식 0.06% 감소, 신용장방식 0.18% 감소라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우리나라 수입 결제방식의 변화

[단위:백만불, %]

구 분	수입 결제 방식					
	수입총액	증감율	송금	증감율	신용장	증감율
2021년	615,093,447	▲ 0.32	463,080,369	0.35	83,040,084	0.30
2020년	467,632,763	▲ 0.07	344,039,219	▲ 0.06	64,059,744	▲ 0.18
2019년	503,342,947	▲ 0.06	365,186,594	▲ 0.07	78,192,808	▲ 0.04
2018년	535,202,428	0.12	393,817,197	0.13	81,501,330	0.08
2017년	478,478,296	0.18	348,682,090	0.23	75,609,302	0.05
2016년	406,192,887	▲ 0.07	283,226,061	▲ 0.07	72,147,033	▲ 0.12
2015년	436,498,973	▲ 0.17	303,217,785	▲ 0.19	82,178,799	▲ 0.21
2014년	525,514,506	0.02	374,212,777	0.03	103,441,626	▲ 0.01
2013년	515,585,515	▲ 0.01	364,644,325	0.01	4,517,886	▲ 0.06
2012년	519,584,473	▲ 0.01	360,761,768	0.01	111,319,893	▲ 0.08
2011년	524,413,090	0.23	356,846,097	0.27	120,772,339	0.21
2010년	425,212,160	0.32	281,594,545	0.36	100,115,928	0.23
2009년	323,084,521	▲ 0.26	206,958,271	▲ 0.25	81,561,126	▲ 0.31
2008년	435,274,737	0.22	275,789,777	0.27	118,115,581	0.17
2007년	356,845,733	0.15	217,851,451	0.20	100,669,533	0.09
2006년	309,382,632	0.18	181,578,623	0.33	92,698,949	0.01
2005년	261,238,264	0.16	136,477,525	0.21	91,695,867	0.09
2004년	224,462,687	0.26	113,141,452	0.32	83,755,214	0.21
2003년	178,826,657	0.18	85,602,319	0.32	69,458,143	0.04

2002년	152,126,153	0.08	64,797,089	0.30	66,926,777	▲ 0.05
2001년	141,097,821	▲ 0.12	49,792,739	0.09	70,452,934	▲ 0.19
2000년	160,481,018	0.34	45,766,262	0.74	87,099,374	0.30
1999년	119,742,653	0.28	26,270,396	0.72	67,084,553	0.16
1998년	93,253,899	▲ 0.36	15,295,127	0.02	57,899,813	▲ 0.47
1997년	144,604,180	#DIV/0!	14,971,708	#DIV/0!	110,023,026	#DIV/0!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재구성

조사 기간 25년간의 우리나라 수출입 결제방식의 추이를 개략하면, 첫째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년에는 송금방식 약 70%와 신용장방식 약 10%로 각각의 점유율을 수성하고 있다. 무역결제방식에서 신용장방식의 약화는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간 거래에 있어 대금결제수단으로 송금방식의 선호”⁴⁶⁾, “신용장 거래 수수료 부담”⁴⁷⁾, “국내외의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축소”⁴⁸⁾, Open Account와 같은 송금방식에 대한 무역금융 제공⁴⁹⁾ 그리고 계속거래 기업간의 신뢰 구축에 따른 송금방식으로의 선회⁵⁰⁾ 등의 사유에 기인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결제방식은 각각의 방식별로 비용과 위험의 크기 그리고 기대 이익이 달라 그 균형을 고려한 결제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 중 신용장 방식은 거래의 복잡성과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라는 단점에 불구하고, 원인 계약 당사자에게는 확실한 지급보장과 물품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발행은행과 지정은행은 수수료 수익과 신용장 및 운송

46) 최광호 (2018),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대금결제방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3(2), p.160.

47) 이윤지·이길남 (2018), 신용장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장 거래수수료 절감 방안 : 한국에서의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33(2), p.27.

48) 김병기·김인수 (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BOK 경제연구, 2015-1, p.15.

49) 양의동·이대우 (2018), Open Account 방식 채권 매입 금융과 신용장 방식 매입 금융의 실무상 차이점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018년 하계 무역학자 해외학술발표대회, p.4.

50) 김병학·홍길중 (2006), 전계서, p.109.

서류를 매개로 한 담보권 확보와 외국환 약정 및 여신거래 약정에 의한 소구권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데 결제수단으로서의 선택유인이 있는 것이다.

2.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본 원칙

UCP에서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상관없이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약속으로서 취소불능의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⁵¹⁾라고 신용장을 정의하고 있다. 즉, 신용장이 결제 방법으로 채택된 경우, 발행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제조건, 적용된 UCP 규칙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⁵²⁾에 부합할 경우 결제를 하겠다는 취소불능의 약속이라 하겠다.

이러한 조건부 지급약을 발행은행이 이행하기 위한 기제(mechanism)로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거래배제의 원칙이 있으며, 제시서류의 조건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일치성 판단 기준인 엄밀·상당일치의 원칙이 있다.

가. 신용장 특성에 따른 은행의 역할과 책임

(1)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독립성(independency of the credit)의 원칙은 신용장이 매매계약 또는 기타의 근거계약(underlying contract)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신용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인식하는 신용장 거래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UCP 600에서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

51) UCP 600, Article 2.

52) 국제표준은행관행은 ICC의 간행물인 ISBP 745만이 아닌 Official opinion, DOCDEX 결정문 등도 관행에 포함된다.

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 계약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⁵³⁾고 독립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UCC)에서도 발행은행의 결제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기초계약, 협약, 거래의 이행 또는 불이행;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 그리고 표준관행 이외의 특정 거래관행 준수 또는 인식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⁵⁴⁾고 하여 UCP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 상에 기초 계약의 사본(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등의 서류가 신용장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다”⁵⁵⁾는 UCP 600의 규정은 신용장의 “상업적 생명성(commercial vitality)”⁵⁶⁾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된 독립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신용장 거래의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립성의 원칙은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요체인 조건부 지급확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제시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결제한다는 은행의 의무는 설령 근거계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도 그와 별개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행은행의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 간의 신용장 발행약정(credit agreement)의 독립은 근거계약의 문제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에 대하여 신용장 발행약정과 별개로 채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발행은행은 보호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⁵⁷⁾

발행은행의 지급확약 의무에 기초하여 신용장조건에 따라 결제·매입한 지정은행은 일치하는 제시를 한 경우 신용장 발행약정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⁵⁸⁾ 신용장 거래에 있어 실제적으로 가장 보호를 필요로

53) UCP 600, Article 4, a.

54) UCC, Article 5-108 (f).

55) UCP 600, Article 4, b.

56) Philipp Bros., Inc. v. Oil Country Specialists, Ltd. 787 S.W.2d 38 (1990).

57) Harvard University (1980), op.cit., p.1001.

하는 당사자는 결제·매입 행위를 수행하는 지정은행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원격지에 있는 수익자 앞으로 선적후 무역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신용장을 통한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만약 독립성의 원칙이 배제된다면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지급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은 그 존재 이유가 희석될 것이다.⁵⁸⁾

신용장의 독립성을 강조한 국·내외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North Am Mfrs Export Associates Inc v. Chase Nat Bank of City of New York⁶⁰⁾ 사건에서 신용장(조건변경 포함)은 원인 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신용장에 기술된 조건에만 관여한다.

Dulien Steel Products, Inc., of Wash. v. Bankers Trust Co.⁶¹⁾ 사건에서 은행이 신용장을 확인한 경우, 신용장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결제할 취소불능의 의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장은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와의 원인계약이나 어떠한 기초계약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 신용장 발행·확인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제시가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권리와 의무가 없으며,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논쟁에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다.

Synergy Center, Ltd. v. Lone Star Franchising, Inc.⁶²⁾ 사건에서 신용장은 은행과 수익자 간의 독립된 계약, 근거 계약의 채무관계와 독립적이다. 신용장에서 언급되는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의 상업적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은행은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각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8) 박남규 (20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교부서류에 대한 엄격일치원칙의 적용 가능성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51. p.202.

59) 박남규 (2011), 상계논문, p.202.

60) North Am Mfrs Export Associates Inc v. Chase Nat Bank of City of New York, 77 F.Supp. 55 (S.D.N.Y. 1948).

61) Dulien Steel Products, Inc., of Wash. v. Bankers Trust Co., 189 F. Supp. 922 (S.D.N.Y. 1960).

62) Synergy Center, Ltd. v. Lone Star Franchising, Inc. 63 S.W.3d 561 (2001).

Nissho Iwai Europe PLC v. Korea First Bank⁶³⁾ 사건에서 신용장은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의 지급 확실성에 의존되기 때문에 발행은행의 의무는 근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과는 무관하다. 대금 지급은 보증 위반 또는 불일치에 대한 어떠한 주장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In re Sanders-Langsam Tobacco Co., Inc.⁶⁴⁾ 사건에서 신용장상 수익자에 대한 은행의 지급 의무는 일차적, 직접적이며, 근거 물품 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클레임과도 완전히 독립적이다. 은행의 유일한 기능은 자금 공여이며, 이것은 근본적인 상업 거래와 관련 또는 관여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장 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발행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기초 거래에서 특정 조건에 주어진 관습 또는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고려하거나 숙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요구되지 않는다.

영국의 Urquhart Lindsay & Co Ltd v. Eastern Bank Ltd⁶⁵⁾ 사건에서 인증된 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향후 신용장은 이러한 특징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Davis O'Brien Lumber Co. v. Bank of Montreal⁶⁶⁾ 사건에서 신용장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인계약과는 무관하며, 신용장조건에 국한되어 심의될 것을 전제로 하며, 신용장은 다음 규칙하에 운영된다. (a) 은행은 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필요가 없다. (b) 신용장 이외에 그 어떤 계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c) 은행은 상품이 아닌 서류만을 취급한다. (d) 신용장조건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 추상성의 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추상성(abstractness of the credit)의 원칙은 은행은 독

63) Nissho Iwai Europe PLC v. Korea First Bank, 99 N.Y.2d 115 (2002).

64) In re Sanders-Langsam Tobacco Co., Inc., 224 B.R. 1 (1998).

65) Urquhart Lindsay & Co Ltd v. Eastern Bank Ltd [1922] 1 K.B.318.

: 이 시기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기 전임에도 신용장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향후 반영을 권고하고 있다.

66) Davis O'Brien Lumber Co. v. Bank of Montreal. [1951] 3 D.L.R. 536.

립성을 바탕으로 원인계약의 거래 대상인 물품의 인도,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의무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서류로만 거래한다는 것이다.

UCP 600에서는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계된 물품, 서비스,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⁶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의 결정은 서류만을 기초로 심사하여야 한다”⁶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심사의 주체가 은행이기에 추상성의 논의 또한 그 주체는 은행이다. 은행은 실무적으로 원인계약의 물품의 특성, 흠결, 존부 그리고 실제 선적 및 도착 여하(如何)를 알 수 없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의 일치 여부에 더하여 계약 물품의 하자 또는 의무이행을 병행하여 심사해야 한다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장 취급은 난망할 것이다. 특히, 선적 후 발행되는 선적 서류로는 선박 출항 이후 물품과의 상호확인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⁶⁹⁾ 따라서, 신용장 거래상 원인 계약의 물품과는 분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추상성에 기인하여 실물거래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은행도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로 제약없이 참여할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무역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⁷⁰⁾

다음의 판례를 통해 신용장의 추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First Wisconsin Nat. Bank of Milwaukee v. Forsyth Leather Co.⁷¹⁾ 사건에서 취소불능의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은 매매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의 품질이나 종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은행의 독자적인 직분은 환어음을 수반한 상업송장과 요구되는 여타 서류가 제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문면상 적정하다면 그 환어음을 인수·지급하는 것이 은행의 의무이다.

67) UCP 600, Article 5.

68) UCP 600, Article 14, a.

69) 박세운 (2015), 신용장업무, 한국금융연수원, p.7.

70) 이대우·양의동 (2014), 전제서, p.73.

71) First Wisconsin Nat. Bank of Milwaukee v. Forsyth Leather Co., 189 Wis. 9, (1926).

BasicNet S.p.A. v CFP Servs. Ltd.⁷²⁾ 사건에서 SLC(Standby Letter of Credit)는 의무 이행을 보장하여 수익자가 기초 거래에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용장조건에 따라 지급 청구를 가능케 한다. 상업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의무 불이행 또는 청구 대상 사건의 미발생은 신용장 자체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규정된 서류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서류에 의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 of N.Y.⁷³⁾ 사건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가 제시되면 일람지급방식(sight payment)으로 환어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신용장을 발행했다. 신용장은 서류의 제시 외에 명시된 물품(종이)의 구매 및 매매 계약과 관련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은 은행과 전혀 무관하다. 은행의 의무는 신용장에 명시된 원본 서류와 함께 환어음이 제시되면 신용장 대금을 일람불로 지급하는 것이다. 인도 시점의 물품(종이)이 무게, 종류 또는 품질면에서 구매계약 한 것과 일치하지 않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에 대한 구제책을 확보할 수 있다. 물품(종이)이 매수인이 구매하기로 계약한 물품인지 여부는 은행과 관련이 없으며, 은행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은행은 직접 검사나 여타 방법으로든 종이가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은행은 오로지 환어음과 그에 수반되는 서류에만 관계되어 있다. 이는 은행이 관여되는 범주를 나타낸다. 적정 서류와 환어음이 제시되면, 종이가 계약된 인장 강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을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장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특성은 취소불능 신용장 하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Banking Corporation v. Irving Nat. Bank⁷⁴⁾ 사건에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서 실크가 디자인을 준수해야 하며, 재료의 너비에서

72) BasicNet S.p.A. v. CFP Servs. Ltd., 120 A.D.3d 97, (2014).

73)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 of N.Y. 239 N.Y. 386, (1926).

74) International Banking Corporation v. Irving Nat. Bank, 274 F. 122, (1921).

줄무늬가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상업 서류가 환어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줄무늬 너비에 관한 진술서의 누락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누락이 상업적 의미가 있는지 또는 서류를 해석하거나 논쟁거리를 만들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JH Rayner & Co Ltd v. Hambro's Bank Ltd⁷⁵⁾ 사건에서 물품명세로 'machine-shelled groundnut kernels'를 요구한 신용장에서 'coromandel groundnut'로 기재된 송장이 제시되어 발행은행은 하자통보한 바, 지정은행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은행은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원심법원의 결정을 파기했다. 특히, 은행은 신용장의 정확한 조건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엄밀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용장조건과 달리 제시된 송장과 선하증권에 대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땅콩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 사업의 조건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은행이 고객의 무역 관습과 무역 조건을 알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독립·추상성의 이해 균형

[표 4] 신용장 특성에 따른 이해 균형

수출상(매도인) 측		수입상(매수인) 측	
수익자	지정은행	발행은행	발행의뢰인
유리	보호	보호	불리

(가) 수익자와 지정은행의 이해 관계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으로 가장 유리한 당사자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신용장의 수익자(수혜자)이다. 수익자는 일치하는 제시를 전제로 매매계약

75) JH Rayner & Co Ltd v. Hambro's Bank Ltd, [1943] K.B. 37.

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독립된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수익자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기본적 의무를 수반하고, 신용장대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더욱이 수익자는 매매계약에 의한 항변으로부터 신용장의 지급청구권을 부인받지 않는다. 반면, 지정은행은 제시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결제·매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정은행은 수익자와의 관계 및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제·매입이 아닌 추심의 방법으로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나) 지정은행과 발행은행과의 이해 관계

신용장 거래상 독립·추상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결제·매입을 행하는 지정은행이다.⁷⁶⁾ 일치하는 제시라는 조건만 부합된다면 지정은행은 서류를 결제·매입하고 발행은행으로 청구만 하면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치하는 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물품의 흠결과 같은 매매계약으로부터의 항변을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있다면, 지정은행은 결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용장이라는 대금결제방법의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정은행은 수익자의 지급청구 대리인이며, 발행은행으로부터 결제·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자로 자신의 일차적인 보호수단으로서 서류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과의 이해 관계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발행은행은 근거계약의 항변으로부터 보호된다. 반면, 수익자 앞으로 독립·추상성의 의무를 부담한다.⁷⁷⁾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는 발행의뢰인이다.⁷⁸⁾ 신용장의 대금 지급은 근거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장에서

76) 강원진 (2013), UCP 600 조항별 신용장분쟁사례, 도서출판 두남, p.66.

77) 김상조 (2014),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5.

요구하는 서류의 일치 여부에 의해서만 지급되므로, 계약물품의 하자에 불구하고 지급에 응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열위한 이해 관계 속에 발행의뢰인은 종종 과도한 상품 명세의 삽입 또는 불명확한 조건을 부가하여 물품에 대한 인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명세의 삽입과 원인계약이나 견적송장 등의 사본을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억제⁷⁹⁾되고 있으며, 불명확한 조건의 부여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발행의뢰인이 부담⁸⁰⁾하게 되므로 신용장의 조건은 명확한 문구와 함께 이행방법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4)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일치하는 제시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허위서류라는 것이 밝혀지면 지급거절할 수 있다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의 예외 원칙이다. UCP 600에서는 “은행은 어떠한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추가된 일반 또는 특정 조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은행은 어떤 서류에 나타난 물품, 서비스 또는 다른 이행의 기술, 수량, 무게,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 여부 또는 물품의 송하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보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선의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의무 또는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⁸¹⁾라고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은행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통일상법전(UCC)에서는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더라도 요구된 서류가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제시된 서류를 결제하는 것이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에게 수익자의 중대한 사기를 조장하는 경우에 한하

78) 김능우 (2016),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부당한 인수·지급거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p.33.

79) UCP 600, Article 4.

80) UCP 600, Article 37, d.

81) UCP 600, Article 34.

여 사기거래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때 발행의뢰인의 청구에 의해 재판 권한이 있는 법원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결제할 것을 금지하거나 유사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⁸²⁾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첫째, 사기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기사실에 의한 피해의 발생과 셋째, 사기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 원칙은 UCP 상 규정된 원칙이 아닌 법원 판례로 인정된 원칙으로 사기거래에 의한 지급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Injunction)에 의해서만 가능하다.⁸³⁾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 또한 제한적 조건을 부가하여 명령의 남용을 막고 있다.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의 조건으로 첫째, 구제조치가 발행은행으로부터 인수된 환어음 또는 연지급 책임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구제조치로 인한 수익자, 발행은행 또는 지정은행의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주법에서 정해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넷째, 법원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발행의뢰인이 위조 또는 중대한 사기에 의한 청구에 응한 거래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청구하는 자가 사기거래 사실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⁸⁴⁾

신용장 거래에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의 존립 이유는 신용장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사기거래 배제 원칙 또한 악의적인 거래를 배제하여 신용장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거래배제의 원칙을 UCP 600 상에서 논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사기거래임을 확정할 수 있는 주체가 신용장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구속력을 가진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에 입각한 검증을 통해 사법권의 구속력을 바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사기거래 배제원칙을 반영한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82) UCC, Article 5-109 (a).

83) 이대우, 양의동 (2014), 전제서, p. 74.

84) UCC, Article 5-109 (b).

Sztejn v. Schroder Banking Corp.⁸⁵⁾ 사건에서 신용장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원인 계약과 독립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발행은행은 상품이 아닌 서류 제시에 의한 지급이라는데 데 동의할 것이다. 독립·추상성은 무역금융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용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용장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매도인에게 판매 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결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이 매수인의 요청으로 환어음을 지급하기 전에 서류를 뒤로 한 채 선적된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논쟁에 개입하도록 강요 또는 용인된다면, 그것은 극히 불행한 거래간섭이 될 것이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러한 은행의 개입을 의도했다면 신용장 자체 그러한 의도를 명문화했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은행에게 적절한 형태의 환어음 지급 연장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급을 위하여 환어음과 서류가 제시되기 전에 매도인의 사기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신용장 상의 은행의 의무에 관한 독립성의 원칙이 부도덕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RD Harbottle (Mercantile) Ltd v.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⁸⁶⁾ 사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은 은행이 부담하는 취소불능한 의무의 이행절차에 개입할 것이다. 은행의 의무는 국제 상거래의 생명선이다. 이러한 의무는 은행 거래 사슬의 양쪽 끝단에 있는 상인 간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담보로 간주된다. 은행이 인지한 명백한 사기 사례를 제외하고, 법원은 상인들에게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계약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클레임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것들은 상인들이 감내해야 할 위험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보증서의 무조건적인 표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은행의 이행절차와 확약은 다른 수준의 것이다. 은행은 법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어야

85) Sztejn v. Schroder Banking Corp. 177 Misc. 719, 31 N.Y.S.2d 631 (1941).

86) RD Harbottle (Mercantile) Ltd v.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 [1978] Q.B. 146.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다.

Old Colony Trust Co. v. Lawyers' Title & Trust Co.⁸⁷⁾ 사건에서 분명히, 신용장 발행은행이 서류가 외견상 부합하더라도 사실상 허위이거나 불법임을 인지한 경우, 그러한 서류를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Canada⁸⁸⁾ 사건에서 사기와 위조에 관한 법원 판단의 본질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i) 최소 사기와 위조 중 하나가 입증되어야 한다. (ii) 은행은 서류의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위조된 문서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 (iii) 은행은 '미미한 형법상 위조', 즉 무효를 유발하지 않는 위조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유효 또는 진본 서류', 즉 누군가의 사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iv) 따라서, 사기가 제삼자의 것이라도 사기성 허위 진술이 포함된 서류는 유효 또는 진본 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

Roman Ceramics Corp. v. Peoples National Bank⁸⁹⁾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광범위한 재판에서 전개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몇몇 어려운 법률 질문과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기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한 경우, 이런 종류의 소송이 적절하지 않으며, 재판법원이 지나치게 광의의 관점에서 거래상의 사기를 정의했지만, 법원이 전적으로 사기사실의 판단 근거를 입증하여야 했다. 하지만, 은행은 이와 달리 신용장이 추구하는 장점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기사실의 증거들을 입증할 위치에 놓여서는 안 된다.

87) Old Colony Trust Co. v. Lawyers' Title & Trust Co. 297 F. 152 (1924).

88)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Canada [1983] 1 A.C. 168.

89) Roman Ceramics Corp. v. Peoples National Bank, 714 F.2d 1207 (1983).

나.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의 한계

[표 5]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과 목적

일치성 판단 기준	
엄밀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
매매목적물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힘든 매수인 이익 보호	물품인도의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매도인 이익 보호
은행 이익 보호	

(1) 엄밀일치의 원칙

은행에 제시되는 서류의 문면상 일치 여부는 서류만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하며⁹⁰⁾, 제시가 불일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제·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⁹¹⁾ 즉, 엄밀일치의 원칙(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은 신용장 거래의 특성인 독립·추상성을 지지함과 은행의 지위를 확보하고 아울러 신용장 대금의 지급확약 당사자인 발행은행과 확인이 있는 경우 확인은행의 보호를 위하여 서류 심사 기준에 있어 형식성에 방점을 두고 심사를 하는 것이다.

서류 심사 시 서류만을 근거로 문면상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서류심사기준에 대하여 UCP 600에서는 그 명확한 정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정도란 엄밀일치의 기준이 거울에 비치는 듯한 수준(mirror of image)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미한 오탈자 등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⁹²⁾

엄밀일치를 기준하여 이행하는 서류심사 원칙이 발행은행에 유익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으로 “첫째, 은행은 부당한 청구로부터 신용 위험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둘째, 신용장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며, 셋째, 심사과정을 현실적으

90) UCP 600, Article 14, a.

91) UCP 600, Article 16, a.

92) 강호경·임목상 (2009), 전제 논문, p.87.

로 단순화함으로써 업무처리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⁹³⁾라고 엄밀일치 원칙의 현실 적용성을 논할 수 있다.

신용장 관련 법령과 관행에 비추어 엄밀일치의 원칙의 이해를 가장 쉽게 대변할 수 있는 용어는 “형식주의(formalism)”⁹⁴⁾이다. 은행권에서 신용장 관련 수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의 의무를 서류심사에 제한하기 때문이다.⁹⁵⁾ 따라서 서류심사의 원칙으로 엄밀일치의 원칙 적용이 은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루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무역현장에서 여전히 엄밀일치의 원칙을 고수”⁹⁶⁾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매매목적물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힘든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⁹⁷⁾로 활용되고 있어 동 원칙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밀일치의 원칙은 일차적 법익보호 대상을 은행에 초점⁹⁸⁾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엄밀일치의 원칙이 은행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인 분쟁으로부터 은행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원칙으로 변질⁹⁹⁾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엄밀일치의 원칙을 표방한 판례의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엄밀일치의 원조로 인정되는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¹⁰⁰⁾ 사건으로 신용장 거래에 있어 동봉된 서류가 인수 수권이 부여된 조건과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은행이 상환

93) DCInsight Vol. 16 No.1 January - March 2010.

94) ICC (2008),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 694, p.66.

95) ICC (2008), *Ibid.*, p.66.

96) 이신규 (2017), 중소기업의 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역연구, 13(4). p.280.

97) 서지민 (2018), 영미 판례법상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 - 2016년 미국의 *Margo International v. LHB AG* 판결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32(1). p.275.

98) 서지민 (2018), 상계 논문, 32(1). p.261.

99) 서지민 (2018), 상계 논문, 32(1). p.275.

100)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 [1927] 27 Lloyd's List Law Rep. 49, 52.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 통념이며 상식이다. 거의 일치하는 또는 상응하는 역할을 대체할 서류란 있을 수 없다. 은행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지시받은 것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 부여된 조건과 달리 행동한다면, 그것은 은행이 자신의 위험하에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엄밀일치의 원칙이 신용장 또는 서류상에 실수로 점을 찍었거나, 선을 잘 못 긋거나 또는 인쇄상의 명백한 오류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시서류의 제목의 일치성을 언급한 Courtaulds North America, Inc. v. North Carolina National Bank¹⁰¹⁾ 사건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해 야기되는 유일한 쟁점은 수익자가 발행은행에게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신용장을 취급할 때 은행은 문면상 서류 제목으로 명확하게 ‘송장’으로 표시된 송장만을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 은행 거래의 관습이자 관행이다.

엄밀일치의 원칙과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Voest-Alpine Intern. Corp. v. Chase Manhattan Bank, N.A.¹⁰²⁾ 사건에서 신용장의 중요한 유용성은 발행은행의 독립적인 의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급수단으로서 표면적인 화환신용장의 본질과 달리 외적 동기가 전제된 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지급메커니즘으로서의 예측가능한 신뢰성이라는 주요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장조건에 대한 엄밀일치의 원칙은 수익자에게 지급할 절대적 의무를 지닌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기능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원칙의 고수로 서류만을 취급하는 은행의 신속한 행동으로 신용장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일치는 은행에게 부담없이 고객으로부터 보상받을 은행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101) Courtaulds North America, Inc. v. North Carolina National Bank. 528 F.2d 802 (1975).

102) Voest-Alpine Intern. Corp. v. Chase Manhattan Bank, N.A. 707 F.2d 680 (1983).

오타자를 명백한 하자로 인정한 *Beyene v. Irving Trust Co.*¹⁰³⁾ 사건에서 선하증권상 착화통지처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확인은행에게 신용장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배제시키는 실질적 하자이다. 선하증권이 ‘sofan’이라는 이름의 철자를 ‘soran’으로 잘못 표기한 것은 은행이 신용장을 지급거절 할 중대한 하자이다.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이 일치하는 한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지만,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과 불일치하다면 절대적인 지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서류일치 판단의 기준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로 발행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신용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매입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일부 상품명세에 불일치가 있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에서 신용장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면 발행은행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2) 상당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은 물품인도의 위험을 부담하는 “매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형성된 법리”¹⁰⁴⁾이며, “수익자에게 형평성(equity)을 제고”¹⁰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수의 법원에서 지지하고 엄밀일치의 원칙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실

103) *Beyene v. Irving Trust Co.*, 762 F.2d 4 (1985).

104) 서지민 (2018), 전제 논문, p.275.

105) Arthur Fama, Jr. (1985), *Letters of Credit: The Role of Issuer Discretion in Determining Documentary Compliance*, 53 *Fordham L. Rev.* 1519. p.1528.

질적이고 합리적인 일치를 지향하는 상당일치의 원칙이다.¹⁰⁶⁾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⁰⁷⁾라는 법원의 판단은 상당일치의 원칙이 엄밀일치의 완화를 수용하면서 신용장의 상업적 유용성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UCP 600은 “서류상의 기재정보를 신용장, 서류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관점에서 볼 때, 당해 서류, 기타 모든 요구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¹⁰⁸⁾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상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가 있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라도 무방하다”¹⁰⁹⁾ 라고 정의하면서, 신용장 심사의 유연성을 담아내고 있다.

엄밀일치의 원칙은 신용장의 상업적 효용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나, 때때로 원칙의 악용으로 이익의 균형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¹¹⁰⁾ 그러한 사례를 목도한 일부 법원은 엄밀일치의 기준을 일부 수정 또는 완화하여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상당히 일치하면 신용장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당일치의 원칙의 적용 근거로서 첫째, 발행은행은 서류의 신용장조건 충족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결정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장래에 대한 걱정이나

106) Boris Kozolchyk (1990),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56 *Brook. L. Rev.* 45, p.68.

10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108) UCP 600, Article 14, d.

109) UCP 600, Article 14, e.

110) 김선국 (1992), 신용장의 (信用狀) 엄격일치성과 (嚴格一致性) 그 완화수단 (緩和手段), 경영법률, 5. p.455.

상환청구권의 상실이라는 위험 때문에 발행의뢰인의 판단을 그의 판단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둘째, 발행은행이 단지 기술적으로 불충분한 경우, 예컨대, 기능적 문제가 없는 오탈자 같은 사소한 하자에도 그것을 사유로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제거래에서 신용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때문이다”¹¹¹⁾

상당일치의 원칙은 자구 그대로의 조건과의 편차는 허용하지만 그러한 편차는 심사자로 하여금 서류심사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있다.¹¹²⁾

상당일치의 원칙의 시발은 신용장의 고유기능 악화와 고비용을 초래하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¹¹³⁾으로 서류의 일치성 판단에 있어 신용장과 서류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성 있게 접근하여 부당한 이익의 최소화 그리고 기대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일치의 원칙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상당일치의 원칙을 강조한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밀일치의 원칙의 변화를 알리는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¹¹⁴⁾ 사건에서 국제금융거래에서는 제시하는 상품의 상태보다는 서류의 정확성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 하지만, 엄밀한 구조의 틀에서 일부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하자의 용인 정도를 언급한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s Nat. Bank of Boston¹¹⁵⁾ 사건에서 지급은행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오도(誤導)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명시된 서류와 제시된 서류 간의 차이는 치명적이지 않다.

111) 김선국 (1992), 전계 논문, p.456.

112) Boris Kozolchyk (1990), op.cit., p.68.

113) 서정두 (2005), 수출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일치성의무에 관한 관습적 해석 기준, 무역상무연구, 25 (2), p.118.

114)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 385 F. 2d 230 (1967).

115)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s Nat. Bank of Boston, 569 F.2d 699 (1978).

경미한 하자로 인한 지급거절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Peoples State Bank of Clay County v. Gulf Oil Corp.¹¹⁶⁾ 사건에서 정책의 문제로서, 신용장의 모든 필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 기술적 또는 사소한 이유로 환어음의 완전성이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

일자에 관한 완화된 일치성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Blonder & Co., Inc. v. Citibank, N.A.¹¹⁷⁾ 사건에서 법원은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이름이 없다는 것으로는 결함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통일규칙은 은행이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서류를 오로지 ‘문면상(on their face)’으로만 심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발행은행은 서류의 허위 또는 물품의 배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가 신용장과 문면상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이다. 더욱이, 동일 선하증권상 일자 간의 경미한 불일치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항변권의 포기를 구하지 않았으며, 신용장 대금 지급을 중지하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 상 발행일자로 타이핑된 일자는 ‘2000년 1월 11일’이며, 본선적재부기 스탬프 날인은 ‘Clean On Board 11 ENE 2001’ (ENE는 스페인어로 1월의 의미인 약어임)로 표기되었는바, 이는 연도초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실수라는 의견을 함께 표명하였음].

엄밀일치의 예외를 시사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로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

116) Peoples State Bank of Clay County v. Gulf Oil Corp., 446 N.E.2d 1358 (1983)

117) Blonder & Co., Inc. v. Citibank, N.A., 808 N.Y.S.2d 214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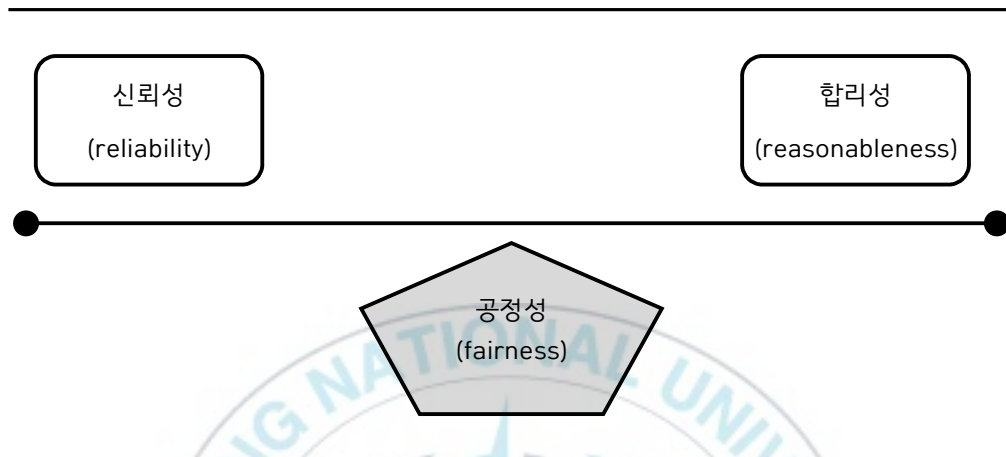
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신용장 청구 금액의 편차에 관한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52911 판결에서 신용장의 금액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일응의 기준이 될 뿐 화물의 실제 단위가격과 수량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신용장 대금은 신용장 개설 후 가격조항에 따른 단위가격의 증감과 실제 선적수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용장 발행 후에 가격조항과 실제수량에 의하여 산정된 신용장 대금이 신용장 금액란에서 정한 1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조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당한 주의’에 입각한 서류심사를 정의한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6221 판결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주의라 함은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킨다” [중략]... [이후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인용].

그간의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은 엄밀일치원칙과 상당일치원칙의 잣대 아래 일치 정도의 차이에 국한되어 심사되어 왔다. 엄밀일치원칙은 법원과 서류심사자인 은행에게 가장 명확한 기준을 부여한다. 하지만, 엄밀일치원칙이 가지는 완고함은 신용장의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에게 이익 균형이 편중되고 있으며, 상당일치원칙은 판단 기준의 일관성 문제로 끊이지 않는 일치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엄밀·상당일치원칙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이익 균형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일치성 판단 기준의 정립을 위한 신용장 거래의 지향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신용장 거래의 지향 가치



[그림 1] 서류의 일치성 판단 가치의 균형

가. 신뢰성

신용장의 활용성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확실한 지급 보증으로부터 창출된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는 신용장에 대한 “예측가능한 신뢰성(predictable reliability)”¹¹⁸⁾이 바탕되어야 비로써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방법으로 신용장을 선택할 것이다. 신용장의 신뢰성은 첫째, 발행의뢰인의 신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위험을 발행은행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수익자의 대금회수불능 위험을 배제시킬 수 있다. 또한, 신용장의 제한적인 틀 안에서라도 발행의뢰인은 수익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둘째, 대금결제방법으로 신용장을 선택함으로써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매도인은 신용장의 수익자로서 신용장에 명시된 사용방법으로 할인 또는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매수인은 신용장 약정에 따라 서류 접수 이후 후불로 결제 또는 상환함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

118) 강원진 (2013), 전계서, p.244.

자금유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엄밀일치의 원칙의 지향 가치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실성(certainty)¹¹⁹⁾,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¹²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 확실성

신용장의 확실성은 신용장이 취소불능의 약정이라는 데서부터 발원한다. 신용장이 발행된 후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확인은행의 확인이 더해질 때 신용장의 확실성은 보다 공고해진다. 신용장이 발행된 후 발행의뢰인이 파산하여 발행요청을 취소하더라도 일단 발행은행이 취소불능 신용장을 발행한 후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취소불능의 은행의 지급확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원인계약 관련 분쟁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발행은행의 확약은 신용장조건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급의무는 절대적인 것이다.

“모든 상거래에 있어 주요 관심사는 확실성이다. 따라서 어떻게 규칙이 성립되는지보다는 규칙의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¹²¹⁾는 법원의 판단 요지는 거래당사자가 지켜야 할 준거 규칙과 신용장조건이 수익자가 이행하기에 분명하고 확실할 때 신용장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고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익자는 공신력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확실한 지급보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더욱이,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소송과 같은 법적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119) Consolidated Aluminum Corp. v. Bank of Virginia, 544 F.Supp. 386 (1982).

: 엄밀일치원칙과 서류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발행은행의 의무의 취지는 ① 지급의 확실성과 ② 발행은행이 신용장으로부터 생성되는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0) 김선국 (2006), 신용장의 추상성과 관련한 대법원판례에 대한 평석, 상사판례연구, 19(1), p.199

121) Vallejo v. Wheeler [1774] 98 E.R. 1012.

(2) 예측가능성

추상성에 기초한 엄밀일치의 원칙은 발행은행을 포함한 모든 신용장거래의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수익자는 최소한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엄밀히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만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고, 발행의 퇴인은 수익자의 의무이행이 서류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¹²²⁾

신용장은 수익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각종 기일 즉, “유효기일(expiry date)”¹²³⁾, “선적기일(shipment date)”¹²⁴⁾, “제시기일(presentation date)”¹²⁵⁾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본인들의 의무이행에 대한 최종적인 기간제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본인 발행 및 제3자 발행서류를 구분하여 필수 기재 내용 등을 규정하여¹²⁶⁾ 의무이행과 대한 예측가능성을 고양하고 있으며, 발행은행은 규정된 심사기간을 가지고 5은행영업일이라는 제한된 심사기간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하는 경우 합의된 신용장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만기일을 고지함으로써 기대이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무역 거래참여자들은 신용장상 분쟁 발생으로 소송을 포함한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면 법원 등의 결정이 예측 가능하기를 고대할 것이다. 즉, 법원 등의 판결이 전례와 일관되게 고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¹²⁷⁾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국제무역 거래를 계획하고 이행할 때 혼선을 최소화하여 거래이익과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2) 김선국 (2006), 전제 논문, p.199. [1998. 6. 26. 선고, 97다31298판결에 대한 평석]

123) UCP 600, Article 6, d, i .

124) UCP 600, Article 19~25.

125) UCP 600, Article 6, c.

126) UCP 600과 ISBP 745 등에서 본인 발행서류인 상업송장 및 수익자 증명서류를 제3자 발행서류인 운송서류, 보험증권,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7) Husam M.S. Botosh (2000), op.cit., p.112.

나. 합리성

신용장조건, 서류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심사는 자구 그대로의 해석과 적용을 탈피하여 수익자의 대금결제, 발행의뢰인의 계약물품의 안전한 확보라는 “합목적성”¹²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기준(reasonable standard)”¹²⁹⁾과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¹³⁰⁾의 조합의 합리성(reasonableness)을 필요로 한다.

합리성은 다시 “유연성(flexibility)”¹³¹⁾과 “수용성(acceptability)”¹³²⁾ 그리고 “진정성(genuineness)”¹³³⁾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유연성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심사기준과 기간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각각의 상관습과 통일되지 않는 국제법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유연성은 상당일치의 원칙이 표방하는 서류 내용의 정규성과 기능성을 충족하면 자구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UCP 상 유연성의 구현으로 ① 서류 자체 및 서류 간 내용의 유연성¹³⁴⁾ ② 선적 수량 및 금액의 유연성¹³⁵⁾ ③ 은행의 서류심사 기간 및 하자통보 기간의 유연성¹³⁶⁾을 설정하고 있다.

128) 김기선 (2013), UCP 600 합리성 행위기준의 적용방식: 서류검토기간의 효율과 형평의 균형, 한국무역상무학회지, 57, p.128.

129) 김기선 (1998), 서류치유원리적용과 하자면제교섭권활용이 서류검토행위의 합리성에 주는 효과분석 : 신용장거래관습해석의 법경제학적 접근, 무역학회지, 23(2), p.5.

130) 김용일 (2013),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고찰, 통상정보연구, 15(4). p.261.

131) Husam M.S. Botosh (2000), op.cit., p.113.

132) 김영훈 (2003), 신용장통일규칙 제13(a)항의 국제표준은행 관습에 관한 一考, 문화산업연구, 3(2), p.55.

133) UCP 600, Article 34.

134) UCP 600, Article 14 d, e, g, j, k, i.

135) UCP 600, Article 30 a, b, c.

136) UCP 600, Article 16, b, d.

(2) 수용성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국제법과 규칙 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업 관행에 적응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1936년 최초 UCP 제정 이후 6차에 걸쳐 개정을 이어왔으며, 현재 UCP 600 버전으로 시장의 기술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왔다.

또한, UCP 조항에서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¹³⁷⁾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UCC 조문에서도 “이 조항의 효과는 합의 또는 약정에서 명시되거나 준용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¹³⁸⁾라는 내용으로 신용장조건은 당사자의 합의 하에 수정 또는 배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거래 당사자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행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에 국제무역의 관행과 국제법 등과의 괴리를 사적자치의 원칙이 메워주고 있다.

(3) 진정성

“진정성이란 서류의 내용에 허위 기재 없이 진실한 상태를 기재하고 있어 서류가 실물을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⁹⁾ 신용장의 진정성을 지칭하는 범주는 주로 우편 신용장의 발행과 통지에 있어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 즉, 신용장의 외관상 진위 여부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데 방점을 두고 논의된 화두이다.¹⁴⁰⁾ 하지만, SWIFT의 확산으로 우편신용장의 발행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에 따라, 최근 진정성의 논쟁은 외견상 진정성이 아닌 신용장 관련 당사자 및 서류 발행자 주

137) UCP 600, Article 1.

138) UCC, Article 5-103, (c)

139)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전국은행연합회 (2007),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p.236.

140) 이기영 (2016.07.15.), 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신용장 내도 시 확인사항, 법률저널, <https://url.kr/bqan51>.

체의 진정성과 서류의 원본성으로 그 논의를 옮겨가고 있다.

다. 공정성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 취급 시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인 UCP 600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¹⁴¹⁾과 서류심사 관련 관행에 대하여 실무자의 접근성을 제고한 보충적 해설서인 ISBP 745에서도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¹⁴²⁾을 규정하고 있으며, 온전히 신용장 관련 거래법을 제정한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서도 “표준관행(standard practice)”¹⁴³⁾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모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가미된 탄력적 운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류검토 절차에 있어 발행은행의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서류작성에 있어 수익자의 엄밀일치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치상대적 공정성을 반영하고자 함이다.¹⁴⁴⁾

(1)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의 공정성 조절 수단

수익자 측	발행의뢰인 측
하자 치유	
신의칙(금반언)	지급금지가처분
항변권 포기	

[그림 2]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공정성 조절 수단

141) UCP 600, Article 2, Article 14, d.

142)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2013),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p.3.

143) UCC, Article 5-108, (e).

144) 김기선 (2000), 신용장 거래관습에 있어 서류치유원리와 금반언법리의 적용방식, 무역상무연구, 13, p.516.

“공정성은 신용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다”¹⁴⁵⁾ 신용장의 영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신용장은 발행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라는 전제하에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은 각각 공정성의 조절 수단을 가진다.

하자치유(documentary cure)와 신의칙의 금반언(estoppel) 및 발행의뢰인의 항변권 포기(waiver)는 발행은행의 “엄밀일치의 원칙의 남용에 대한 보호장치”¹⁴⁶⁾로서 역할을 한다. 지급금지가처분(injunction)은 사기적인 의도로 인해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선의의 피해를 차단하는 순기능을 한다.

수익자 측의 공정성 조절 수단으로 첫째, 하자치유란 첫 제시 때 서류상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은행의 상업적 배려 하에 제시기일과 유효기일 이내에 하자를 치유한 후 재제시(re-presentation)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자가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CISG에서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¹⁴⁷⁾라는 협약 조항에서도 신용장의 수익자(매도인)의 제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치유하는 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신의칙(trust and good faith)의 파생원칙인 금반언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¹⁴⁸⁾ 금반언이 신용장에서 구현되는 예시로 ① 발행은행이 첫 제시에서 서류상

145) Boris Kozolchyk (1990), op.cit., p.72.

146) Adam, M.I.M. (1993), *The Perceived Problems in the Utilisation of Letters of Credit : A Comparative Study*, Aberdeen University, Thesis of Ph.D., p.199.

147) CISG Article 34.

148) 위키백과사전, <https://url.kr/c7qok3> (접속일자 :2022.09.06.).

에 하자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의 없이 수리하였으나, 이후 제시에서 동일한 하자를 사유로 지급거절하는 경우와 ② 제시된 서류의 하자 지적에 따라 수정 제시하였으나, 1차 하자 통보상 언급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하자를 들어 지급거절하는 것이다. 이는 UCP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계약법의 근간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⁴⁹⁾

셋째, 항변권의 포기란 발행은행이 불일치한 서류에 대하여 결제를 거절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부터 하자에 대한 항변권의 포기를 교섭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은행 산업 및 무역의 표준 관행 및 절차이다.¹⁵⁰⁾ 하자에 대한 항변권의 포기를 결정하면 발행은행은 제시자에게 결제를 해야 할 의무가 생성된다. UCP 상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서 5영업일의 서류심사기간 동안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 포기를 위하여 발행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다”¹⁵¹⁾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의뢰인 앞 하자면제 교섭이 강제사항은 아니며, 발행의뢰인의 의사 또는 신용도에 영향 없이 발행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항변권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¹⁵²⁾

14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 “수익자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소지인이 된 지정은행이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제시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지정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를 무시하고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 온 발행은행의 계속적인 언동을 신뢰하고 같은 정도의 불일치가 있는 동 사건의 상업송장 등의 서류도 발행은행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를 수익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발행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이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이유로 지정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150) Courtaulds North America, Inc. v. North Carolina National Bank. 528 F.2d 802 (1975).

151) UCP 600, Article 16, b.

152) 박세운·정용혁 (2013),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국제무역규칙, 한국금융연수원 도서출판부, p.102.

발행의뢰인 측의 공정성 조절 수단으로 사기거래배제의 원칙 하의 지급 금지가처분명령이 있다.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은 일치하는 제시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위·변조된 허위서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지급을 일시 또는 영구히 정지하는 구속력을 갖는 명령이다. 이 경우, 사기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법원에 있는 것으로 지급금지가처분을 청구한 발행은행에 있지 않다. 이는 발행은행의 남용으로 이어질 여지는 다분히 있으나, UCC, Article 5-109, (b)¹⁵³⁾항에 의한 인정 요건에 의거하여 통제되고 있다.

(2) 은행의 추가적 안전판인 면책과 구상권

은행은 신용장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부분적인 면책조항(disclaimer clause)을 적용받음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참여자로서의 유인을 가진다. 면책조항으로 첫째,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¹⁵⁴⁾과 관련한 “① 서류 자체에 관한 사항 ② 서류의 기재에 관한 사항 ③ 서류 작성자의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¹⁵⁵⁾하여 서류심사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¹⁵⁶⁾은 신용장 발행 및 조건변경 등과 관련하여 상호 교신 지연 또는 송신 불능 및 지정은행이 서류의 일치를 확인한 경우 송달 중 망실 그리고 전문용어의 오번역에 대한 면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통제 영역이 아닌 송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불가항력에 관한 면책”¹⁵⁷⁾은 은행이 불가항력 사태로 은행업무가 중단되더라도 면책되며, 업무가 재개된 경우, 중단 기간 동안에 만료된 신용장에 대해서도 결제 또는 매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은 ① 독립·추상성에 의한 보호 ② 면책에 의한 보호 그리고 ③ 구상권에 의한 보호로 다중의 안전판을 확보하고 있다. 신용장 대금의 구상

153) See supra note 59.

154) UCP 600, Article 34.

155) 박세운·정용혁 (2013), 전게서, p.185.

156) UCP 600, Articl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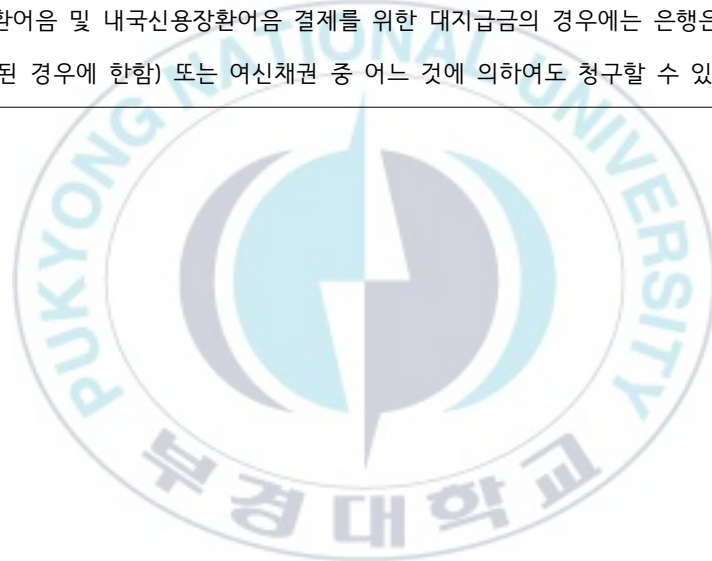
157) UCP 600, Article 36.

권은 서류의 일치성 문제와는 별개로 은행은 외국환거래약정서 상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수익자 또는 발행의뢰인으로부터의 대금 회수 불능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은행의 외국환거래약정서 상 규정¹⁵⁸⁾은 다음과 같다.

[○조 권리의 행사]

① 수출환어음, 내국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은행의 매입대금을 말합니다. 이하 이 약정에서 같습니다.) 및 수출대금채권 매입대금에 관하여 은행은 관련 조항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보아 어음채권(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한함) 또는 여신 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수입화환어음 및 내국신용장환어음 결제를 위한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한함) 또는 여신채권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8) 특수 은행 3곳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시중은행 4곳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 모두 공통적인 내용으로 신용장 대금의 회수불능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Ⅲ. 이해 균형을 위한 가치관점의 사례 검토

신용장에 관한 법리는 판례법에 따라 구축되었다. 신용장통일규칙이 형성되기 전부터 줄곧 서류심사의 엄격성을 논하는 가장 고전적인 법원 판례로 1927년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¹⁵⁹⁾ 사건에서 “거의 일치하는 또는 상응하는 역할을 대체할 서류란 있을 수 없다”라는 금언이 있다. 이는 경미한 하자에서조차도 합리성을 부여할 여지는 없다는 것으로 “일반적 통념(common ground)과 상식(common sense)”¹⁶⁰⁾에 기초하여 엄밀일치의 원칙 아래에 행동하는 것의 안전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대치되는 판례로 1967년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¹⁶¹⁾ 사건에서 “국제금융거래에서는 제시하는 상품의 상태보다는 서류의 정확성에 따라 판단이 좌우된다. 하지만, 엄밀한 구조의 틀에서 일부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라는 배경으로 서류의 엄격성을 전면에 두고 있더라도, 무역시장에서 상당일치의 원칙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후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엄밀일치의 원칙의 강화 또는 엄밀일치의 원칙의 완화 즉, 상당일치의 원칙이 확대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누적되어 온 양대 원칙을 지지하는 판례들을 통해 서류심사 원칙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판례를 보면 1999년 *Krediet 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¹⁶²⁾ 사건에서 엄밀일치의 요건은 모든

159) “There is no room for documents which are almost the same, or which will do just as well ;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 [1927] 27 Lloyd’s List Law Rep. 49, 52.

160)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 [1927] 27 Lloyd’s List Law Rep. 49, 52.

161) *Bunco Lifespan DE Creditor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 385 F. 2 230 (1st Cir,1967).

162) *Krediet 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 [1999] 1 Lloyd’s Rep 219.

상황 그리고 모든 서류들에 대해 정확한 자구 그대로의 일치를 심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은행원들은 제시된 서류들의 조건충족 여부는 온전히 자신의 판단 아래 심사해야만 한다. 신용장조건이 모호한 경우, 은행원에게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서 보듯이 서류 심사에 있어 모든 잣대를 동일하게 엄격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사안별로 판단하되 그 판단이 신뢰성과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면, 판단의 유연성을 가미할 수 있는 재량권 또한 부여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7년 UCP 600의 개정 이후 2021년까지 ICC 은행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견이 제시된 총 216개의 사례 중 신용장의 지향가치 관점의 맥락을 형성하고 가치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26개의 사례”¹⁶³⁾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으로 엄밀일치·상당일치의 개념에서 벗어나 신용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수준에서 신용장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염두한 신뢰성 그리고 유연성과 수용성 및 진정성을 고려한 합리성 그리고 공정성을 필두에 두고 ICC 은행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를 통해 신용장 당사자 간 이해의 균형이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표 6] 2007년 UCP 600 개정 이후 2021년까지 ICC의 Opinon 분포

발행은행 우세		중립·지침제공		지정은행 우세		합 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34개	15.74%	65개	30.09%	117개	54.16%	216개	100%

163) 사례의 간편한 식별을 위하여 ㉠부터 ㉡까지 총 26개의 사례번호를 부여하였다.

1. 신용장의 신뢰성에 관한 사례

그간의 신용장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은 엄밀·상당일치의 원칙 하에서 서류심사의 엄격성의 정도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다. 엄밀일치는 예외 없는 엄격성으로 신용장의 지급보장을 공고히 하고, 일관성 있는 서류 심사 기준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하지만, 엄밀일치의 관점에서 신용장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조건과 지시까지 엄격성이 적용되는지와 수익자의 의무이행과 은행의 의무이행에 관한 문제에 있어 동일한 수준의 엄격성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신뢰성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가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엄격성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신용장 지시와 확실성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하는 것의 저변에는 서류의 일치가 전제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은행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뢰 때문일 것이다. 지급의 확실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신용장조건의 모호성은 배제하면서 명확한 지시와 조건 부여 그리고 지시에 대한 확인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1) 수익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지시

“신용장 발행을 위한 지시, 신용장 자체,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위한 지시 그리고 조건변경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한다”¹⁶⁴⁾ 그리고 “신용장 발행을 위한 모든 지시와 신용장 자체 또는 조건변경이 된 경우 신용장 조건변경을 위한 모든 지시와 조건변경 자체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될 서류

164) UCP 500, Article 5, a.

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¹⁶⁵⁾라는 UCP 500에서의 규정은 신용장 발행 및 조건변경에 대한 것으로 “ISBP 745의 사전고려사항”¹⁶⁶⁾에서 개정·반영하여 취지를 계승하고 있다. 이는 수익자의 조건의 무리 없는 이행에 초점을 두고 지시의 온전함과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em)”¹⁶⁷⁾의 적용으로 조건의 모호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신용장의 발행과 조건변경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 그 정확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발행은행의 의도와 불문하고 신용장의 정확하지 못한 조건 또는 지시에 의해 수익자의 의무이행과 지급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 ④ 일부 사용 가능성을 내포한 신용장의 조건 이행의 부정확한 지시와 관련한 R843/TA816rev¹⁶⁸⁾ 사례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32B (Amount) : USD 60,000.00
- ☐ 43P (Partial shipment) : permitted
- ☐ 45A (Goods description) : 500 bags of dried grain
- ☐ 47A (Additional conditions) :
 1. Where there will be further shipment, beneficiary must present a certificate stating that there will be further drawings under the L/C.
 2. Upon final drawing, a certificate of final shipment should be presented.

165) UCP 500, Article 5, b.

166) ISBP 745, Preliminary Considerations, vi : “서류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각 당사자가 신용장 개설신청이나 조건변경 신청,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때에 세세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회피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 개설의뢰인과 수익자는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서류의 발행인과 기재내용, 그 제시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67)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계약서의 문구를 해석할 때 모호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 : [출처 : 위키백과사전, <https://url.kr/r7zhp3>, (접속일자 : 2022.09.06.)].

168)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3/TA816 rev.

제시 서류로 청구금액 USD 50,000과 선적 상품으로 '360 bags of dried grain'을 명기하였으며, 제시된 수익자 증명서는 '추가 선적이 없을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발행은행은 '수익자가 추가 선적이 없을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선적 미달과 청구금액 미달'의 사유로 지급거절하였다. 하자를 통보받은 지정은행은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지정한 하자는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이 사례에 대해 ICC 은행위원회는 360 bags의 dried grain을 선적하고 USD 50,000을 청구한 서류에 대하여 통지된 선적 미달과 청구 금액 미달을 지정한 하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례 ⑥ 해항선적이 불가능한 내륙도시를 선적항으로 지정한 분명한 조건의 오류가 있는 R749/TA705rev¹⁶⁹⁾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44E (Port of Loading) : Any Czech Republic port

☐ 46A (Documents Required) : Ocean Bill of Lading

지정은행은 상기 조건의 신용장을 받은 즉시, 체코공화국은 내륙국가로 해항(海港)이 없음에도 체코공화국 항구에서 선적하고 해양선하증권 발행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발행은행 앞으로 즉각적인 수정을 요청하였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과 협의를 개시했다'라는 답변을 끝으로 서류 제시 전까지 조건의 수정은 없었다.

수익자는 체코공화국 중부 내륙에 있는 도시인 '이흘라바(Jihlava)'를 수탁지로 기재하고, 북해에 접해 있는 독일의 '함부르크(Hamburg)'를 선적항으로 표시한 선하증권을 제시하였다. 이를 수취한 발행은행은 'B/L 선적항상이'를 사유로 지급거절 통보하였다. 지정은행은 신용장을 통보받은 즉시 명백한 오류가 있는 신용장조건임을 발행은행 앞으로 주지시켰음을 들어

169)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9/TA705 rev.

지급거절의 부당함과 즉각적인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행의뢰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피해가 발행하지 말아야 됨을 항변했다. 그럼에도 발행은행은 ‘우리는 발행의뢰인과 협의를 개시하였으나, 발행의뢰인의 조건변경의 수용 전에 서류를 제시받았다. 따라서, 하자는 유효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체코공화국에는 해항이 없긴 하지만, 선적을 위한 정당한 경로와 관련한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발행의뢰인에게 있는 것이지 수익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통지은행이 불합리함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조건변경 요청 없이 체코공화국 항구에서는 선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수익자는 정당한 조건변경이 있을 때까지 서류제시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품의 운송이 불가능한 신용장조건 하에서 선적에 대한 지급거절의 위험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하자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 © 선적항의 모호한 지역범위를 설정한 R801/TA796rev¹⁷⁰⁾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
| ☐ 44E (Port of Loading) | : Any North European port |
| ☐ 46A (Documents Required) | :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

지정은행은 수익자로부터 북유럽의 범주에 속하는 ‘Antwerp’항에 선적이 되었음을 증빙하는 선하증권을 제시받아 발행은행으로 송부하였다. 발행은행은 ‘Antwerp’항이 신용장에서 명시한 지리적 지역 또는 영역 밖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지급 거절하였다. 또한, 벨기에는 북유럽이 아닌 서유럽에 위치하였다고, 그 근거로 인터넷 웹사이트 (www.mapsofworld.com)를 인용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Any North European Port’의 정의를 분명히 표

170)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1/TA796rev.

시해야 하는 데 실패하였기에 모호성에 대한 위험은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하자의 부당함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2) 은행간 지시사항

신용장은 사용방법에 따라 지급·연지급·인수·매입 신용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용장대금의 원활한 청구를 위해 신용장 field 78 (Instructions to the Paying/Accepting/Negotiating Bank)에서 청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은행간 지시사항으로 일컫는다. 이 은행간 지시사항은 수익자의 이행조건이 아닌 지정은행의 이행조건으로 UCP 600에서 규정하는 불일치의 대상이 아님에도 은행간 지시사항의 위반을 하자로 지적하여 지급거절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신용장의 선택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사례 ① 정당한 제시장소 및 유효장소와 상충되는 서류 제시장소를 기명한 TA857rev2¹⁷¹⁾ 사례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16.06.21, Place in beneficiary's country (Country S)
- ☐ 50 (Applicant) : Country H
- ☐ 59 (Beneficiary) : Country S
- ☐ 41D (Available With ... By ...) : With any bank By negotiation
- ☐ 42C (Drafts at ...) : 30 days after shipment date
- ☐ 48 (Period for Presentation)) : [blank]
- ☐ 78 (Instructions to the Paying/Accepting/Negotiating Bank) :
 - Full set of required document must be received by credit issuing bank [with an address in Country H] withi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therwise, It will be regarded as discrepancy.

171) ICC Banking Commission (2017), Official Opinion, TA857rev.

지정은행은 신용장 하에 제시된 일치하는 서류를 발행은행에게 선적일 이후 18 달력일 및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하였다. 서류를 접수한 발행은행은 두 가지 사유를 들어 지급거절통보하여 왔다. ① 제시기일 경과 (선적일 21 달력일 이내에 서류 미접수), ②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 (발행은행은 Country H에서 유효기일 경과 후 서류 접수).

지급거절통지를 접수한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이 언급한 하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 이유로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기일 및 유효기일 이내에 당행(신용장의 지정은행) 앞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제시기일 및 유효기일 모두 준수한 제시라고 판단하며 지적된 하자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례 ㉔ 서류의 제시 방법을 설정한 R846/TA768rev¹⁷²⁾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78 (Instructions to the Paying/Accepting/Negotiating Bank) :
- Documents should be sent to the issuing bank in 2 lots.

지정은행은 신용장조건인 2 lots 대신 1 lot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발행은행은 그를 사유로 하자통보하였다. 지정은행은 동의하지 아니하고 반박하기를 서류는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발행은행이 수취하였으며, 배송 중 망실 우려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반박에 불구하고 발행은행은 여전히 하자의 유효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하자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발행은행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기대이익과 예측가능성

172)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6/TA768rev.

신용장 거래에서 예측가능성이란 UCP와 ISBP를 토대로 거래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행으로 나타나는 기대이익과 통제해야 할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수익자의 의무이행 기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건의 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기간 조건은 유효기일, 선적기일, 제시기일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변론의 여지 없이 지급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 중 유효기일과 선적기일에 대해서는 문구가 아닌 일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제시기일과 관련한 조건은 MT700 상 field 48 (period for presentation)에 일자를 포함한 문구로 조건화시키고 있다. 조건이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경우,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사례 ㉔ 조기제시(early presentation)를 하자로 지적한 R804/TA826rev¹⁷³⁾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2014.11.21. Issuing bank's counter
- ☐ 44C (Latest Date of Shipment) : 2014.10.30
- ☐ 48 (Period for Presentation) :
 - Documents must be presented at least 21 days after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letter of credit.

상기 조건 하에서 물품은 2014.10.10.자에 선적되었으며, 서류는 2014.10.21.(선적일 11일 후)에 발행은행에 접수되었다. 이에 발행은행은 '조기제시'라는 사유를 들어 하자 및 지급거절 통보하였다. 이에 지정은행은 ICC 은행위원회 앞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하였다. 첫째, 조기 제시가 서류를

173)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4/TA826rev.

거절할 유효한 하자인지 여부, 둘째, 조기 제시가 하자가 맞다면, 발행은행은 UCP 600에 따라 서류를 반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언급한 하자 외에 불일치가 없다면 2014.11.01.(선적일 21일 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ICC 은행위원회는 조기 제시는 지급거절의 정당한 하자로 인정되며, 발행은행은 서류를 반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적일 후 21일과 유효기일 사이에 재제시가 있는 경우, 발행은행은 지급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서류를 반환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면 발행은행은 서류가 제시기일에 부합하는 날(2014.11.01.)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사례 ⑥ 선적일 언급 없이 10 달력일 이내 제시를 요구한 R803/TA789 rev¹⁷⁴⁾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46A (Documents Required) : on board B/L
- ☐ 48 (Period for Presentation) :
 - Documents must be presented not later than 10 calendar days after credit issuance date.

지정은행은 10 달력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그중 선하증권은 6개월 전의 선적일자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발행은행은 ‘선적일 21일 이후 제시’라는 사유를 들어 지급거절 통보하였다.

발행은행의 주장은 제시는 신용장 발행일 이후 10 달력일 이내에 제시가 되었으나,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하증권은 UCP 600, Article 14, c ¹⁷⁵⁾에 근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21일을 경과하여 제시할 수 없다. 선적일자를 특

174)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3/TA789rev.

175) UCP 600, Article 14, c :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하지 않은 명시된 제시 기간이 UCP 600을 자동적 또는 암묵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신용장 하에서 제시된 선하증권은 신용장이 선적일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선적일 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UCP 600, Article 14, i¹⁷⁶⁾의 적용성을 고려하면, 선적일이 한참 경과한 서류도 제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발행은행의 의도가 선적일이 오래된 서류를 인수하고 금융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신용장은 분명히 UCP 600, Article 14, c 를 배제하거나 또는 제시기간의 경과를 허용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제시는 하자가 되는 것이다.

지정은행의 입장으로 신용장은 선하증권의 경과일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신속한 제시만을 명기하였다. 선적이 신용장 발행일보다 선행할 수 있다는 점과 UCP 600, Article 14, i 의 적용성을 고려한다면,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문제의 논점은 선적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UCP 600, Article 14, c 를 암묵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제시기간을 명시하면서 선적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UCP를 적용받은 선하증권을 요구하였다 할지라도 UCP 600 Article 14, c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의 신용장 하에서는 분명 서류는 신용장 발행일 10 달력일 이내에 제시되었고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신용장이 선하증권의 경과일수를 고려하고자 했었다면, UCP 600, Article 14, i 를 배제하거나, 특정일자 보다 이른 서류의 제시를 불허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행의 제시는 일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신용장은 UCP 600, Article 14, c 에 표현된 것과 다른 '제시 기간 규칙'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UCP 600, Article 14, c 를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의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서류는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76) UCP 600, Article 14, i : “서류는 신용장 발행일 이전 일자에 작성된 것일 수 있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발행은행의 결제 시기

신용장 거래의 종결은 발행은행의 결제로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산정의 오류와 지급거절된 이후에 처리 과정에 따라 결제의 지연이 발행하고 있어 기대이익과 위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흔들고 있다.

사례 ⑩ 다건의 선적서류를 합건하여 송부한 R777/TA694¹⁷⁷⁾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41A (Available With ... By ...) : deferred payment

지정은행은 다수의 선적서류세트를 단일 송부장(cover/remittance letter)에 동봉하면서 서류세트별 만기를 계상하여 해당 만기일에 각각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발행은행은 다음의 문언을 통해 지급거절하였다.

- ① 당행은 한 건의 일치하는 서류를 수취하였다. 제시된 서류는 4개의 내륙철도운송장(CIM)이 포함되었으며, 당행은 ISBP 745, Para B2, e. i ¹⁷⁸⁾에 따라 만기를 계산하였다.
- ② 귀 행은 모든 서류를 단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단일 만기일 지급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 ③ ISBP 681에 따르면, 마지막 선적일자가 만기일 계산의 기산일이 된다.
- ④ 오직 하나의 만기일만 유효하다 ; 선하증권을 토대로한 만기일 산정은

177)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77/TA694.

178) ISBP 745, Para B2, e. i : “신용장에서 선하증권과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면서 환어음의 만기를 예컨대 선하증권일자 후 또는 선하증권일자로부터 60일로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하나의 환어음하에서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제시되는 경우에, 가장 늦은 선하증권의 본선적재일이 만기일의 산정에 사용된다” ; 사례의 당초 조항은 ISBP 681, Para 43, f “예를 들어 만약 신용장에서 선하증권일자로부터 혹은 선하증권일자 후 60일과 같이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하나의 환어음에 대해 복수의 선하증권이 제시된다면, 가장 늦은 선하증권 일자가 만기일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이다. 사례 이후 ISBP 745로 개정이 되었으나, 복수의 운송서류 중 최종의 일자가 만기계산의 기산일이 된다는 점은 동일하기에 본문의 조항을 현재의 ISBP 745 버전으로 표시하였다.

ISBP 745, Para B2, e. i, Para B3¹⁷⁹⁾에 기초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을 발송하였다.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반박하였다.

① 당행은 유감스럽게도 총합된 하나의 만기일을 수용할 수 없다. 철도운송으로 2번의 분할선적이 있었다.

② 당행의 제시에서 트럭운송으로 3번의 분할선적이 있었고, 물품은 3대의 트럭에 별개로 선적되었다. 따라서, 3개의 만기일이 각각 설정되어야 한다. ISBP 745, Para B2, e. i 에 대한 당행의 해석은 [선적일 30일 후의 만기]를 지정한 신용장에서, 복수의 내륙철도운송장이 제시되었다면, 최종 운송장의 일자가 만기 계산의 기산일이 될 것이다. 또한, 만기계산의 근거는 상업송장과 그에 따른 청구에 의한 것이지, 은행의 서류 송부장이 아니다.

③ 단일 제시가 곧 자동적으로 하나의 만기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④ 서류 송부장에는 각각의 상환일정으로 상업송장별 번호와 금액에 기초한 청구 금액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의 합계금액도 보여주고 있다. 표시된 상환일정상 ‘선적일 후 [30]일·[45]일 만기’를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장조건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만기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하였다.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 논쟁에 대한 ICC 은행위원회는 지정은행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발행은행은 개별 송장금액에 대하여 서류 송부장에 표시된 대로 각각의 만기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서류 세트에는 단일 송부장으로 제시하는 관행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79) ISBP 745, Para B3 : “B2, e (i - iii)항의 예시에서 선하증권일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동일한 원리는 만기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기준에도 적용된다” ; 사례의 당초 조항은 ISBP 681 Para 44 : “예시에서는 선하증권 일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동일한 원리가 모든 운송서류에 적용된다”이다. 사례 이후 ISBP 745로 개정이 되었으나,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서류가 만기일 계산에 있어 기산일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본문의 조항을 현재의 ISBP 745 버전으로 표시하였다.

사례 ① 지급거절 통보 이후 하자서류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 결제 시기와 관련한 TA891rev¹⁸⁰⁾사례의 신용장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31C (Date of Issue) : 2012.08.31.
- ☐ 40E (Applicable Rules) : UCP LATEST VERSION
- ☐ 41A (Available With ... By ...) : With any bank By negotiation
- ☐ 42C (Drafts at ...) : 90 days from bill of lading date
- ☐ 46A (Documents Required) :
 - 2/3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the
issuing bank and blank endorsed...

조건에 따라 발송된 서류는

- 2012.10.24.일에 발행은행이 접수하였으며,
- 2012.11.01.에 6가지 하자를 나열하여 지급거절 통보하였다. (MT734 상
선하증권과 관련된 하자로 ‘1/3통의 원본 선하증권만 제시됨’ 그리고 ‘서류
는 UCP 600, Article 16, c, iii, b ¹⁸¹⁾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임’[당사자 합
의가 있을 때까지 서류 보관 의사를 표명한 것임]이라고 명시함).
- 2013.01.09. 지정은행은 서류 반환을 요청함.
- 2013.01.23. 지정은행은 서류를 발행은행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반환서류
의 2013.01.22.자 발송표지(cover letter) 상 ‘귀 행의 반환요청에 따라, 당행
은 제시서류 전부를 동봉하여 발송하며, 이 건은 종결할 것이다’라는 문구
가 기재되었다.

반환서류를 받은 지정은행의 검토 결과, 1/2 page가 원본이 아닌 사본임
을 발견하고, 서류를 받은 당일 이 사실을 발행은행에게 통보하며, 나머지
원본 page를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80)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91rev.

181) UCP 600, Article 16, c, iii, (b) :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받고 이
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권리포기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기 이전에
제시자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
실”을 통지서상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2013.01.29. 발행은행의 MT799 회신으로 '선하증권 No. XXX. 의 물품은 2012.10.25.일에 반출되었음을 알리며, 당행은 관련 서류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귀 행도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을 보내왔다.

이후 수차례의 서류 반환요청에도 발행은행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ICC 은행위원회에 다음의 질의를 하였다.

- ① 발행의뢰인이 계약물품을 반출하였기에, 발행은행의 서류 보관이 무용지물이 되는지 여부
- ② UCP 600, Article 16, e¹⁸²⁾는 자의적 규범인가? 발행은행은 언제든지 서류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
- ③ 발행은행의 지급의무가 지급거절통지 즉시 소멸되는지 여부, UCP 600, Article 16, f¹⁸³⁾의 '규정에 따른 행동'이 지급거절통지 이후의 행동, 특히 지급거절된 서류의 처분과 관련한 행동을 포함하는지 여부
- ④ UCP 600에서 지급거절된 서류의 반환과 관련한 기간제한이 없기에, 발행은행의 서류반환이 합당한 처리였는지? 서류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지 12일이 지났으니 발행은행의 지연반환이 UCP 600, Article 16, f의 적용의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⑤ 선하증권 1/2 page의 누락이 발행은행인 접수한 서류 그대로의 반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에 UCP 600, Article 16, f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각각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① 발행은행은 그들이 요청받은 대로 지급할 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서류는 계약물품의 반출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 효력은 유효하다.

182) UCP 600, Article 16, e :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발행은행은, 제16조 c, iii, (a) 또는 (b)에서 요구되는 통지를 한 후라도, 언제든지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183) UCP 600, Article 16, f :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UCP 600, Article 16, e 에 따라 발행은행 자신의 선택으로 언제든지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발행은행은 지체 없이 한 번에 모든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 ③ 불일치가 있고 발행은행이 UCP를 준수하여 지급거절 통지하였다면, 발행은행의 지급 의무는 없다.
- ④ 12일이 장기지연을 나타내는지 여부는 UCP 600 범위 밖의 것이다.
- ⑤ 발행은행은 하자가 용인되고 인수될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서류의 처리 방법을 밝힌 와중에 전체 서류의 반환 실패는 UCP 조항의 위반이다. 또한, 발행은행은 UCP 600, Article 16, f 에 따라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는 의견을 종합했다.

신뢰성과 관련한 사례별 쟁점과 하자인정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신뢰성 관련 사례별 쟁점

하위가치	구 분	Opinion No.	쟁 점	하자인정
확실성	수익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지시	ⒶR843/TA816	신용장 일부 사용의 이행 조건 누락	X
		ⒷR749/TA705rev	내륙도시의 선적항 지정	○
		ⓒR801/TA796rev	선적항 지역범위 설정 누락	X
	은행간 지시사항	ⒹTA857rev2	서류의 제시·유효 기일(장소)의 판단 기준	
		ⒺR846/TA768rev	서류의 제시 방법의 미이행	
예 측 가능성	수익자의 의무이행 기간	ⒻR804/TA826rev	서류의 조기제시	○
		ⒼR803/TA789rev	선적일 언급없는 신용장 발행일 기준 서류의 제시	X
	발행은행의 결제 시기	ⒼHR777/TA694	단일 제시 하에 복수 선적서류의 결제 시기	
		ⒾTA891rev	하자서류를 반환하지 못한 경우의 결제 시기	

2. 신용장의 합리성에 관한 사례

영미의 판례는 “서류의 일치성을 판단함에 있어 합리성(reasonableness) 또는 선의(good faith)를 접목시키는 것은 신용장의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¹⁸⁴⁾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지지하여 왔다. 하지만, 결제 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은 당사자에게 선택받은 후에야 그 효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성은 이미 “UCP 규정”¹⁸⁵⁾과 “판례”¹⁸⁶⁾에 녹아들고 있다. 이는 합리성이 각 당사자의 권익의 효율적 보장과 신용장 관련 법규와 무역 관행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합리성은 신용장 거래 당사자에게 무역결제수단으로서 신용장을 선택한 후 상호 이익의 보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유연성과 수용성 그리고 진정성으로 분별하여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합리적 수준의 유연성

국제간의 거래는 문화와 상관습의 차이에 기인하여, 동일한 정보나 사실을 기술함에 있어 그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이에 유연성을 가미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184) John F. Dolan (2002), A Principled Exception to the Strict Compliance Rule in Trilateral LC Transactions, *Wayne State University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 08-02, p.1.

185) UCP 500, Article 13에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와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을 명문화하고 있다.

18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서류 상호간 불일치

제시 서류의 하자 비중에 있어 서류 상호간 불일치의 비중이 23.13%로 지연선적 24.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¹⁸⁷⁾ 이렇게 높은 하자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류별로 그 발행자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신용장 요구 서류 중 상업송장은 수익자 본인이 발행하며, 그 외 서류는 각각의 행위 주체가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 발행하는 서류의 내용을 상업송장을 기준하여 발행함에 있어, 실수나 관례에 기인하여 상업송장과 상이한 내용을 명기하여 발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례 ① 본인 발행서류인 상업송장과 송장 외 서류의 일치성 차이를 보여주는 R728/TA685rev¹⁸⁸⁾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31C (Date of Issue) : 2008.09.09.
- ☐ 40E (Applicable Rules) : UCP LATEST VERSION
- ☐ 45A (Goods description) :
 - HS No. 0297.14-1020
 - Fresh Frozen Chicken Wing (Rose, A-Grade)
 - Packing : 2kg × 8bags/carton
 - Quantity : 72MT × USD 단가
- ☐ 46A (Documents Required) : Other documents(s) (if any)

논쟁의 쟁점은 ‘송장 이외 서류의 물품 명세 - 위생증명서상 ‘Rose, A-Grade’ 누락이다.

○ 2008.09.30., 2008.10.06., 2008.10.14. 일별로 수익자로부터 3세트의 서류를 제시받고, 일치한다는 판단 아래 발행은행에게 송부하였다. 첫 번째 서류에 대하여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상환받았다. (위생 증명서상 ‘Rose,

187) 김중철 (2018),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매입 및 불일치서류의 처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3(2), p.93.

188)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28/TA685.

A-Grade'의 기재는 없는 상태였다)

○ 2008.10.20., 2008.10.23.일 발행은행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제시에 대하여 지급 거절하였다 : (하자 : 위생 증명서상 'Rose, A-Grade' 누락)

상업송장, 보험서류, 선하증권 그리고 포장명세서상 물품 명세로 '신선 냉동 닭날개 (Rose, A-Grade)'가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위생증명서상에는 '신선 냉동 닭날개'만 기재된 것이다.

지급 거절 건 중 1건은 위생 증명서상 하단부에 다음의 추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 (Rose, A-Grade), HS No. 0207.14-1020
- Packing : 2kg × 8bags/carton
- Credit No. : A1234567BC98765

하지만, 나머지 1건의 위생증명서에서는 'Rose, A-Grade'가 아예 없었다.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에게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그 근거로 UCP 600, Article 14, e¹⁸⁹⁾를 들었다. 그리고, '서류간 상충은 없었다. 귀 행의 지급 거절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며,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예를 들어 A-Grade가 아닌 B-Grade를 표시하였다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발행의뢰인이 위생 증명서상 특정 정보가 기재되기를 의도했다면, 신용장은 분명히 그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위생 증명서는 신용장과 UCP에 비추어 일치하는 것이며, 두 가지 제시 서류 모두 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맺었다.

(2) 유연성의 허용 범위

신용장 거래에 있어 합리적인 견지에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유연성

189) UCP 600, Article 14, e :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용역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을 접목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성은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별(case by case basis)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례의 실증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유연성의 허용 범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 검토하고자 한다.

은행은 서류상의 세부적인 수리적 계산을 점검하지 않고, 오직 총계(수)가 신용장과 제시된 서류 간에 저축이 있는지만을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수익자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세부적인 수리적 계산에 대해 정확한 기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¹⁹⁰⁾ 실무적으로 수량, 단가 그리고 총계에 대해 점검은 하고 있으며, 수량 또는 단가의 값에 따라 총계가 달리 산출되는 수리적 계산에 대하여는 지급거절을 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수리적 계산의 허용 범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사례 ㉔ 서류의 수리적 계산을 문제 삼은 R775/TA754¹⁹¹⁾ 사례의 신용장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32B (Amount) : EUR51003.00
- ☐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 (+/-) 2/2
- ☐ 45A (Goods description) :
- ABC SPRAY 100ML as per PROFORMA INVOICE No. 123
total DAP [Place of delivery] EUR51003.00.

상기 조건 하에서 제시된 상업송장의 물품 명세는 ‘ABC SPRAY 100ML as per PROFORMA INVOICE No. 123, Quantity 27,181pcs, price/pcs 1.874 EUR, total 50,937 EUR, total DAP [Place of delivery]

190)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2013),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p.462.

191)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75/TA754rev.

50,937 EUR'이다.

이를 접수한 발행은행은 상업송장상 수량 27181pcs X 단가 1.874 = EUR 50,937.194 대신 임의절사한 EUR 50,937로 계산 및 기재함을 사유로 하자통보하였다. 제시은행은 '그 차이는 단순한 반올림의 문제로 신용장에서 반올림과 관련한 적용 가능한 조항은 없으며, 신용장조건으로 불허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서류의 정당성과 하자의 부당함을 피력하였다.

단위 개수 × 단가 = 총금액이라는 공식만이 표준이라는 것을 신용장, UCP 그리고 존재하는 어떠한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총금액으로 기재된 EUR 50937를 단위 개수인 27181로 나눈 값은 1.87399286가 되나 이 값을 반올림한 단가를 상업송장 상에 나타난 단가인 1.874로 표기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반박하였다. 하지만, 발행은행은 재반박 없이 하자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에 대한 ICC 은행위원회는 하자통보가 의미하는 것은 EUR 50,937.194가 상업송장 가액으로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로 사용되는 신용장 거래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며, EUR 50,937.19를 절사한 EUR 50,937은 수용가능한 것이다. 또한, 수량과 단가를 곱하는 것은 단지 정보의 정확성을 가하는 수리적 계산의 방법에 불과하다. 총금액에서 수량을 나눈 것은 단가가 신용장과 일치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 그 계산의 결과값인 단가 1.87399286를 올림계산하면 1.874가 된다. 결과적으로 발행은행에서 지적한 하자는 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UCP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방법은 복합운송¹⁹²⁾, 해상운송¹⁹³⁾, 항공운송¹⁹⁴⁾, 내륙(도로,철도)¹⁹⁵⁾ 그리고 특송(우편)¹⁹⁶⁾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송

192) UCP 600, Article 19.

193) UCP 600, Article 20~22.

194) UCP 600, Article 23.

195) UCP 600, Article 24.

196) UCP 600, Article 25.

방법에 적합한 Incoterms 사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 균형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역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과 선례의 답습으로 인하여 운송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Incoterms의 적용으로 하자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례 ㉔ Incoterms의 자의적 사용에 관한 R837/TA765rev¹⁹⁷⁾ 에서 신용장 조건은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 ☐ 44E (Airport of Departure) : Singapore Changi Airport
- ☐ 44F (Airport of Destination) : Mumbai International Airport
- ☐ 45A (Goods description) :
 - XX cases of computer chips, FOB Singapore, as per purchase order No. xxx.
- ☐ 46A (Documents Required) :
 - Full set 'clean on board' air transport documents consigned to the order of the issuing bank

수익자는 물품이 항공으로 운송됨에 따라 상업송장상 신용장조건으로 명기된 Incoterms인 'FOB Singapore'가 아닌 'FCA Singapore Changi Airport'로 표기하였다. 발행은행은 Incoterms 불일치를 사유로 지급거절하였다. 이에 지정은행은 FOB 조건은 항공운송에 적절치 않으며,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조건이다. 더욱이, 구매주문서상 Incoterms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발행의뢰인이 지정한 항공운송 대리인의 이행조건만을 언급하였다. 덧붙여, 항공운송서류상 후불운임 (freight collect) 표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상업송장상 FCA를 기재하였으나 FOB의 운임조건인 후불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한 하자는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197)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37/TA765rev.

발행은행이 재반박하기를 FOB 조건 하에서 운송의 위험은 매도자가 항공기에 본선적재하는 시점에서 이전된다. 하지만, FCA 조건 하에서는 “매도인의 영업 구내 또는 그 밖의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인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¹⁹⁸⁾되는 것으로 Incoterms가 적용되는 운송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신용장에서 나타난 ‘FOB Singapore’은 물품명세의 일부이며, 출처에 대한 어떠한 참조 표시도 없었다. 서류 심사자의 책임은 서류 문면상의 정보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원인계약의 계산 또는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신용장은 원인계약과 독립적 관계로 구매주문서가 Incoterms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서류심사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발행은행이 지정한 하자는 유효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컨테이너 선적의 공간적 개념에 있어 FCL(Full Container Load)과 LCL(Less Container Load)로 구분하고 있다. 컨테이너의 공간적 개념과 컨테이너의 이동 경로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동일시 하는 사례가 있어 살펴보려고 한다.

사례 ㉓ 컨테이너 선적의 형태를 지정한 R810/TA817rev¹⁹⁹⁾ 사례의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 46A (Documents Required) :

- Full set bill of lading consigned and notified to XXX, marked Freight Collect and showing shipment in FCL(Full Container Load) container.

제시된 선하증권은 FCL 컨테이너 선적에 대한 언급 없이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었다.

198) 대한상공회의소 (2019), Incoterms 2020, 대한상공회의소, p.49-50.

199)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10/TA817rev.

Container	Seal No.	Con. Type	PKGS	CBM	KGS	Shipped as
ABC123	S654231	40' Dry Co	983	59.960	5504	CY/CY

제시 서류에 대해 발행은행은 ‘선하증권은 FCL 컨테이너 선적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지급거절하였다. 하지만, 지정은행은 선하증권상 표시된 CY/CY가 FCL 선적을 갈음하는 것으로 불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CY/CY 표시는 신용장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된 하자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 변화를 수렴하는 수용성

신용장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거래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신용장 관련 규칙은 무역 관행의 변화에 순응하여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이에 사적자치의 수용과 관행의 변화와 제도적 보완 사이의 괴리에 대한 입장차이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비서류적 조건

비서류적 조건은 당연히 “무시되어야 할 조건”²⁰⁰⁾이지만, 서류상 비서류적 조건과 상충되는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다면, 서류는 일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품의 부패 가능성, 화인의 표시 등을 신용장상 서류적 조건으로 부여하지 않고 그 행위만을 언급하는 것은 분명한 비서류적 조건으로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은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무시되어야 할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그 실제성 및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몇몇의 판례²⁰¹⁾가 있다. 이와 같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200) UCP 600, Article 14, h.

201) ①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 SLR 565,

인정 범위를 달리하는 관점이 있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㉒ ‘경우의 수’를 조건으로 부여한 TA878rev²⁰²⁾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47A (Additional conditions) :

1. In case of delay in delivery of design, engineering and submission of drawings and documents and/or delay in commissioning period beyond contractual period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applicant, Beneficiary should attach a ‘credit note’²⁰³⁾ for this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as per Clause N. 29.2 of GCC of the contract and submit invoice along with credit note for payment.
2. Similarly in case of non fulfilment of performance guarantee parameters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applicant, Beneficiary should attach a credit note for the amount of L.D. as per Clause N. 27 of GCC of the contract and submit invoices along with credit note for payment.

상기 조건의 신용장 하에서 25번째 선적과 서류제시를 통해 발행은행은 MT754 (Advice of Payment/Acceptance/Negotiation)를 송부하였다. 하지만, 수일이 지난 뒤 ‘발행의뢰인이 프로젝트 시운전의 지연이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운전 기한과 신용장 47a 조건에 따라 하자를 통보함’이라는 내용으로 하자 통보에 갈음하고자 MT799 (free format)를 발송하였다. 이에 지정은행은 다음의 의견을 피력하며 ICC 은행위원회 앞으로 질의하였다.

② Kumagai-Zenecon Construction Pte Ltd. v. Arab Bank plc [1997] 3 SLR 770, ③ Fortis Bank SA/NV Stencor UK Ltd v. Indian Overseas Bank, [2011] EWCA Civ 58 ④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202) ICC Banking Commission (2017), Official Opinion, TA878rev.
203) 수익자(매도인)이 발행의뢰인(매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로 클레임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지급받을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① 지급거절통지로 간주된다면, 하자사항이라고 언급은 하였지만, 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UCP 600, Article 16, c, ii 에 의거하여 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발행은행은 하자를 주장할 권리가 배제된다.²⁰⁴⁾

② 지급거절통지로 간주된다면, 보내온 MT799에 MT734(Advice of Refusal)로 같음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UCP 600, Article 16, c, i 에 따라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field 47a의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으로 UCP 600, Article 14, h 에 따라 무시되는 조건이다. ‘지연이 있는 경우’, ‘미성취가 있는 경우’와 같은 문구는 그러한 조건의 일치를 나타내기 위한 서류를 명시하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지정은행은 제시서류의 일치를 판단할 의무가 없다. 상기와 같은 ‘경우의 수’를 부여한 것은 신용장조건이 아닌 원인계약과 관련한 것이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발행은행이 송부한 전문은 UCP 600, Article 16 에 규정한 지급거절 통보로 볼 수 없으며, 발행은행 지급거절 의사와 하자사유를 특정하지 못했다. 또한, field 47a의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으로 무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행은행은 반드시 결제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례 ② 특정 은행의 발행을 증빙하지 못한 보증서와 관련한 TA887²⁰⁵⁾ 사례에서 신용장은 다음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 46A (요구서류) :

- One photocopy of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PERFORMANCE BOND issued and sent via SWIFT by a reputable vietnamese bank or international bank having a branch office in Vietnam.

204) UCP 600, Article 16, f :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05)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87.

제시된 보증서는 발행의뢰인을 수익자로 하고, 베트남에 지점을 보유한 런던의 한 은행에 발행하였으며, SWIFT를 통해 베트남 현지 은행이 통지 받은 것이었다. 보증서의 하자 여부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다.

첫째,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으로 신용장은 베트남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요구하였고, 실제 보증서도 베트남에 지점을 설치한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제시되었다. “적어도 서류를 심사한다는 것은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엄격한 일치를 넘어 특정한 상황에서는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 상식을 적용하는 것은 신용장의 완결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²⁰⁶⁾라는 인용문을 통해 서류상 베트남의 지점 설치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실제 사실이 부합하기에 제시서류가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의견으로 신용장의 엄격성의 관점에서 발행은행이 베트남에 지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 자체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시된 보증서는 분명히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것이다. 신용장 원칙은 서류 자체의 내용으로 서류의 일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서류심사는 서류가 아닌 다른 경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는 서류 자체적으로 신용장에서 요청한 대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신용장은 베트남 은행 또는 국제은행에서 발행한 이행보증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제은행이 이행보증서를 발행하면서 베트남에 지점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증명을 요하는 서류가 아니기에 비서류적 요건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행은행에서 지적한 하자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 관행의 수용

반복된 관행은 법적 신념이 더해져 국제관습법이 된다.²⁰⁷⁾ 관행이 관습

206) David Meynell (2016), *Notes on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Document No. 470/1261, ICC.

법 또는 판례법의 법원(法源)으로 그 지위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관행의 수용 정도와 일치성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기에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 ② 항공화물운송장(AWB) 작성 관행을 인정하는 TA883rev²⁰⁸ 사례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46A (Documents Required) :

- One original AWB consigned to applicant showing flight number, flight date, contract number, L/C number,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확인은행은 수익자 앞으로 결제하고 발행은행에게 상환 청구하였으나, 발행은행은 ‘AWB 상 운송인명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하였다. 지적된 하자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은행은 이를 수정하여 유효기일 내에 재제시하였다. 하지만, 재제시된 AWB와 관련하여 다시 ‘AWB상 운송인명 불일치(‘Cargolux’ and ‘Panalpina World Transport BV’)'하자가 통보되었다.

[① AWB 우측 상단 : Air Waybill 표제란]

Not Negotiable	AMS 798039
Air Waybill	Panalpina World Transport BV. AS CARRIER
Issued by	AMS AMSTERDAM AIRPORT HOLLAND
Copies 1,2 and 3 of this Air Waybill are originals and have the same validity.	

[② AWB 좌측 중앙 : 정보 표시란]

Airport of Departure (Addr. of First Carrier) and Requested routing							
AMS AMSTERDAM AIRPORT HOLLAND.							
To	by first carrier	Routing and Destination		to	by	to	by
HAN	CARGOLUX						
Airport of Destination				Requested Flight/Date			
TAN SON NHAT * *				CV7526/08			

207)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1,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208) ICC Banking Commission (2018), Official Opinion, TA883rev.

[③ AWB 좌측 하단 : 운송인 서명란]

Panalpina World Transport BV AS CARRIER		
05.APR.2017	AMS	
Executed on (date)	at (place)	Signature of Issuing Carrier or its Agent

[그림 3] 제시된 AWB의 운송인 표시

확인은행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정보란(information field)에 기입한 ‘Cargolux’²⁰⁹⁾는 운송인 전용의 확인 목적하에 관행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운송인은 AWB 서명란에서 식별 가능하며, UCP 600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발행은행이 재반박하기를 당행이 발행한 신용장은 UCP600의 적용을 받으며, 어떤 조항도 은행이 AWB에 ‘Cargolux’라고 표시된 구역과 같은 정보란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시된 AWB는 ‘Cargolux’ and ‘Panalpina World Transport BV’라는 다른 2개의 운송인명을 언급하고 있어, 이 사실이 서류 자체적인 정보 상충과 하자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재제시 된 AWB의 운송인 서명은 UCP 600, Article 23²¹⁰⁾을 충족시키고 있다. AWB는 ‘Panalpina World Transport BV’라는 운송인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운송인 자격으로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by first carrier’란에 있는 별개의 운송업자 명칭의 기재가 단독 운

209) ‘Cargolux’는 룩셈부르크의 화물운송전문 항공사이다.

210) UCP 600, Article 23.

“a. 항공운송서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 운송인 또는

·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것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송인이 AWB를 발행하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변질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은행이 지정한 하자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례 ④ 펄프산업의 관행을 수용하는 R847/TA833rev²¹¹⁾ 사례에서 신용장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45A (Goods description) :

 - Commodity : XXXX PULP
 - Unit : ADMT
 - Quantity : XXX
 - Unit price : US XXX/ADMT

상기 조건에 맞추어 지정은행은 매입을 하고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발행은행은 ‘모든 서류가 총중량보다 순중량이 더 크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지급거절을 통보하였다.

이에 지정은행은 제시된 상업송장은 총중량과 ADMT(air dry weight) 계산법과 결과(총중량 kg × 9.03/90 = ADMT)를 포함하고 있다. ADMT는 송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량이다. 선적중량과 단가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는 의견으로 반박하였다.

발행은행 앞 반박과 병행하여 지정은행은 ICC 은행위원회 앞으로 다음의 근거를 들어 의견을 구하였다.

- ① 펄프(pulp)의 수분함량(ADMT 계산에 표시하고 있음)에 따라, ADMT는 총중량보다 큰 경우가 있다. 제시된 송장의 ADMT는 총중량보다 크고 순중량으로도 표시하고 있다(주로 순중량이 송장 중량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요인에 기인함).
- ② 송장에 더하여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보험증권에도 동일한 순중량을 표시하고 있다.

211)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7/TA833rev.

③ 화물증량과 화물의 송장가액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며, ADMT와 동일한 순증량이 총증량보다 크다는 것이 지급거절의 이유가 될 수 없다.

ICC 은행위원회는 모든 서류에 걸쳐 표시하고 있는 선적증량, 송장에서 계산된 단가 US XXX/ADMT 그리고 순증량(ADMT)에 나타나는 계산 근거는 서류간, 서류자체, 신용장조건과 상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행은행이 지정한 하자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 서류의 진정성

UCP 600에서 진정성은 신용장의 발행과 조건변경의 통지에 있어 그 진위에 관한 진정성인 “authenticity”²¹²⁾로 총 4번을 언급하고 있으며, 서류에 대한 면책을 논하면서 서류 자체의 진위에 관한 진정성인 “genuineness”²¹³⁾로 1번을 언급하고 있다.

우편신용장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에는 진정성에 관한 분쟁이 신용장의 진위에 관한 것이었으나, SWIFT의 활성화 이후에는 서류 자체의 진위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서류 자체의 진정성에 대한 은행의 심사 의무에 있어 서류의 형식,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은 면책된다.²¹⁴⁾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은행의 심사 의무로 서류의 형식상의 정규성에 대한 심사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²¹⁵⁾ 형식상의 정규성은 서류의 필수 기재사항, 발행자의 기명날인, 원본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필수 기재사항은 다른 사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기명날인과 원본성에 대해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서류 발행자의 서명

212) UCP 600, Article 9, b, c, f.

213) UCP 600, Article 34.

214) UCP 600, Article 34.

215) 전순환 (2007),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한울출판사, p.302.

상업송장상 발행주체의 서명과 관련하여 UCP와 ISBP에서 공통적으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상업송장에 서명이 필요 없다”²¹⁶⁾²¹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서류로서 필수 기재사항을 설정하고, 어음법상 서명을 필요로 하는 환어음과 권리증서(title of document)로서 법적 기재 사항으로 서명이 포함되는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과 대별되는 것으로 환어음과 선하증권 그리고 보험증권은 정당한 서명권자가 서명함으로써 어음과 증권의 효력이 진정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서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UCP와 ISBP에서도 해당 서류의 정당한 서명주체 및 서명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요구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반면,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발행하는 발행의뢰인 앞 청구서의 기능을 요하는 기능적 요소의 이행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정보의 기재만을 규정하고 있는 불요식(不要式)의 서류로서 기능의 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류이기에 서명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신용장조건으로 상업송장에 서명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서명된 상업송장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류는 수기,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심볼 또는 기타 모든 기계적 또는 전자적 인증방법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음”²¹⁸⁾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 ⑧ 각기 다른 서명방법의 기준 충족 여부를 묻는 R718/TA691rev²¹⁹⁾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46A (Documents Required) :

- Signed commercial invoice
- Bills of lading consigned to order and blank endorsed

상기 조건 하에서 수익자는 다음의 각기 다른 세 가지 형태의 서명을 한

216) UCP 600, Article 18, a, iv.

217) ISBP 745, Para C10.

218) UCP 600, Article 3.

219)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18/TA691rev.

송장과 선하증권을 제시하였다.

PUKYONG CO.,LTD. Commercial Invoice No. 101 	Commercial Invoice No. 102 	Commercial Invoice No. 103  PUKYONG CO.,LTD.						
<table border="1"> <tr> <th colspan="2">Bill of LADING</th> </tr> <tr> <td>Shipper</td> <td>PUKYONG CO.,LTD.</td> </tr> <tr> <td>Consignee</td> <td>To order</td> </tr> </table>		Bill of LADING		Shipper	PUKYONG CO.,LTD.	Consignee	To order	[The back of a bill of lading] 
Bill of LADING								
Shipper	PUKYONG CO.,LTD.							
Consignee	To order							

[그림 4] 제시된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의 서명

스탬프(stamp)로 기명날인된 원형 안 수익자의 명칭은 영어와 한자가 병기되어 제시되었다.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제시된 세 가지의 서명방법 모두 UCP 600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거래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는 분분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나누어진 입장의 논지를 보면 상업송장 No. 101은 수익자의 회사양식(letterhead)에 상업송장이 작성되었기에, 스탬핑된 서명은 합당하다. 상업송장 No. 102는 수익자명 누락으로 인하여 서명방법이 적절치 않으며, 상업송장 No. 103은 수익자의 명칭을 스탬프 서명 하단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서명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상업송장의 서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ICC 은행위원회는 “상업송장은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수익자에 의해 발행되었음이 나타

나야 한다”²²⁰⁾는 규정을 언급하며 스탬프는 서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스탬프 자체의 사용이 지급거절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탬프가 발행인의 서명으로 상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탬프의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행은행이 ‘수기(manully)서명’된 상업송장을 요구한다면, 신용장조건으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스탬프 서명은 정당할 것이라는 배경 설명하였으며, 송장 No. 101, 103은 영어와 한자로 회사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스탬프 서명 또한 분명하게 발행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송장 No. 102는 송장상에 스탬프 이외에는 회사명을 찾을 수 없으나, 스탬프 안에 회사의 서명으로 고려할 수 있는 회사명을 명기하였기에 서명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 가지 서명 모두 UCP 600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과 지시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의 후면에 백지배서를 하고자 하는 화주의 서명과 관련해서도 전술한 상업송장 No. 102와 같은 맥락으로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례 ⑤ 대리인의 서명권한을 문제삼은 TA890rev²²¹⁾ 사례의 신용장조건은 아래와 같다.

- ☐ 46A (Documents Required) :

 - 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notify applicant and marked freight prepaid.

☐ 47A (Additional conditions) :

 - This credit is subject to UCP,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 2018.11.27. 상기 조건에 하에서 수익자는 ‘ROH on behalf of HAP - the Carrier’로 서명된 선하증권을 제시하였다.

○ 2018.11.29. 발행은행은 ‘선하증권상 서명권한 누락’의 사유로 지급거절

²²⁰⁾ UCP 600, Article 18, a, i .

²²¹⁾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90rev.

통보하였다.

○ 2018.11.29. 지정은행의 입장으로 서명권한은 ISBP 745 222)에서 규정하는 서명방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as agent for the carrier’와 ‘on behalf of the carrier’은 같은 의미로 대리인의 서명권한을 표시한 것이다. 대리인의 역할은 타인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문구의 요지는 운송인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신해서 서명한다는 것이다.

○ 2018.12.03. 발행은행은 다시 주장하기를 선하증권은 운송인으로 ‘HAP’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으나, ‘ROH’의 서명권한은 표시되지 않았다. 대리인이 정당하게 서명하고자 하였다면 ‘ROH as agent on behalf of HAP’로 서명권한을 표시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재반박하였다.

발행은행의 재반박에 대하여 지정은행은 UCP 600, Article 20, a, i 의 “the carrier 또는 a named agent for the carrier 또는 on behalf of the carrier”와 같이 서명할 수 있고, ISBP 745, Para E5, c 의 “the named agent on behalf of (name), the carrier 또는 유사한 문구”로 서명하는 것 즉, 제시된 서류와 같이 ‘ROH on behalf of HAP - the carrier’로 서명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발행은행의 의견과 같이 대리인의 서명권한이 누락된 것으로 지적된 하자가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원본성

복사·인쇄기술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발달로 전자플랫폼에 의한 서류 작성과 출력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한 실정에 불구하고 UCP와 ISBP에서는 전자플랫폼에서 생성된 서류에 대한 원본성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222) ISBP 745, Para E5, c : “대리인이 운송을 위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한 경우에 대리인의 이름이 표시되고, 추가적으로 ‘agent for(name), the carrier’ 또는 ‘agent on behalf of (name), the carrier’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로 서명이 대리인의 것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서류의 다른 곳에서 운송인이 ‘운송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기명대리인은 운송인의 상호를 기재함이 없이 예컨대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로 서명할 수 있다”

이에 사례를 통해 전자 플랫폼 기반 서류에 대한 규정 개정을 발원하고자 한다.

사례 ① 전자플랫폼에서 출력한 서류의 원본성이 문제가 된 TA843rev²²³⁾ 사례에서 발행은행은 제시 서류에 대하여 ‘원본이 아닌 복사본(photocopy) 제시’를 사유로 지급거절하였다.

서류는 전자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수익자가 온라인상에서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PDF 파일로 생성한 후, 수익자의 서명을 부가하여 흑백으로 출력한 것이었다.

전자플랫폼은 온라인 인프라의 구축으로 운송회사, 운송중개인, 보험회사 그리고 상업회의소 등에서 도입이 활발하다. 기업들은 전자플랫폼을 이용하여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들을 서비스제공자의 인증을 득하여 생성·출력하고 있다. 이 출력물은 출력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원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정은행은 전자플랫폼에서 출력된 서류로 컬러로 출력된 서류는 하자지적된 사례가 없었으나 흑백으로 출력된 서류는 원본성이 부인되어 지급거절 빈도가 높다. 컬러 또는 흑백이라는 차이가 서류의 원본성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제시가 전자기록물이 아닌 종이 서류인 점을 들어 서류의 원본성 판단 기준은 eUCP가 아닌 UCP 600, Article 17 이 적용된다. 은행은 서류의 생성과정과는 무관하며, 서류 심사자는 종이 서류가 제시된 대로 문명상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서류가 UCP 600, Article 17 에 기준하여 원본성이 충족된다면, 컬러 또는 흑백 여부에 상관없이 원본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23)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90rev.

사례 ⑩ 온라인상에서 출력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문구를 문제삼은 R745/TA737rev²²⁴⁾ 사례에서 요구서류는 다음과 같다.

☐ 46A (Documents Required) :

-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and certified by the Chamber of Commerce in Beneficiary's country indicating xxx origin of the goods.

수익자가 상업회의소 웹사이트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 PDF 파일로 상업회의소의 스탬프와 모사서명(facsimile signature)이 포함.
(상업회의소의 명칭과 로고 ; 컬러 인자)
- 진위 확인용 ID와 함께 '이 원산지증명서의 온라인상 진위 확인을 위해서,
우리 상업회의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명기.

지정은행은 서류 매입 전, 상기의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UCP 600 Article 4. “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배경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며, 서류 심사자는 문면상의 일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서류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원본성을 충족하기에 원본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합리성과 관련한 사례별 쟁점과 하자인정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4)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5/TA737rev.

[표 8] 합리성 관련 사례별 쟁점

하위가치	구 분	Opinion No.	쟁 점	하자인정
유연성	서류 상호간 불일치	㉠R728/TA685rev	상업송장과 그 외 서류에 대한 엄격성 차이	X
	유연성의 허용 범위	㉡R775/TA754	수리적 계산의 엄격성	X
		㉢R837/TA765rev	Incoterms의 자의적 사용	○
		㉣R810/817rev	컨테이너의 선적 형태	○
수용성	비서류적 조건	㉤TA878rev	'경우의 수'를 조건으로 부여	X
		㉥TA887	특정은행의 발행 미증빙	X
	관행의 수용	㉦TA883rev	AWB의 발행 관행	X
		㉧R847/TA833rev	펄프산업의 중량 측정 관행	X
진정성	서류발행자의 서명	㉨R718/TA691rev	서명방법의 정당성	X
		㉩TA890rev	대리인의 서명 권한	○
	원본성	㉪TA843rev	전자플랫폼 출력 서류의 원본성	X
		㉫R745/TA737rev	진위 확인 문구의 원본성 침해	X

3. 이해 균형 조절을 위한 공정성에 관한 사례

신용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원인계약 당사자들 간의 거래리스크가 배분되고 신용장의 효용을 분배하는 장치이다.²²⁵⁾ 하지만, UCP의 6차에 이르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관련 이해 충돌은 더 줄어들지 않고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역설적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²²⁶⁾

그 간의 신용장 관련 분쟁에 대한 접근방식은 엄밀·상당일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서류의 일치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치의 정도를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치성의 정도라는 점에서 절대적 기준점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신용장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이라는 미완의 장치를 활용함에 있어 보

225) 김기선 (2013), UCP 600 합리성 행위기준의 적용방식: 서류검토기간의 효용과 형평의 균형, 한국무역상무학회지, 57. p.111.

226) 김기선 (2011), 신용장거래관습 최적편성방안의 모색, 무역상무연구, 49, p.112.

조적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이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자구책을 필요로 하였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 공정성은 서류 제시와 일치성 판단이 있는 이후 당사자들이 강구한 자구책의 일환이며, 각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익자 측과 발행의뢰인 측의 수단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수익자 측의 공정성 조절 수단

수익자 측은 신용장 매커니즘 내에서 하자치유와 신의칙(금반언) 및 발행의뢰인의 항변권 포기라는 공정성 조절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발행은행의 “엄밀일치원칙의 남용에 대한 보호장치”²²⁷⁾로 역할하고 있다.

(1) 하자치유 제한

사례 ⑦ 첫 제시 이후 하자치유를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R715/TA677 rev²²⁸⁾ 사례로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47A (Additional conditions) :

- ① Documents must be correct on first presentation. Correction of documents is not permitted.
- ② Negotiating bank must certify that documents were correct on first presentation.
- ③ Provided documents on first presentation [are]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L/C terms, you are authorized to reimburse yourselves with xxx bank.

상기 조건은 발행은행이 수익자로 하여금 서류상 하자의 수정과 수정된 서류의 제시를 금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들은 수익자의

227) Adam, M.I.M. (1993), op.cit., p.199.

228)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15/TA677rev.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한 지정은행은 ICC 은행위원회 앞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그러한 조건을 배제하는 조건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수익자는 어떠한 수정도 없어야 한다는 독소조건을 있는 그대로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수정된 서류를 제시받은 발행은행은 지금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신의칙 위배

사례 ④ 일반약관을 근거로 하자를 통보한 TA913rev²²⁹⁾ 사례에서 신용장은 다음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 46A (Documents Required) :

- Full set of original Insurance Policy/Certificate in assignable form and endorsed in blank, covering ICC A for at least 110% of invoice value, showing 'Claim payable in [Country] in invoice currency' and stating total number of original insurance policy/certificate issued.

확인은행은 제시된 보험증명서상 사전 인쇄된 문구로 ‘손실과 피해의 발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으나 서류가 일치한다는 판단 아래 매입하였다. 발행은행 앞 요구서류 일체를 발송한 후, 확인은행은 2020.05.29.일자로 발행은행으로부터 MT756 (Advice of Reimbursement)를 수신하였으나, MT756에 보험 증명서상 : ‘손실과 피해의 발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되어야 한다’라는 기재는 하자이다. 그럼에도 하자에 불구하고 결제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확인은행은 지적된 하자를 인정하지 못함과 MT756상 청구 최종일이 언급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회신하였다.

이에 발행은행은 ‘ISBP 745, Para K9²³⁰⁾에 따라 언급된 하자사항은 명백

229) ICC Banking Commission (2021), Official Opinion, TA913rev.

230) ISBP 745, Para K9 : “보험서류에서는 보험금지급 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히 유효한 것이다. 보험증명서의 기재 내용인즉슨 모든 청구제시의 최종일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반박하였다. 확인은행은 '보험서류가 지급청구 만료일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보험서류상 특정일에 만료되는 모든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가 명시된 경우라면 K9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제시된 보험서류가 가리키는 것은 손해가 발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구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제시가 특정일에 만료된다는 뜻이 아니며, 단지 손해가 발견되면 3개월 이내에 청구제시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재반박하였다.

발행은행의 마지막 회신으로 '관련 조건은 보험서류의 모든 청구제시의 만료일을 표시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만료일의 표시는 없었지만, 손실과 피해가 발견된 일자를 기산하여 만료일은 언제든지 특정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들어 대응 반박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이 특정의 표현은 ISBP 745, Para K9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행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ISBP 745, Para K22²³¹⁾에 기초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은 보험서류의 일반약관을 심사하지 않음에 따라, 지적된 하자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하자서류의 승인방식 매입

사례 ⑩ 승인방식으로 제시한 서류의 유효기일을 문제삼은 R823/TA78 2232)사례의 신용장조건은 다음과 같다.

- ☐ 40E (Applicable Rules) : UCP 600

☐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2011.12.31., a nominated bank.

☐ 41A (Available With ... By ...) :

- Available by Payment at sight at the counters of a nominated bank.

수익자는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 (신용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용선계약선

231) ISBP 745, Para K22 : “은행은 보험서류상의 일반약관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232)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23/TA782rev.

하증권 제시)가 있음을 통지은행에게 고지하고 승인방식(approval basis)²³³⁾ 하에 확인은행과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통지은행은 제시은행으로서 확인은행 앞으로 서류를 제시하면서 ‘당행은 귀행에 확인없이 명시된 불일치로 인해 승인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문언을 명기하였다.

유효기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한 확인은행은 먼저 제시은행에게 ‘용선계약 선하증권 제시’를 사유로 지급거절통보하고, 이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2.01.03. 발행은행 앞 서류 송부
- 2012.01.10. 발행은행 서류 수령
- 2012.01.24. 발행은행의 확인은행 앞 지급거절통지

제시은행은 서류 접수일 이후 5영업일의 지급거절통지기한을 넘겼으므로 하자에 불구하고 발행은행의 조속한 지급이행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발행은행은 ① 서류는 승인방식으로 제시되었고, ②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 후 서류 접수의 사유를 들어 ‘승인방식과 유효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UCP 600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급거절통보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제시은행은 다시 확인은행에게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으므로 ‘유효기일 경과’는 부당한 하자다. 그리고, 지급거절통지를 적기에 하지 못하였기에 발행은행은 지급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신용장의 유효장소는 지정은행으로 유효기일 이내에 접수되었으며, UCP에 따라 지급거절통보는 서류 접수 이후 5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였기에 발행은행은 지급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33) “승인방식은 수익자가 신용장조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시은행에게 서류 송부 시 각각의 불일치를 표시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도록 요청하는 것” [출처 : letterofcredit.biz, <https://url.kr/na26li>, (접속일자 : 2022.10.19.)].

나. 발행의뢰인 측 공정성 조절 수단

신용장은 원천적으로 발행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신용장 매커니즘 내에서는 지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원인계약의 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신용장이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용장의 영역이 아닌 법의 구속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거래 배제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급금지가처분명령 또한 발행의뢰인의 지급거절 수단으로 전략하는 사례도 있는바,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지급금지가처분의 시기

사례 ⑤ 심사 기간 경과 후 하자 통보와 이후 지급금지가처분명령 건의 유효성과 관련한 R743/TA689rev²³⁴⁾ 사례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51A (Issuing bank) : Bank I, Country B
- ☐ 50 (Applicant) : Company R (Country B)
- ☐ 59 (Beneficiary) : Company H (Country V)
- ☐ 41A (Available With ... By ...) : any bank in Country V, by negotiation
- ☐ 42C (Drafts at ...) : at sight
- ☐ 45A (Goods description) : fresh ginger
- ☐ 47A (Additional conditions) :
 - No. 2. : Goods must be shipped in export standard packing and clearly marked country of origin and shipping marks in each and every package/carton/bag/container.

상기 조건 하에서 Country V의 Bank V가 지정은행으로서 매입하였다.

234)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3/TA689rev.

지정은행과 발행은과의 소통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8.12.10. : 지정은행 앞 수출상 서류 제출 및 발행은행 앞 서류를 제시하였다.
- 2008.12.13. : 발행은행이 서류 접수하였으며, UCP 600에 의거, 최종 서류심사기간은 2008.12.20.로 설정되었으나, 심사기간 경과 및 몇 차례에 걸친 조회 전문 요청에도 발행은행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 2008.12.27. (서류 접수일 이후 14일 경과) : 발행은행은 ‘이 전문을 MT734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SWIFT Message MT999를 보내왔음. 전문 상 하자 내용으로 ① field 47, clause No.2.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고, 각각의 포장, 상자, 포장자루, 컨테이너에 화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② 생강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임에도 수익자는 건식(dry) 컨테이너에 선적하였음을 언급하였다.
- 2008.12.29. : 지정은행은 지정한 하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문을 발송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하였다. ㉠ 발행은행은 서류접수일 익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음 ㉡ 언급된 하자사항은 모두 유효하지 않다. field 47, clause No.2.는 은행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무시되는 비서류적 조건이다. 또한,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계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²³⁵⁾. 따라서,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발행은행은 지체없이 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 2009.01.26. : 발행의뢰인은 물품을 반출하지 못했다는 발행은행의 통보가 있었다 : 세관 당국은 생강의 반이 부패해 사람이 소비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물품 전부를 폐기처리하였다. 또한, City D, Country B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injunction)의 발부로 발행의뢰인은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235) UCP 600, Article 5.

○ 2009.05.11. : 발행은행은 대부분이 현지어로 작성된 고등법원의 결정문을 국제특송을 통해 송달하였다.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은 몇 가지 사안에 있어 신용장의 지급거절 통보 이후에 발생한 내용의 것이었다. 당초 지급거절 통보 시에는 하자사항은 없었으며, 발행은행은 마땅히 지급하여야 했다. 서류 일치의 확인은 지급금지가처분 일자에 앞선 것이었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의 입장으로 발행은행 앞으로 제시된 시점에 서류는 일치하였으며, 발행은행은 UCP 600²³⁶⁾에 따라 지정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지급금지가처분의 효력

사례 ②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TA880rev²³⁷⁾ 사례로 포페이터로서 포페이팅약정에 의거하여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매입대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 발행은행은 신용장 하에서 제시된 서류를 인수한 후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원인계약으로부터 생성된 클레임을 이유로 [Country B]의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았다. 발행은행은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을 사유로 들어 여러 건의 만기가 도래되기 전 각각의 인수 건에 대하여 모두 지급거절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이 당해 신용장상의 사기나 불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발행은행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 차례 교신을 주고받았지만, 만기가 경과된 채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ICC 은행위원회는 “UCP에는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지침이 없다”²³⁸⁾라는 선례를 지적하였으며, 발행은행은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을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그러한 명령의 부과를 사전 차단하거나, 이미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36) UCP 600, Article 7, c (발행은행의 상환 의무).

237) ICC Banking Commission (2018), Official Opinion, TA880rev.

238) ICC Banking Commission (1995-2004), Official Opinion R519/TA556rev.

공정성과 관련한 사례별 쟁점과 하자인정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공정성 관련 사례별 쟁점

당사자	구 분	Opinion No.	쟁 점	하자인정
수익자측	하자치유 제한	㉠R715/TA677rev	하자치유의 원천 차단	X
	신의칙 위배	㉡TA913rev	심사대상이 아닌 일반약관 근거 하자통보	X
	승인방식 매입	㉢R823/TA782	승인방식의 지급거절 통보기한	X
발행 의뢰인측	지급금지가처분	㉣R743/TA689rev	심시기간 경과 후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의 인정	X
		㉤TA880rev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의 무시 가능 여부	X



IV. 이해 균형을 고려한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의 재정립과 UCP 개정 방안

앞 장에서 ICC's Opinion의 사례들을 신뢰성·합리성·공정성으로 대별하여 각각의 쟁점들이 궁극적인 신용장의 지향 가치인 당사자 간 이해 균형의 틀에서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사례별 ICC 은행위원회의 판단 배경을 분석하여 ICC's Opinion이 서류의 일치성 판단에 있어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론적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례에서 나타난 쟁점에 대하여 신뢰성·합리성·공정성이라는 가치 개념 하에서 당사자의 이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의 재정립과 함께 향후 있을 UCP 개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신용장의 신뢰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가.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확실성

(1) 수익자 의무이행 조건의 정확한 지시

분석 ① 일부 사용 가능성을 내포한 신용장의 조건 이행의 부정확한 지시와 관련한 R843/TA816 rev²³⁹⁾ 사례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신용장은 항상 전체 사용이 아닌 부분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신용장조건이 자기모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그 모호성 및 부정확성에 대해서도 발행은행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ISBP에서는 “발행의뢰인은 신용장의 발행이나 조건변경에 관하여 지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

239)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3/TA816 rev.

이 달리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면 신용장이나 그 조건변경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러한 지시를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발행은행은 자신이 발행하는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에 담기는 조건이 모호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²⁴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행은행은 신용장 부분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 사용과 부분사용에 대한 구분된 이행과 서류 조건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은행은 자신과 수익자 보호를 위해 통지받은 신용장조건의 이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용장조건의 수용 여부와 조건변경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 ⑧ 해항선적이 불가능한 내륙도시를 선적항으로 지정한 분명한 조건의 오류가 있는 R749/TA705 rev²⁴¹⁾ 사례에서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오류 조건을 발견하고 발행은행 앞으로 고지하였다. 수익자나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에게 적절한 조건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였으나, 수익자는 조건에 대한 발행은행의 규명이나 신용장의 조건변경없이 선적을 진행하였다. 신용장조건에 대한 이행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신용장상의 수익자(매도인)는 발행의뢰인(매수인)과 계약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의무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신용장조건이 상이하거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수익자(매도인)는 “첫째, 신용장조건변경을 요청하거나, 둘째, 위험을 부담하고 신용장조건을 이행하거나, 셋째, 계약내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은 신용장을 무시하고 선적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매매계약조건과 다른 신용장조건에 따라 선적을 하지 않은 수출자는 계약위반을 사유로 준거법에 따라 수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²⁴²⁾ 주어진 선택지 중에 권장되는 바는 적극적인 조건변경 요청에 따른

240) ISBP 745, Preliminary Considerations, v.

241)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9/TA705 rev.

242)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2013),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p.7.

적정한 조건변경을 통보받은 후 수익자 본인의 의무 이행의 어려움과 서류의 불일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수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건변경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 44A (수탁지) : Jihlava, Czech Republic
- 44E (선적항) : Hamburg, Germany
- 46A (요구 서류) :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즉, 운송서류를 항대항 선하증권이 아닌 복합운송서류를 기준으로 내륙국가인 체코공화국 내의 도시는 수탁지로 설정하고, 해항이 있는 독일의 도시를 선적항으로 지정하여 조건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 ㉔ 선적항의 모호한 지역범위를 설정한 R801/TA796rev²⁴³⁾ 사례에서 신용장조건으로 ‘Any north european port’를 지정하였으나, 지리적인 영역을 보조할 만한 정의²⁴⁴⁾가 없었기에 지정은행은 벨기에 ‘Antwerp’항에 선적된 선하증권을 일치하는 서류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발행은행이 선적항이 북유럽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든 근거(인터넷 사이트)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리적 범위를 정하는 것은 ICC 은행위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UCP 600 에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발행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지 여부는 오직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ISBP 745에서도 “발행의뢰인은 신용장의 발행이나 조건변경에 관하여 지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이 달리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면 신용장이나 그 조건변경의 사용을 가능

243)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1/TA796rev.

244) 북유럽이라 함은 “유럽 북부의 지역으로 명확한 지역 구분은 없으나 노르딕 등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 스웨덴 · 핀란드 · 덴마크 ·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을 일컬을 때가 많음” [출처 : 세계인문지리사전, <https://url.kr/718nid>, (접속일자 : 2022.09.07.)].

하게 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러한 지시를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발행은행은 자신이 발행하는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에 담기는 조건이 모호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²⁴⁵⁾라는 조항에서도 보듯이 발행은행은 신용장 발행이나 조건변경이 모호하거나 신용장의 제조건과 상충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그러한 모호성이 내재된 조건의 부과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하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은행간 지시사항

분석 ⑩ 정당한 제시장소 및 유효장소와 상충되는 서류 제시장소를 기명한 TA857rev2²⁴⁶⁾ 사례를 살펴보면, SWIFT User Handbook에 따르면 field 78은 지급은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지시사항을 명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당 field에 삽입된 모든 지시사항과 조건들은 수익자에게 적용가능한 것이 아니다. 발행은행은 해당 field에 수익자에게 준수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지시사항이나 조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수익자와 연관되어 있는 field 48 (제시기일)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서류의 제시를 선적일 이후 허용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field 48이 분명치 않다면, 제시기일은 기본 제시기일로 선적일 후 21 달력일로 설정될 것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유효기일을 넘길 수는 없다.²⁴⁷⁾ 사례의 신용장은 field 48이 공란이었으며, 수익자는 선적후 21달력일과 유효기일 이내로 서류를 지정은행 앞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발행은행은 수익자 소재국에서 만기가 종료되기를 의도하였으나, 서류는 별도 언급한 기일 내로 발행은행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수익자가 통제해야 하는 제시기일과 같은 조건은 field 78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신용장의 사용을

245) ISBP 745, Preliminary Considerations, v.

246) ICC Banking Commission (2017), Official Opinion, TA857rev.

247) UCP 600, Article 4, c.

하나 이상의 은행과 국가를 달리한 은행을 지정은행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SWIFT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우편이나 TELEX²⁴⁸⁾로 신용장을 통지하였 으며, 이 경우 보통 field 78은 제외하고 수익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SWIFT 계약국이 확대된 후에는 전문 전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신용장의 사용은 ‘모든 은행’을 지정하고 있어, 통지은행과 지정은행이 다를 경우 field 78의 조건은 지정은행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SWIFT MT 700 전체를 교부·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 ㉔ 서류의 제시 방법을 설정한 R846/TA768rev²⁴⁹⁾사례에서 서류의 송부와 관련한 지시사항은 은행 대 은행의 소관업무이다. 신용장의 조건과의 일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급거절통지의 문구상 ‘서류가 2 lots 대신 1 lot으로 송부됨’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 서류의 제시 방법 외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은행이 자신의 판단 혹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명시된 우편송달 지시에 벗어난 행동을 결정한다면, 송달 중 망실을 포함하여 관련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 lots이 아니더라도 발행은행에게 서류가 도달하였다면, 발행은행은 UCP 600의 요구사항에 맞게 서류의 일치성을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비록 서류의 송달 방식이 신용장의 지시와 다르다 할지라도, 서류가 일치한다면 발행은행은 UCP 600 조항²⁵⁰⁾에 따라 반드시 결제 또는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

248) TELEX 통지의 경우 활자 수에 누적하여 요금을 부과하였던 이유로 가급적 그 내용을 줄여 통지하고자 하였으며, 수익자와 관련이 없는 은행간 지시사항은 제외시켜 신용장을 통지하였다. SWIFT 활성화 이후에도 이전의 관행으로 field 78을 제외하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249)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6/TA768rev.

250) UCP 600, Article 7, c : “개설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발행은행의 지급의무의 확실성은 은행간 지시사항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될 것이며, 은행간 지시사항이 혹여 수익자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field 78이 아닌 field 46a 란에 정당한 서류적 조건으로 부가되기를 권장한다.

나. 기대이익의 합치를 기대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

(1) 수익자의 의무이행 기간 준수

분석 ㉔ 조기 제시(early presentation)를 하자로 지적한 R804/TA826rev²⁵¹⁾ 사례로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서류제시의 최대기간을 포함한 조건을 부여한다. UCP 600²⁵²⁾은 기본 규정으로 선적서류 제시 기간 (선적일 21일 이후 및 유효기일 이내)을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의 조속한 선적이행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같은 맥락으로 서류 제시를 위한 가장 빠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발행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례의 조건은 아마도 선적일 21일 후와 유효기일 사이에서 가장 빠른 일자에 제시할 것을 목적으로 부가된 조건으로 해석된다. 발행은행은 선적일로부터 선적일 후 21일까지의 기간 내에 서류가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서류 제시시점에 서류제시기간이 미도래한 상황에서 언급된 ‘조기 제시’는 정당한 하자이다. 발행은행의 지급거절통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지급거절통지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조기 제시된 서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자가 치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류를 반환하는 것은 다소 불필요한 행위로 보인다. 제시은행으로 서류를 반환한다면, 이를 다시 제시해야 되는 제

251)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4/TA826rev.

252) UCP 600, Article 14, c :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시은행의 번거로움과 발행은행은 서류심사 절차를 또 한 번 해야 하므로 행정적·시간적 낭비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제재시 및 심사 기간만큼 신용장대금의 지급은 늦어질 것으로 관련 당사자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하자의 정당성 논의는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으로 일단락될 것이나, 조건을 명확히 인식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는바, 정확한 문구로 조건화하는 것이 마땅하며, 서류의 반환보다는 시간 경과 후 서류일치성이 확보되는 선적일 21일 후 응답일에 발행은행이 결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⑥ 선적일 언급없이 10 달력일 이내 제시를 요구한 R803/TA789rev²⁵³⁾ 사례에서 UCP 600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expressly) 수정(modification)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exclusion)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²⁵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은 UCP 600, Article 1의 문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조항에서 예상하는 입장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조건이 아닌 것이다.

규정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은행이 수정된 조항이나 수정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MT 700의 field 48 (presentation period)에 숫자 ‘15’를 단순 삽입하는 것만으로 선적일 이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UCP 600, Article 14, c 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수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15’라는 숫자의 삽입이 명백히 제시기일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규정에 대한 배제는 수정과는 달리 ‘UCP 600, Article 14, i 가 배제된다’와 같이 해당 규정이 배제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배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신용장은 배제된 언어나 조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건을 필요로 한다. 동 사례에서 UCP 600, Article 14, i 를 배제하고자 했다면, 신용장은 서류의 일자와 관련한 새로운 조건을 명시했어야 한다.

253)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3/TA789rev.

254) UCP 600, Article 1.

UCP 600, Article 1은 신용장의 조건은 수정 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규정 수정은 UCP에서 기대하는 상황과 다르게 문구의 단순 삽입만으로 이루어진다. 발행은행이 거래 여건에 기인하여 신용장조건을 수정하고자 의도했다면, 발행은행은 신용장에서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조금 더 상세한 문구로 조건화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시기일에 관하여 상세한 조건없이 단순히 ‘서류는 선적일 이후 10 달력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UCP 600, Article 14, c를 수정한 것이며, 제시된 서류는 그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규정의 수정과 배제를 가함에 있어 UCP 600, Article 1에서 ‘명시적’이라는 단어의 적용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의 모호성의 대한 책임은 발행의뢰인에게 귀책이 있음²⁵⁵⁾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2) 발행은행의 결제 시기 명확화

분석 ④ 다건의 선적서류를 합건하여 송부한 R777/694²⁵⁶⁾ 사례에서 서류 송부장에는 각각의 상업송장과 개별 청구를 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단일 송부장 하에 복수의 서류세트가 동봉되긴 하였지만 서류 송부장은 각 상업송장 금액과 만기를 구분하여 상세 표시하였다.

당해 거래에서 신용장의 종류는 연지급 신용장으로 환어음은 제시되지 않았다. ISBP 745, Para B2, e. i ²⁵⁷⁾에서는 환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국한

255) ISBP 745, Para v : “발행의뢰인은 신용장의 발행이나 조건변경에 관하여 지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이 달리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면 신용장이나 그 조건변경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러한 지시를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256)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77/TA694.

257) ISBP 745, Para B2, e. i : “신용장에서 선하증권과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면서 환어음의 만기를 예컨대 선하증권일자 후 또는 선하증권일자로부터 60일로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하나의 환어음하에서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제시되는 경우에, 가장 늦은 선하증권의 본선적재일이 만기일의 산정에 사용된다”

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환어음은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따라 환어음의 제시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불구하고, 발행은행은 ISBP 745, Para B2, e. i 를 근거로 하자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하자 지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ISBP 상 ‘신용장에서 선하증권과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면서(When a credit requires a bill of lading and draft)’라는 조항에서 ‘환어음(draft)’의 문구를 삭제하여 신용장 형태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UCP의 개정으로 논란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0] 신용장 사용방법에 따른 환어음 유무

신용장 분류	지급 신용장 Payment L/C	연지급 신용장 Deferred Payment L/C	인수 신용장 Acceptance L/C	매입 신용장 Negotiation L/C
환어음 유무	무	무	유	선택 가능

분석 ① 하자서류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한 TA891rev²⁵⁸ 사례에서 신용장 조건대로 선하증권 2/3통을 포함한 서류가 발행은행 앞으로 제시되었고, 서류를 검토한 발행은행은 여러 하자사항 중 선하증권이 1/3통만 제시되었다는 하자를 지적하였다. 지정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서류를 반환하였다. 하지만, 발행은행은 최초 제시된 1/3통 원본 전부(1통이 2/2 page로 구성되었음)가 아닌 1/2 page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반환된 것이다.

질의서상으로는 선하증권 1/3통 외에 나머지 2/3통에 대한 향방은 알 수 없었다. 그에 비추어 발행의뢰인은 신용장조건 하에 제시된 원래의 선하증권 외에 일부 원본 선하증권을 획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의 경우, 원본 선하증권 전통이 아닌 2/3통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물품의 정당한 통제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선하증권이 발행은행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은행의 배서로 물품이 반출될 수 있는 발행은행

258)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91rev.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선하증권의 교부 전에 이미 물품은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계약물품의 담보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하증권의 2/3통이 아닌 전통이 제시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UCP 600, Article 16, e 에서 하자 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 ‘언제든지(at any time)’로 표현하며, 반환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또한, UCP 600, Article 16은 발행은행이 하자서류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제시인이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without delay)’ 서류를 반환하여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2일의 경과가 ‘지체 없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UCP상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UCP 외에서 그 정당함과 보상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서류 반환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후 UCP 개정에서 서류 반환 시기의 특징이 필요할 것이다.

발행은행의 서류 반환의 실패(일부 누락 포함)는 서류의 일치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²⁵⁹⁾의 배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발행은행은 반드시 결제에 응해야 한다. 제시서류는 결제시까지 제시은행에 있음을 인식하고 발행은행은 제시받은 서류의 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받은 그대로의 반환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신뢰성 기반 사례의 시사점과 지향 가치의 틀에서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접근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신뢰성 기반 ICC 의견별 당사자의 이해 균형과 시사점

하위가치	구 분	Opinion No.	시 사 점			
		쟁 점	신뢰성 기반 당사자의 이해 균형			
확실성	수익자 의무이행 조건의 정확한 지시	ⒶR843/TA816	Ⓐ 신용장의 조건의 정확성 지시			
		신용장의 일부 사용	Ⓝ 조건의 이행 가능성 검토 후 통지			
			◀ Ⓐ	Ⓛ	Ⓝ	▶ ⓑ

259) UCP 600, Article 16, f.

하위가치	구 분	Opinion No.	시 사 점
		쟁 점	신뢰성 기반 당사자의 이해 균형
확실성	수익자 의무이행 조건의 정확한 지시	㉔R749/TA705rev 내륙도시의 해항 선적항	㉔ 이행 불가능한 조건 수락에 대한 책임 ㉔ 신용장조건의 변경 후 서류 제시 ◀ [A] [I] [N] [B] ▶
		㉔R801/TA796rev 선적항의 지역범위 설정	㉔ 모호성에 대한 책임은 발행의뢰인 부담 ㉔ 모호·상충되는 조건의 사전 차단 ◀ [A] [I] [N] [B] ▶
	하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은행간 지시사항	㉔TA857rev2 서류의 제시· 유효기일(장소)	㉔ 서류의 제시·유효 기일(장소)의 일치 ㉔ 수익자 앞 MT700 전체 교부 ◀ [A] [I] [N] [B] ▶
		㉔R846/TA768rev 서류의 제시방법	㉔ 서류의 제시방법 보다 망실에 유의 ㉔ 조건 외 제시 시, 망실은 지정은행 책임 ◀ [A] [I] [N] [B] ▶
364 예 측 가능성	수익자의 의무이행 기간 준수	㉔R804/TA826rev 서류의 조기제시	㉔ 조기제시 하자 정당성○,서류반환 권리○ ㉔ 조기제시 후, 제시기일 도래 시 상환의무 ◀ [A] [I] [N] [B] ▶
		㉔R803/TA789rev 신용장 발행일 기준 서류제시	㉔ UCP 보다 신용장의 제시기간 우선 ㉔ 조건의 수정과 배제의 차이 인식 ◀ [A] [I] [N] [B] ▶
	발행은행의 결제 시기 명확화	㉔R777/TA694 단일제시 하의 복수서류	㉔ 선적서류별 만기 계산 및 상환 ㉔ ISBP 개정 : [B2,e, i] '환어음'문구 삭제 ◀ [A] [I] [N] [B] ▶
		㉔TA891rev 하자서류 중 일부 반환불능	㉔ 서류 반환 실패 → 지급거절 권리 상실 ㉔ UCP 신설 : 하자서류의 반환시기 특정 ◀ [A] [I] [N] [B] ▶

* 문자 표시 : [A] 발행의뢰인, [I] 발행은행, [N] 지정(통지)은행, [B] 수익자, [R] UCP-ISBP 개정

2. 신용장의 합리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가. 서류의 정규성과 기능성을 보충하는 유연성

(1) 본인 발행서류와 타인 발행서류의 엄격성 차이

분석 ㉔ 본인 발행서류인 상업송장과 송장 외 서류의 일치성 차이를 보여 주는 R728/TA685rev²⁶⁰⁾ 사례에서 UCP 600, Article 14, e ²⁶¹⁾에선 상업송

장 이외의 서류는 상충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다.

UCP 에서는 위생 증명서상 신용장에서 주어진 것과 상응하는 물품 명세의 기재나 등급, 사양 혹은 품질을 보여주는 어떠한 상세 명세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질의 사례에서도 신용장에서 위생증명서가 ‘Rose, A-Grade’가 물품명세로 표시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UCP 600, Article 14, f ²⁶²⁾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내용의 기재 요구가 없는 경우, 서류의 기능을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고, UCP 600, Article 14, d ²⁶³⁾에 따라 서류간 상충하지 않는 한 제시 서류는 일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생증명서상 ‘Rose, A-Grade’의 기재누락에 대한 하자 지적은 부당한 것이다. 오히려 H.S No.의 오류(신용장 : 0297.14.1020 ↔ 위생 증명서 0207.14-1020)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그리고, 신용장조건 중 ‘다른 기타 서류 (있는 경우)’ ; ‘Other documents (If any)’와 같이 발행 주체 및 기재될 정보와 특정한 요구 사항이 없는 서류 조건은 수익자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연성의 허용 범위 설정

분석 ㉔ 서류의 수리적 계산을 문제삼은 R775/TA754²⁶⁴⁾ 사례에서 신용장

260)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28/TA685.

261) UCP 600, Article 14, e :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용역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262) UCP 600, Article, 14, f : “신용장에서 누가 서류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그 정보의 내용을 명시함이 없이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다른 어떠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다면, 그 서류의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밖에 제14조 (d)항에 부합하는 한 은행은 제시된 대로 그 서류를 수리한다”

263) UCP 600, Article, 14, d :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data)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64)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75/TA754rev.

은 물품의 과부족(+/-)을 각각 2%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단가에 대한 언급이 견적송장의 참고를 언급하고 있었다. 제시된 상업송장은 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수까지만 표기하고 소수점 이하 자리는 절사한 것이다. 이에 발행은행은 ‘단위 개수 × 단가 =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가 정당 송장가액임에도 임의절사하였다는 점을 들어 하자 통보함에 제시은행은 ‘단위 개수 × 단가 = 총금액’이라는 공식만이 유일한 표준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상업송장상에 표시한 금액은 ‘금액 ÷ 단위 개수 = 단가’의 개념으로 반올림한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표기하였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에 대한 ICC 은행위원회의 결정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사용되는 신용장 거래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되어야 한다는 발행은행의 주장은 불합리한 주장이며, 단가 표시가 없는 신용장 하에서 절사한 상업송장금액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수량과 단가를 곱하는 것을 단지 정보의 정확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수리적 계산의 방법일 뿐이라는 부가 설명을 덧붙였다.

사례의 거래 통화는 EU의 유로화(EUR, €)로 유로화의 화폐단위는 소수점 둘째 자리(cent, ¢)부터 사용되며, 신용장 거래에서 주종을 이루는 미화(USD, \$) 역시 화폐단위 자릿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발행은행의 소수점 논쟁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으며, 또한 신용장에서 단가의 표시를 분명히 하였다면, 신용장의 조건에 비추어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신용장에서 ‘단위 개수 × 단가 = 총액’이라는 일반론적인 시각에 기대어 하자를 지적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ISBP 745에서는 수리적 계산에 있어 서류 및 기재 정보 상호간 상충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²⁶⁵⁾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신용장 금액의 수리적 계산에 있어서 올림, 버림 반올림의 계산법에 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에 금액 표시에 있어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265) ISBP 745, Para A22 : “제시된 서류가 수리적 계산을 표시하는 경우에, 은행은 단지 금액이나 수량, 중량, 포장의 개수와 같은 수치에 관하여 기재된 총계가 신용장이나 명시된 다른 서류와 저축하는지 여부만을 결정한다”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UCP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분석 ① Incoterms의 자의적 사용에 관한 R837/TA765rev²⁶⁶⁾에서 신용장 조건으로 항공운송을 지정하고, 그와 모순되게 항공운송에 적합하지 않는 Incoterms인 ‘FOB Singapore’를 요구하였다. 수익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FOB 조건이 항공운송에 부적절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FOB 조건을 대신 항공운송에 적합한 FCA 조건으로 대체한 것이다. 발행은행의 하자주장의 논지는 신용장조건은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장조건으로 AWB에 본 선적재부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Incoterms로 FOB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FOB 하에서 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되는 시점에 물품의 손해나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는 Incoterms의 개별 조건과 반하는 것으로 운송방법에 불구하고 개별 조건에 수정을 가하고자 의도했다는 것이다.

UCP²⁶⁷⁾에서는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용역의 명세는 신용장상에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신용장에서 ‘FOB Singapore’는 물품명세의 일부로 기재된 것이다. 이에 제시된 상업송장은 ‘FCA Singapore Changi Airport’로 제시되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은행은 원인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서류 문명상 나타나는 정보만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장의 독립성에 따라 구매주문서가 Incoterms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서류심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수익자는 물품 발송과 서류 제시 전에 구매주문서와 신용장조건과의 동일성 여부와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구매주문서와 신용장 간에 불일치가 있었다면, UCP 하에서 제시된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신용장의 조건이 우선하여 심사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인 하자는 정당한 것이다.

266)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37/TA765rev.

267) UCP 600, Article 18, c.

수익자의 이해처럼 FOB 조건은 항공운송에는 부적합하다. 실무자들의 Incoterms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선례의 답습으로 운송경로별 최적의 Incoterms가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FOB, CIF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FCA, CPT, CIP 조건 등의 조건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⁶⁸⁾ 따라서, Incoterms에 대한 적절한 사용이 요구되지만, 신용장에서 Incoterms가 물품명세의 일부로 기재된 경우, 상업송장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도록 Incoterms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ISBP의 규정²⁶⁹⁾에 기초하여 수익자의 신용장조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과 Incoterms의 임의 사용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㉓ 컨테이너 선적의 형태를 지정한 R810/TA817rev²⁷⁰⁾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만재를 뜻하는 것이다. FCL은 컨테이너의 공간 활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화주로부터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된다. CY(Container Yard)/CY는 화주의 구내 지역에서 만재된 컨테이너가 운송인에게 수탁된 후, 선적지 CY를 경유하여 도착지 CY로 운송되는 것이다. 반면, LCL (Less than Container Load)선적은 CFS(Container Freight Station)/CFS를 경로로 운송되며, 컨테이너 하나에 만재가 아닌 여러 화주의 물건이 적입되므로 화물의 집하와 혼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⁷¹⁾

신용장은 'FCL 컨테이너 선적'의 분명한 표기를 요구하였으나, 선하증권은 해당 문구의 표기가 아닌 CY/CY로 대체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CY/CY는 컨테이너의 운송형태 상 FCL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컨테이너의 운송 경로와 컨테이너 적재 공간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CY/CY는 FCL이라는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268) 김종칠 (2015), 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0(4), p.77.

269) ISBP 745, Para C8.

270)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10/TA817rev.

271) 임석민 (2014), 국제운송론[제6판], 도서출판 삼영사, pp.240-242.

UCP 600, Article 14, d 는 서류의 일치성을 국제표준은행관행에 기준하고 있다. 신용장에서 조건화된 FCL이라는 용어의 활용은 서류의 추상성에 기초하여 서류상으로 국한되는 것이지 서류를 넘어 무역실무까지 알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용장의 조건 그대로의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적자치의 인정과 관행의 수용성

(1) 사적자치로서의 비서류적 조건

분석 ㉞ ‘경우의 수’를 조건으로 부여한 TA878rev²⁷²⁾에서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²⁷³⁾는 신용장의 독립성은 신용장 거래의 핵심적 특성이다. field 47a의 조건은 특정한 상황이 도래될 경우, 수익자의 수정된 상업송장과 Credit Note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해당 서류의 제시는 은행이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수익자의 재량권 영역이다. 따라서, 비서류적 조건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이는 무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급거절과 관련하여,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²⁷⁴⁾라는 신용장의 추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신용장 외적인 요소인 ‘경우의 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발행의뢰인에게 결제과정의 통제를 허용한 것으로 발행은행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러한 형태 신용장 발행은 신용장의 취소불능성과 독립성을 위태롭게 한 것이다.

발행은행이 발송한 MT799 는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과 하

272) ICC Banking Commission (2017), Official Opinion, TA878rev.

273) UCP 600, Article 4, a.

274) UCP 600, Article 14, a.

자사항의 특정없는 발행의뢰인의 원인계약 미이행에 관한 단순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UCP 600, Article 16의 지급거절통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지급거절통보에 있어 UCP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발행은행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 따라서,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될 것이며, 발행은행은 즉각적인 결제에 응해야 할 것이다.

분석 ⑩ 특정 은행의 발행을 증빙하지 못한 보증서와 관련한 TA887²⁷⁵⁾ 사례에서 신용장의 요구대로 이행보증서는 국제은행이 발행하였으나, 보증서 상에는 국제은행이 베트남에 지점을 두고 있다는 표시가 없었다. 하지만, 이행보증서나 유사 형태의 보증서를 발행함에 그러한 내용은 국제표준은행 관행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신용장에는 내용에 대해 증명하도록 하는 지시가 없었다. 즉, 비서류적 조건인 것이다. 이는 무시되어야 할 조건이다. 신용장이 “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낼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담겨 있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것이다”²⁷⁶⁾라는 비서류적 조건의 처리 지침은 명확하다. 발행은행이 부여한 조건의 이행과 서류로의 제시가 필요했다면, 이행보증서 발행자에게 별도의 증명서나 기술 내용의 적시를 요구했어야 한다. 서류적 조건으로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되어 무시됨이 당연하며, 발행은행은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비서류적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으로 ① 수익자가 입수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한 조건, ② 발행자로서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건, ③ 서류의 문면상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 ④ 기간 조건,

275)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87.

276) UCP 600, Article 14, h :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이전 규정 UCP 500, Article 13, c “신용장이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표시하지 않고 준수해야 할 조건만을 기재하고 있으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즉, 유효기일, 선적기일, 제시기일 이외의 시간적 조건을 일컫는다.²⁷⁷⁾

신용장에서의 조건(condition)은 기간 조건(terms)과 구분할 필요²⁷⁸⁾가 있다.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이행을 규정하는 것이며, 기간 조건은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기한에 대한 이행을 규정하는 것이다. 기간 조건은 신용장 발행 전문 MT 700에서 각각 field 31d (유효기일 : Date and Place of Expiry), 44c (선적기일 : Latest Date of Shipment), 48 (제시기일 : Period for Presentation)을 두고 있어 수익자의 이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기간 조건 이외의 불확실한 사실을 이행하도록 의도한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명문화하여 신용장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신용장 취급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인정에 있어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²⁷⁹⁾ 사건에서는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이 ① 당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한지 여부, ② 비서류적 조건이 삽입된 경위, ③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 ④ 수익자의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응낙 여부, ⑤ 그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사적자치의 개념으로 비서류적 조건의 제한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77) ICC (1986),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Guidance Notes, ICC Publication No. 416.

27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UCP 600 공식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전국은행연합회 (2007),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상에도 UCP 600, 2조, 9조, 10조, 13조, 19조, 20조, 21조, 23조, 38조와 학술지에서도 해석상 구분없이 ‘terms and condition’을 ‘조건’으로 통칭하여 해석하고 있다.

27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되어야 할 조건이지만, 사적자치라는 법원칙에 입각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신용장의 확실성 특히, 신용장대금 지급의 확실성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당사자는 비서류적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신용장 발행 전에 충분히 조율하여야 할 것이며, 협의 후에도 비서류적 조건이 부가되었다면, 수익자는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판단이 아닌 비서류적 조건의 이행과 그 이행에 대한 서류적 증빙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관행의 법원화(法源化)

분석 ② 항공화물운송장(AWB) 작성 관행을 인정하는 TA883rev²⁸⁰⁾ 사례로 발행은행이 지정한 하자 ‘AWB상 운송인명 (‘Cargolux’ and ‘Panalpina World Transport BV’) 불일치’의 의미는 ‘Cargolux’라는 운송업자의 명칭이 ‘by first carrier’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data)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²⁸¹⁾는 UCP 조항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제시된 AWB에 기재된 운송인(운송사업자)는 ① ‘issued by’란에 ‘Panalpina World Transport BV, AS CARRIER’라는 운송인 명칭과 자격, ② ‘by first carrier’란에 ‘Cargolux’라는 운송인 명칭, ③ 서명란에 ‘Panalpina World Transport BV, AS CARRIER’라는 운송인 명칭과 자격 그리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3개의 운송인 표시 중 ①·③의 운송인은 동일 주체이며, ③에 서명이 부가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 하지만 ②은 수익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보 확인 목적의 운송인 전용란으로 활용된다. ‘Routing and Destination’란의 ‘by first carrier’는 “경유지가 있는 경

280) ICC Banking Commission (2018), Official Opinion, TA883rev.

281) UCP 600, Article 14, d.

우, 첫 구간의 수송 항공사명을 기입하는 영역”²⁸²⁾으로 해당란에 기재된 ‘Cargolux’는 경유 항공사 정보 확인을 위한 기재로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시된 3개의 운송인은 상충되는 정보가 아니며, UCP 조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개정 전(前)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AWB 양식에는 ‘운송인 전용 (For Carrier Use Only)’이라는 제목의 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였기에 AWB 작성에 있어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양식에서는 ‘운송인 전용’이라는 제목을 삭제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된다.

ICC 은행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행적 작성법이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하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AWB와 관련한 업계 관행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관행의 포용과 더불어 양식의 단순화를 통해 혼선을 줄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② 펄프산업의 관행을 수용하는 R847/TA833rev²⁸³⁾ 사례에서 신용장은 ADMT의 물품 단위와 단가 그리고 US XXX/ADMT를 각각 명기하고 있다. 제시된 상업송장도 신용장조건에 맞추어 총중량과 계산 근거를 병기한 ADMT (air dry weight = 총중량 kg × 9.03/90) 그리고 순중량을 각각 표기한 것이다. ADMT 중량의 계산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순중량이 단지 총중량보다 크다는 이유가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총중량과 ADMT는 대기(大氣), 화학적, 물리적 변화와 영향에 따른 잠재적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 ADMT는 증가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서류 심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있을 수 없으며, 수익자는 중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 오히려 발행은행이 지급거절할 빌미를 제공한 것

282) 한국무역협회, <https://url.kr/1dcb7w> (접속일자 : 2022.10.04.)

283)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7/TA833rev.

이다. 발행은행은 상업송장의 물품의 순중량이 총중량보다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지급거절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순중량과 ADMT와의 계산 근거를 충분히 기술하고 있으며 펄프의 특성상 총중량보다 순중량이 큰 경우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의 중량의 차이는 그 특성상 대부분 중량 측정 시점에서의 수분함량에 차이에 기인한다. 동 사례의 경우 신용장과 제시된 상업송장과 제반서류 또한 ADMT를 요구하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신용장에서 건조된 정도 또는 상태와 운송방법 그리고 측정 시기(물품 출하 시점·선적시점·하역시점 등)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으로 보인다. 서류 심사자는 원인계약과 계약물품의 특성과 운송과정을 알 수 없다. 오히려 서류로만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신용장 거래와 이를 통한 상호 이익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서류 심사자에게 추론이 아닌 제시된 서류로 신용장조건의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측정 시기와 방법 그리고 측정 내용에 대한 서류적 증빙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서류 발행자의 책임관계와 서류의 진정성

(1) 주체의 행위 의사를 증빙하는 서명

분석 ⑧ 각기 다른 서명방법의 기준 충족 여부를 묻는 R718/TA691rev²⁸⁴⁾ 사례에서 서명된 상업송장을 요구한 사례에서 수익자가 제시한 상업송장상의 세 가지 형태의 서명은 모두 회사명이 포함된 스탬프를 사용한 서명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서명은 letterhead 양식에 두 번째는 별도의 회사명이 없는 채로 스탬프가 날인되었으며, 세 번째는 스탬프 서명 아래 회사의 명칭을 별도 표시하여 서명주체를 밝혔다. 이에 ICC 은행위원회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스탬프 외에 회사명을 추가 표시하여 발행인을 분별할 수 있으

284)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18/TA691rev.

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번째 서명 형태도 스탬프 안에 회사명을 포함하였기에 서명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명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을 쓰는 것”²⁸⁵⁾이라는 정의 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으며, 서명에는 발행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명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서명된 상업송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UCP나 ISBP 상 상업송장의 서명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향후 상업송장의 서명에 관한 UCP의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이며, 보수적인 입장에서 서명 관련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의 서명방법을 준용하여 기명날인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일 것이다.

분석 ⑤ 대리인의 서명권한을 문제삼은 TA890rev²⁸⁶⁾ 사례에서 지정은행의 주장은 UCP 500에서의 Position Paper No. 4에 근거한다.

운송인을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서명 방법	(a) 운송인 자격을 서류 전면 상 별도 표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①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XYZ Shipping, carrier ----- (signature)
	(b) 운송인 자격을 서류 전면 상 별도 표시하고 있는 경우	②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XYZ Shipping, carrier ----- (signature)
		③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XYZ Shipping ----- (signature)

285) 두산백과, <https://url.kr/mzi6ob>, (접속일자 : 2022.09.25.)

286)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90rev.

운송인을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서명 방법	(b) 운송인 자격을 서류 전면 상 별도 표시하고 있는 경우	④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above named carrier ----- (signature)
		⑤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 (signature)

[그림 5] UCP 500, Position Paper No. 4. 기명대리인 서명 방법

제시된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의 별도 표시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정은행은 'ROH on behalf of HAP - the Carrier'의 대리인 서명이 그림 5의 UCP 500에서의 Position Paper No. 4 도해 ①의 서명방법과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명방법을 규정한 UCP 500, Position Paper No. 4.는 UCP 600의 운송서류의 각 조항으로 편입·개정되었다. UCP 600 Article 20, a, i 에서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라고 개정된 내용에 의하여, 제시된 선하증권의 서명은 대리인의 서명권한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리인의 서명권한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인 'for'는 'on behalf of'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YZ as agent for the Carrier ABC' 또는 XYZ as agent on behalf of ABC'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for'와 'on behalf of'는 대리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적한 하자는 정당한 것이다.

지정은행의 주장은 UCP 500의 서명방법을 토대로 하자의 부당함을 토

로하는 것이나, 신용장조건으로 UCP 600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서명의 정당성은 부인된다 하겠다.

UCP 600 개정 이후에도 서명에 관한 ICC 앞 질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후 개정 시점에 UCP 500에서와 같이 서명의 도해가 있는 ‘Position Paper’를 부록으로 첨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원본성

분석 ① 전자플랫폼에서 출력한 서류의 원본성이 문제가 된 TA843rev²⁸⁷⁾ 사례에서 UCP 600, Article 17, b 에서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한, 은행은 명백하게 원본성을 갖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사례의 서류는 분명히 서류작성자의 서명을 포함하고 있었고, 원본이 아니라는 표시가 없었다.

신용장조건으로 정의하지 않은 서류의 컬러(colour)는 서류의 일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UCP 600, Article 17, c, ii 에서 “은행은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류용지(stationery)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원본으로 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흑백 출력물이 사본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UCP 600, Article 17은 서류의 원본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사본 서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재 기술로는 사본과 원본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UCP 600, Article 17, b 와 c 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서류는 모두 사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복사본이라는 발행은행의 주장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서류가 Article 17, b 와 c 두 조항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287)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90rev.

수 있다면, 원본이 아니라는 근거로 지급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조항 모두를 충족하는 전자적 플랫폼에서 출력된 서류가 단지 흑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본 또는 복사본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의 하자 주장은 부당한 것이다.

현재 UCP 600과 ISBP를 통틀어 전자적 플랫폼에서 생성·출력된 종이 서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단지, 서명과 관련하여 ‘(기계적)전자적 인증방법에 대한 서명’²⁸⁸⁾²⁸⁹⁾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전자적 플랫폼에서의 서류 작성과 출력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가 그 예라 하겠다. 전자적 플랫폼의 저변 확대에 따라 이를 반영한 종이 서류의 원본성에 대한 UCP 규정의 신설이 필요한 대목이다.

분석 ⑩ 온라인상에서 출력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문구를 문제삼은 R745/TA737rev²⁹⁰⁾ 사례에서 UCP 600, Article 4 의 서류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상 명기되어 있는 온라인 진위여부 확인가능 문구 그리고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는 서류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시되어야 할 내용이다. 명기된 내용에서 서류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증거를 내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발행자의 진위여부 확인과 관련한 문구의 삽입 의도는 서류의 발급사실과 위변조 여부의 확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은 발행된 서류의 원본성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며, 은행은 서류의 문면상으로만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며, 인자된 서명은 모사서명(facsimile signature)으로 서명에 대한 UCP규정²⁹¹⁾과 ISBP규정²⁹²⁾을 충족하고 있다.

288) UCP 600, Article 3.

289) ISBP 745, Para 35. a.

290)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5/TA737rev.

291) UCP 600, Article 17, c, i : “수기, 타자, 천고 또는 스탬프된 서명”

292) ISBP 745, Para 35. a : “서명은 자필서명일 필요가 없다. 모사서명(미리 인

수익자가 상업회의소 웹사이트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온라인상 재 출력된 사본으로 보이지 않고, 발행자의 권한과 서명이 원본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일치하는 서류라 판단된다.

합리성 기반 사례의 시사점과 지향 가치의 틀에서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접근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합리성 기반 ICC 의견별 당사자의 이해 균형과 시사점

하위가치	구 분	Opinion No.	시 사 점
		쟁 점	합리성 기반 당사자의 이해 균형
유연성	본인 발행서류와 타인 발행서류의 엄격성 차이	㉠R728/TA685rev 상업송장과 그 외 서류	㉠ 송장 외 서류는 특정의 기재 요구 없는 경우, 상충되지 않고, 기능성 충족하면 인정 ◀ A I N B ▶
	유연성의 허용 범위 설정	㉡R775/TA754 수리적 계산의 엄격성	㉠N 수리적 계산은 총계에 대해서만 심사 ㉡ UCP 신설 : 올림·버림·반올림의 계산법 ◀ A I N B ▶
		㉢R837/TA765rev Incoterms의 자의적 사용	㉠ 운송경로와 일치하는 Incoterms 부여 ㉢ 신용장조건의 자의적 판단 지양 ◀ A I N B ▶
		㉣R810/817rev 컨테이너의 선적 형태	㉢ 컨테이너의 공간과 경로는 다른 개념 ㉠N 은행은 추상성에 기인하여 서류만 심사 ◀ A I N B ▶
수용성	사적자치로서의 비서류적 조건	㉤TA878rev '경우의 수'의 신용장조건	㉢ 독립성에 기인하여 원인계약이행은 무관 ㉠ 비서류적 조건의 무시 ◀ A I N B ▶
		㉥TA887 특정은행 발행 보증서 미증빙	㉢ 비서류적 조건의 사전 협의 및 배제 ㉠N 사적자치로서 비서류적 조건 인정(요건) ◀ A I N B ▶
	관행의 법원화(法源化)	㉦TA883rev AWB의 발행 관행	㉠N AWB의 발행 관행 수용 ㉡ AWB 양식 개정 : '운송인 전용' 삭제 ◀ A I N B ▶

채되거나 스캔된 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도장)이나 기계적 또는 전자적 인증방법으로 서명서류에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위가치	구 분	Opinion No. 쟁 점	시 사 점
			합리성 기반 당사자의 이해 균형
수용성	관행의 법원화(法源化)	④R847/TA833rev 펠프산업의 중량측정 관행	☐ ☒ 펄프산업의 중량측정 관행 수용 ☐ 중량 계측에 대한 시기와 방법 특정 ☐ ☐ ☒ ☐
		⑤R718/TA691rev 서명방법의 정당성	☐ 개정 전까지 B/L, I/P 서명방법 준용 ☒ UCP 신설 : 상업송장의 서명 방법 ☐ ☐ ☒ ☐
진정성 +	주체의 행위 의사를 증빙하는 서명	⑤TA890rev 대리인의 서명 권한	☐ 대리인의 서명권한 특정 필요 ☒ UCP 발간 : 서명 도해 Position Paper ☐ ☒ ☐ ☐
		①TA843rev 전자플랫폼 출력 서류	☐ 전자플랫폼의 출력물의 컬러는 문제 X ☒ UCP 신설 : 전자플랫폼 출력물 규정 ☐ ☐ ☒ ☐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원본성	①R745/TA737rev 진위여부 확인 문구와 원본성	☐ ☒ 진위여부 확인문구는 원본성과는 무관 ☐ 웹상에서 재출력 여부는 확인 필요 ☐ ☐ ☒ ☐

* 문자 표시 : ☐ 발행의뢰인, ☐ 발행은행, ☐ 지정(통지)은행, ☐ 수익자, ☒ UCP-ISP 개정

3. 신용장의 공정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가. 수익자 측 이익 보호

(1) 독소적 하자치유 제한

분석 ⑤ 첫 제시 이후 하자치유를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R715/TA677 rev²⁹³⁾ 사례에서 제시된 서류의 소유권은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서류를 제시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제시하는 지정은행의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은 서류를 반환 받을 권리와 신용장이 부여한 제시기일과 유효기일까지는 서류의 제시가 물리적으로 첫 번째이든 그 이상이든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 권리는 온전히 수익자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익자가 서류상 하자치

293)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15/TA677rev.

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장상 수익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호 이익에 반한다 하겠다.

UCP 600²⁹⁴⁾은 규칙의 변경적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서류 수정을 금하는 독소조건은 발행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발행은행의 의무와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정은행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서류에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건은 수익자의 이익을 극히 침해하는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건의 수정·배제를 기회를 주고 있는 UCP 600의 취지와도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신의칙의 기대

분석 ㉔ 일반약관을 근거로 하자를 통보한 TA913rev²⁹⁵⁾ 사례에서 보험증명서상 사전 인쇄된 문구로 ‘손실과 피해의 발견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을 하자로 지적한 것이다. “보험서류에서는 보험금지급청구를 위한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²⁹⁶⁾의 ISBP 조항은 보험증서의 만료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해당 문구는 지급청구를 위한 만료일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급청구를 해야 할 손실/피해 사실 발견에 대한 고지와 관련한 기간 제한을 언급한 것이다. 더욱이, “은행은 보험서류상의 일반약관을 심사하지 아니한다”²⁹⁷⁾는 ISBP 조문을 준용하여, 제시된 보험서류상 사전 인쇄된 자구가 설령 신용장조건이나 보험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저촉되더라도 은행은 이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²⁹⁸⁾

294) UCP 600, Article 1.

295) ICC Banking Commission (2021), Official Opinion, TA913rev.

296) ISBP 745, Para K9.

297) ISBP 745, Para K22.

298)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2013),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

손실과 피해 및 통보 그리고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신용장 거래 내의 대금지급과는 별개의 것이며, 순전히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대금 청구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보험서류의 일반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 신용장 거래상 하자의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이다.

(3) 승인방식 매입과 하자의 용인

분석 ⑧ 승인방식으로 제시한 서류의 유효기일을 문제삼은 R823/TA78 2299) 사례에서 먼저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장소를 보면, 2011.12.31.과 지정은행의 창구이다. 사례의 신용장은 지급신용장으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은 단순히 신용장을 통지한 통지은행과 지급행위 없이 서류만을 제시한 제시은행의 지위만을 가진다. 따라서, 유효기일의 기준이 되는 은행(장소)이 아니다. 제시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제시받은 확인은행은 치유불가능한 하자를 제시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승인방식을 택하여 발행은행 앞으로 제시하였다. 즉, 신용장의 제시기산점은 확인은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은행에게 신용장 유효기일 내에 제시되었으므로 ‘신용장 유효기일 경과’의 하자는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UCP가 적용되는 제시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향유하는 서류 제시일 이후 5영업일이라는 심사기간이 초과하여 지급거절 통보를 한 것은 발행은행의 실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승인방식의 제시는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이 서류 제시 전에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waiver)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순 서류 제시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를 적용받아 지정은행의 지위를 상실하여 신용장상의 권리가 배제된다. 반면, 승인방식의 제시는 명기한 하자에 불구하고, UCP의 적용과 함께 지정은행의 지위를 온전히 보장받는다.³⁰⁰⁾ 즉, 발행의뢰인의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와 명기된 하자 이외의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신용장 대금의 상환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p.436.

299)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23/TA782rev.

300) letterofcredit.biz, <https://url.kr/na261i>, (접속일자 : 2022.10.19.).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의 사전 합의사실은 발행은행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승인방식이라 할지라도 발행은행은 서류 문면상 일치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서류송부장에 명기된 하자에 대하여 UCP 600, Article 16, b³⁰¹⁾에 의하여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행의뢰인과 하자에 관한 권리포기를 교섭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독자적인 판단’이란 발행의뢰인과의 교섭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³⁰²⁾ 하지만,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지급대리인으로서 발행의뢰인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사전 합의된 권리포기는 인정되어 발행은행은 지급에 응하는 것이다.

나. 발행의뢰인 측 이익 보호

(1) 지급금지가처분의 인정 시기

분석 ㉠ 심사 기간 경과 후 하자 통보와 이후 지급금지가처분명령 건의 유효성과 관련한 R743/TA689rev³⁰³⁾ 사례에서 지급거절통지는 서류제시일 이후 14일이 지난 후에야 보내온 것이었다. “지급거절통지는 제시일의 다음 제5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³⁰⁴⁾는 UCP 600 을 위반한 발행은행의 지급거절통지에 기인하여 “발행은행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³⁰⁵⁾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은 지급거절통지 이후에 발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급금지가처분이 발행은행의 상환의무를 파훼할 수 없는 것이다.

301) UCP 600, Article 16, b :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자에 대한 권리포기(waiver)를 위하여 발행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제14조 (b)항에 규정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302) 전순환 (2007), 전제서, p.147.

303)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3/TA689rev.

304) UCP 600, Article 16, d.

305) UCP 600, Article 16, f.

신용장 거래는 독립·추상성에 의해 기타 계약에 의한 항변과 관계없이 서류만을 취급하는 것이다.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은 신용장 계약과 별개에 의한 항변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독립·추상성의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을 위시한 사기거래배제의 원칙(fraud rule)은 “서류상의 사기”³⁰⁶⁾, “실질적 사기(material fraud)”³⁰⁷⁾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인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판례³⁰⁸⁾를 통해 관습화된 원칙이다. 하지만, 되려 “발행의뢰인의 재정적 상태”³⁰⁹⁾, “수입물품의 경쟁력·수요감소”³¹⁰⁾ 등에 기인하여 발행은행이 지급금지가처분을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³¹¹⁾가 있다.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의 인용”³¹²⁾에 있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만을 강조하면 수익자의 권리 남용가능성이 있으며, 사기거래배제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발행의뢰인의 권리 남용가능성이 상존하는바, 후자의 경우 신용장의 신뢰성과 존재의 근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의 예외로 사기거래배제 원칙은 엄격한 전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다³¹³⁾.

306) 석광현 (2004), 국제신용장거래(國際信用狀去來)와 사기(詐欺)의 원칙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법상의 법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1, p.108.

307) UCC, Article 5-109 (a).

308) ① Szejn v. Schroder Banking Corp. 177 Misc. 719, 31 N.Y.S.2d 631 (1941). ② RD Harbottle (Mercantile) Ltd v.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 [1978] Q.B. 146. ③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Canada [1983] 1 A.C. 168.

309) 김기선 (1998), 서류치유원리적용과 하자면제교섭권활용이 서류검토행위의 합리성에 주는 효과분석 : 신용장거래관습해석의 법경제학적 접근, 무역학회지, 23(2), p.421.

3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28. 2013카합1372 결정.

311) 최근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거래에서 중국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하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사기적인 청구임을 주장하면서 지급거절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에 대해 중국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 인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석광현 (2004), 전제 논문, p.120.

312) 가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2009.1.1.~ 2014.5.31.까지 하급심 결정례 총 95건 중 58건(61%) 의 지급금지가처분이 인용되고 있다 ; 심승우 (2015),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 지급금지가처분 — 우리나라 법원의 하급심 결정례를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11, p.380.

(2) 지급금지가처분의 효력 순위

분석 ②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TA880rev³¹⁴⁾ 사례에서 UCP 600에서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결제 의무를 부담한다”³¹⁵⁾,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결제하여야 한다”³¹⁶⁾라는 조항을 들어 발행은행의 결제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발행은행의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급금지가처분은 발행은행의 의무와 상충되는 것이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신용장 외의 다른 항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인계약으로부터 야기된 지급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분쟁은 분명 UCP 600의 영역이 아닌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다. “발행은행은 지급을 차단하는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을 부당한 사실을 무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발행은행은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한다면 발행의뢰인에게 결제와 관련한 그 어떠한 추가 지시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과 법원 명령의 철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³¹⁷⁾고 UCP 에 부여된 발행은행의 의무와 신의성실에 입각한 대응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품의 품질과 연관되어 부과된 지급금지가처분의 경우, 신의로 행동한 지정은행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 발행은행으로부터 상환받을 지정은행의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³¹⁸⁾라는 의견으로 신용장과 여타 항변과의 무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UCP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그 효력과 규정적용의 순위는 “매매계약의 일반준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강행법규, ② 당사자간의 특약, ③ UCP 순으로 해석된다”³¹⁹⁾

313) 석광현 (2004), 전계 논문, p.120.

314) ICC Banking Commission (2018), Official Opinion, TA880rev.

315) UCP 600, Article 7, b.

316) UCP 600, Article 15, a.

317)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79/TA736rev.

318) ICC Banking Commission (2005-2008), Official Opinion R629/TA672rev.

319) 전순환 (2007), 전게서, p.44.

이러한 효력순위에 따라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은 UCP에 앞서는 강행법규로 간주될 것이며, UCP의 독립·추상성보다 앞서서 발행은행의 지급을 차단하는 데 대한 법적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신용장 거래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서류적 사기와 실제적 사기에 한해서 부과된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물품의 하자과 같은 신용장 영역을 벗어난 클레임과 항변에 기반한 지급금지가처분명령에까지 효력의 순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독립·추상성에 입각한 지정은행의 보호에 관점과 발행의뢰인의 신의칙에 입각한 지급금지가처분의 영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성 기반 사례의 시사점과 지향 가치의 틀에서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접근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공정성 기반 ICC 의견별 당사자의 이해 균형과 시사점

당사자	구 분	Opinion No.	시 사 점
		쟁 점	공정성 기반 당사자의 이해 균형
수익자측	하자치유 제한	㉠R715/TA677rev 하자치유의 원천 차단	㉠ 발행은행의 권한을 벗어난 서류 수정을 금하는 독소조건은 원천 차단 ◀ [A] [I] [N] [B] ▶
	신의칙의 기대	㉡TA913rev 일반약관 근거 하자통보	㉠ 심사대상이 아닌 보험증권의 이면의 일반약관을 근거로 한 하자통보는 무효 ◀ [A] [I] [N] [B] ▶
	승인방식 매입	㉢R823/TA782 승인방식의 지급거절 기한	㉢ 승인방식이라도 발행은행의 일치성 판단과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는 독자적 권리 ◀ [A] [I] [N] [B] ▶
발행의뢰인측	지급금지가처분의 인정 시기	㉣R743/TA689rev 심사기간 경과 후 명령 효력	㉢B 은행의 서류 심사 기간 내 지급금지가처분의 효력 인정 ㉣ UCP 신설 : 지급금지가처분의 인정 시기 ◀ [A] [I] [N] [B] ▶
	지급금지가처분의 효력 순위	㉤TA880rev 지급금지 가처분의 무시	㉢B 지급금지가처분은 강행법규의 일종으로 특약이나 UCP에 우선 적용 ◀ [A] [I] [N] [B] ▶

* 문자 표시 : [A] 발행의뢰인, [I] 발행은행, [N] 지정(통지)은행, [B] 수익자, [R] UCP:ISBP 개정

4. 이해 균형 중심의 지향 가치별 일치성 판단 기준

이상과 같이 ICC 회부된 사례를 신뢰성·합리성·공정성으로 대별하여 시사점과 UCP 개정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이해 균형에 입각한 신용장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신용장의 이해 균형을 위한 지향 가치를 ① 신용장 거래 단계별로 대입하여 적용성을 살펴보고, ②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UCP 등의 개정 제언하고자 한다.

가. 신용장 거래 단계별 최적 지향 가치 적용

신용장 거래 단계별로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최적 지향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14] 신용장 거래 단계별 지향 가치의 적용성³²⁰⁾

신용장 거래 단계	지향 가치	지향 가치의 적용성
신용장 선택	신뢰성	신뢰성은 원인계약 당사자 즉, 수출상과 수입상이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하는데 당위성을 제공
⇓		
서류 제시 및 심사	합리성	합리성은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한 후 신용장대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제시와 심사 과정에서 상호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의무 이행을 촉진
⇓		
심사 후 대응	공정성	공정성은 서류의 일치성 판단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이해 균형 조절수단으로 활용

첫째, 신뢰성은 원인계약 당사자들에게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뢰성 기반 사례들은 원인계약

320) 지향 가치의 적용성은 II장에서 설명한 지향 가치의 개념을 신용장 거래 단계별로 재정리하였음.

당사자인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의 이익 보호 차원의 의견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위 가치인 확실성과 관련하여 수익자 앞 지시사항은 신용장 발행과 조건 변경 시 정확한 지시를 필요로 하며, 조건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발행의뢰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부정확한 지시에 대하여 신용장 거래의 촉진자로서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조건은 사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간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나, 부가된 서류 제시 조건은 수익자의 자기 보호를 위한 이행이 요구된다. 예측가능성에 기반하여 수익자의 의무 이행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UCP에 우선하는 신용장조건의 효력에 따라 제시기간 내 제시가 필요할 것이며, 발행은행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조건의 수정과 배제는 가능하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조치가 요구된다. 발행은행의 결제 시기에 있어 선적 서류별로 만기 계산이 필요하며, 하자 서류의 망실 또는 임의 교부와 같이 반송이 불가할 경우 발행은행은 지급거절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서류의 임의 교부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합리성은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한 후 신용장대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제시와 심사 과정에서 상호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의무 이행을 촉진한다. 합리성은 서류의 일치성 판단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지향 가치이며, 은행의 이익 보호 차원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위가치인 유연성과 관련하여, 본인 발행서류와 타인 발행서류의 엄격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타인 발행서류에 대해서는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류의 정규성과 기능성을 충족하면 일치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연성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case by case로 판단된다는 전제하에 3가지 사례를 통해 유연성의 허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수리적 계산은 유연성 범주 내(○), 컨테이너 선적과 경로는 유연성 중립(△)으로 ICC 의견은 하자를 인정하였지만, 실무적으로는 'FCL = CY/CY'는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Incoterms의 자의적 사용은 유연성

범주 밖(X)으로 판단됨에 당사자는 신용장조건의 자의적 해석과 사용은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수용성과 관련하여 독립성에 기인하여 원인계약은 신용장과 무관하여 어떠한 항변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비서류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시되지만, 제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사적자치로서 인정받는 사례가 있는 바, 신용장 발행 전 비서류적 조건의 서류적 조건화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신용장 용어 중 통칭되어 일컬어진 조건(condition)과 기간 조건(terms)을 구분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비서류적 조건 중 기간 조건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행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그 시장과 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인되며, 그러한 의견의 누적으로 관행의 법원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송장의 서명방법은 선하증권 또는 보험서류의 서명방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대리인의 서명권한 표시는 필수이나 UCP 500의 방법을 토대로 한 하자통보는 발행은행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은행을 포함한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규정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야 될 것이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전자플랫폼 생성 출력물의 분쟁이 증가일로에 있다. 전자플랫폼 기반 출력물의 컬러 또는 흑백의 문제는 원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진위 여부 확인문구 또한 확인 편의를 위한 것이지 원본성 또는 일치성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공정성은 서류의 일치성 판단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이해 균형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성 기반 사례는 수익자 측과 발행의뢰인 측을 불문하고 수익자 측으로 의견에 무게추가 맞추어 있다. 수익자 측 이해 조절 수단인 하자치유를 제한한 것은 발행은행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독소적인 조건으로 원천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의 심사대상이 아닌 보험증권 이면의 일반약관을 근거로 한 하자통보는 신의칙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이러한 하자통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자 서류의 처리 방식 중 하나인 승인방식은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사전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발행은행의 일치성 판단과 발행의뢰인의 권리포기는 독립적이며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발행의뢰인 측 이해 조절 수단으로 지급금지가처분이 있다. 지급금지가처분은 서류 심사 기간 내 판결이 인정되는 점과 지급금지가처분은 강행법규의 일종으로 신용장의 특약이나 UCP에 우선 적용되는 효력 순위를 가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지급금지가처분은 수익자의 사기거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만, 지급거절을 목적으로 지급금지가처분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발행의뢰인의 권리 남용과 수익자의 사기 의도를 차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지급금지가처분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지향 가치 강화 목적 UCP 개정 제언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지향 가치의 강화방안으로 UCP 등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표 15] UCP 등의 개정 제언 정리표

구 분	Opinion No.	제언 내용
신뢰성	㊸ R777/TA694	☐ ISBP 745, Para B2, e, i.에서 '환어음' 문구 삭제
	㉠ TA891rev	☐ 하자서류의 반환 시기 특정에 관한 UCP 개정
합리성	㊸ R775/TA754	☐ 올림·버림·반올림에 관한 계산법 UCP 신설
	㉡ TA883rev	☐ AWB 양식 중 '운송인 전용'란 삭제
	㊸ R718/TA691rev	☐ 상업송장 서명 방법 UCP 신설
	㉢ TA890rev	☐ 서명 도해 Position Paper 발간
	㉠ TA843rev	☐ 전자플랫폼상 종이 출력물 관련 UCP 신설
공정성	㉣ R743/TA689rev	☐ 지급금지가처분의 인정 시기 UCP 신설

신뢰성에 입각한 제언으로 첫째, ISBP 745, Para B2, e, i 에서 ‘신용장에서 선하증권과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만기의 계산은 환어음에 국한되어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 사용방법에 따라 환어음 유무에 불문하고 만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배경과 논란의 차단 목적으로 ISBP 745, Para. B2, e, i 에서 ‘환어음’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자서류의 보관과 반송과 관련하여 UCP 600, Article 16, e 에서 하자서류의 반송은 ‘언제든지’라는 표현으로 모호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라는 표현 대신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신용장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합리성에 기반한 제언으로 첫째, ISBP 745, Para A22에서 총액만을 계산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금액의 소수점 이하 자리 계산에 있어 특정된 자릿수 즉, 소수점 둘째자리와 같은 특정의 지침이 없어 지속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수리적 계산에 있어서 올림·버림·반올림과 같이 계산법을 명확히 할 것과 숫자의 자릿수 특징으로 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림 3]의 양식과 같이 신용장의 조건 이행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이 운송인의 참고 사항으로 사용되는 ‘운송인 전용’란의 정보와의 불일치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IATA에서 AWB의 양식의 단순화를 통해 AWB 양식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업송장은 기본적으로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없다. 하지만, 서명된 상업송장(signed Invoice)의 요구가 대부분으로 서명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나, 서명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상업송장의 서명방법에 있어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의 서명방법의 준용 또는 상업송장 단독의 서명방법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UCP 500 하에서 서명과 관련한 하자빈도가 증가하자, ICC에서는 서명 도해를 포함한 Position Paper를 부록으로 발간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자빈도를 낮춘 바 있다. UCP 600 개정에서 서명과 관련한 변경 내용으로 다시 하자가 빈출하고 있다. 이에 서명과 관련한 도해를 첨부한 Position Paper를 발간하여 하자로 인

한 불필요한 소모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컴퓨팅 기술 발달로 인하여 전자플랫폼에서 종이 서류를 출력하여 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정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플랫폼상 종으로 출력한 서류에 대한 원본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여 합리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성에 관련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은 강행법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급금지가처분명령의 판결이 있는 경우 발행은행은 지급이행을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서류 심사 기간 내 또는 기간 외 여부에 따라 지급금지가처분의 인정 여하가 다른 바, UCP 상 지급금지가처분의 인정 시기를 특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및 우리나라의 IMF 사태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15년 중국의 외환 위기 등 일련의 국·내외금융위기가 있었던 다음 해는 으레히 신용장에서 송금방식으로의 전환이 뚜렷한 기조로 확인되었다.³²¹⁾

신용장이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외면받는 상황에서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예방 방법으로 신용장 방식으로의 전환³²²⁾을 최우선하여 제시하고 있고, 자국의 외환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신용장 의무화”³²³⁾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 거래의 복잡성과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등의 단점보다는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가지는 안정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신용장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의 서류 심사 기준으로 양립하고 있는 엄격일치·상당일치의 원칙은 서류 일치성 판단에 있어 ‘일치 정도’에 함몰되어 있다. 끊이지 않는 일치성 분쟁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으로 서류 일치성 판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이해 균형을 보전할 수 있는 기제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의 당사자의 상호 이해 균형의 관점에서 서류의 일치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류의 일치 정도’에서 벗어나 신용장의 효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장의 지향 가치 기준의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당사자의 이해 균형에 주목하여 화환신용장거래에서의 서류 일치성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신용장 거래의 지향 가치인 신뢰성, 합리성, 공

321) [표2·표3] “우리나라 수출입 방식의 변화” 참조

322) 최시영 (2017.03.31.), 각종 무역사기, 기업들 ‘비상’,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191209>.

323) 신준열 (2022.08.05.), 이집트 신용장 의무화 조치 이후 6개월, 공급부족 우려 현실로, Kotra해외시장뉴스, <https://url.kr/8om6sq>.

정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도출하였다.

세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2007년 UCP 600 개정 이후 2021년까지 ICC 은행위원회 회부 사례 216개 중 가치별 선명성을 보여주는 26개의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포함한 시사점과 향후 있을 UCP의 제언으로 각각의 지향 가치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당사자의 대응방안의 신용장 거래 단계별 지향 가치의 적용성을 대입하였다. 신용장의 선택 단계에서는 신뢰성이 서류 제시 및 심사 단계에서는 합리성, 그리고 심사 후 대응 단계에서는 공정성이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적합한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성은 원인 계약 당사자들이 신용장을 선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가치이다. 하위 가치로 불완전한 신용장조건을 보완하는 확실성과 의무행과 기대이익의 합치를 기대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신뢰성은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업 즉, 외환거래를 전담할 조직이나 인프라가 없는 기업, 신용장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업무를 못 내는 기업과 첫 무역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신용장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여 무역 거래의 성사를 이끌어 낼 것이다.

합리성은 서류 일치성 판단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지향 가치이다. 하위 가치로 서류의 정규성과 기능성을 보충하는 유연성, 사적자치의 인정과 관행의 수용성 그리고 서류 발행자의 책임관계와 서류의 진정성을 도출하였다. 합리성은 그간 양분된 서류 일치성 심사원칙이 보여준 방향성은 ‘서류의 일치 정도’에 함몰되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합리성은 ‘일치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도, 작위 또는 부작위,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신용장이 추구하는 이해 균형과 기대이익의 합치를 이루기 위한 토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정성은 서류의 일치성 판단 이후 당사자들의 이해 균형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위 개념으로 수익자 측의 이익 보호 수단과 발행의뢰인

측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역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가 어느 누구도 일방의 손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가 가지는 이해 균형 조절 수단이 일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보호수단으로 보이나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이나 ICC 은행위원회와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중국에는 쌍방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 거래의 이익과 위험의 균형에 추구하는 공정성은 중국에는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용장의 활용성을 높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온 신용장 서류의 ‘기계적 심사’, ‘일치 정도의 심사’에서 탈피하여,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 일치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신용장 거래의 지향 가치 즉, 신뢰성·합리성·공정성에 기반하여 서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지향 가치들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토대로 신용장이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찾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결제수단으로서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Mohd Hwaidi (2014)³²⁴의 연구에서 엄밀일치의 완화라는 기초 속에 의무이행 보장에 대한 불균형성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기준과 일치성에 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제기에 힘입어 시작하였다.

그간의 연구는 신용장의 특성 및 서류심사의 기본원칙을 강화하는 이론적 측면의 연구와 서류 일치성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시사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상무적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엄밀일치와 상당일치라는 개념을 더욱더 강화하는 연구들이다. 엄밀일치와 상당일치의 원칙 하의 서류 일치성 판단은 끊이지 않는 신용장 서류 일치성 문제에 있어 더 이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UCP나 ISBP와 같은 명문화된 규정이 모든 사례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가 표방하는 상호 이해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일치 정도’에서 벗어난 상위 개념의 서류 일치성 판단의 가치

324) Mohd Hwaidi (2014), op.cit..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신용장 서류 심사에 대한 이론적 가치 정립에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사례에서 나타난 쟁점과 그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UCP 개정 제언은 서류 일치성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출판물〉

강원진 (2013), UCP 600 조항별 신용장분쟁사례, 도서출판 두남.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전국은행연합회 (2007),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2013),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따른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한국금융연수원.

대한상공회의소 (2019), Incoterms 2020, 대한상공회의소.

박세운 (2015), 신용장업무, 한국금융연수원.

박세운·정용혁 (2013),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국제무역규칙, 한국금융

배정한 (2014), 무역대금결제실무, 도서출판 삼영사.

윤광운 (2012), 무역실무와 경영 제2판, 도서출판 탐북스.

이대우·양의동 (2014), 개정8판 신용장론, 두남.

임석민 (2014), 국제운송론[제6판], 도서출판 삼영사.

전순환 (2007),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한울출판사.

ICC (1986),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Guidance Notes*, ICC Publication No. 416.

_____ (2008),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 694, p.66.

David Meynell (2016), *Notes on The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Document No. 470/1261, ICC.

DCInsight Vol. 16 No.1 January - March 2010.

〈연구 논문〉

강호경·임목삼 (2009),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 무역상무학회지, 41, 79-102.

강원진 (2011), 신용장거래에서 사기 및 서류위조에 따른 지급이행과 지급 거절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9, 139-164.

김기선 (1998), 서류치유원리적용과 하자면제교섭권활용이 서류검토행위의 합리성에 주는 효과분석 : 신용장거래관습해석의 법경제학적 접근, 무역학회지, 23(2), 2-36.

_____ (2000), 신용장 거래관습에 있어 서류치유원리와 금반언법리의 적용 방식, 무역상무연구, 13, 515-536.

_____ (2011), 신용장거래관습 최적편성 방안의 모색 : UCP600 제14조 (b)항의 재해석, 한국무역상무학회지, 49, 111-137.

_____ (2013), UCP 600 합리성 행위기준의 적용방식: 서류검토기간의 효율과 형평의 균형, 한국무역상무학회지, 57, 111-135.

- 김병기·김인수 (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변화, BOK 경제연구, 2015-1, 1-39.
- 김병학·홍길중 (2006),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8(3), 99-119.
- 김상조·이재달 (2013), 신용장 서류심사의 일치성 판단기준: 우리나라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9(2), 255-275.
- 김선국 (1992), 신용장의 (信用狀) 엄격일치성과 (嚴格一致性) 그 완화수단 (緩和手段), 경영법률, 5, 443-466.
- _____ (2006), 신용장의 추상성과 관련한 대법원판례에 대한 평석, 상사판례연구, 19(1), 187-218.
- 김영훈 (2003), 신용장통일규칙 제13(a)항의 국제표준은행 관습에 관한 一考, 문화산업연구, 3(2), 51-71.
- 김용일 (2013),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고찰, 통상정보연구, 15(4), 241-265.
- 김재명 (2007), ICC DOCDEX 사례로 본 화환신용장부 운송서류 기재사항의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9, 191-218.
- 김종철 (2009), 화환신용장거래에서 물품명세의 충족여건 - 신용장과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24(3), 221-237.
- _____ (2015), 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0(4), 65-86.

- _____ (2018),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매입 및 불일치서류의 처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3(2), 82-102.
- 김철수 (2016),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엄밀일치원칙에 관한 재고찰, 국제상학, 31(2), 43-59.
- 박남규 (20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교부서류에 대한 엄격일치원칙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51, 187-210.
- 서정두 (2005), 수출거래에서 상업송장의 일치성의무에 관한 관습적 해석 기준, 무역상무연구, 25(2), 99-119.
- 서지민 (2018), 영미 판례법상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엄격일치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 - 2016년 미국의 Margo International v. LHB AG 판결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32(1), 253-281.
- 석광현 (2004), 국제신용장거래(國際信用狀去來)와 사기(詐欺)의 원칙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법상의 법리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1, 105-123.
- 심승우 (2015),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 지급금지가처분—우리나라 법원의 하급심 결정례를 중심으로 -, 민사집행법연구, 11, 369-421.
- 양의동·이대우 (2018), Open Account 방식 채권 매입 금융과 신용장 방식 매입 금융의 실무상 차이점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018년 하계 무역학자 해외학술발표대회, 92-111.
- 유 천 (2018),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상호성-유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4), 289-308.

이신규 (2017), 중소기업의 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 무역연구, 13(4), 263-281.

이윤지·이길남 (2018), 신용장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장 거래수수료 절감
방안:한국에서의 거래 수수료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33(2),
25-41.

이정선 (2017), 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무역학
회지, 42(2), 205-225.

전순환 (2013), ISBP 745에서 송장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관세학회지,
14(3), 189-206.

조성란 (2019), 신용장의 비서류적조건 허용사례로 본 실무상 유의점, 무역
상무연구, 83, 119-138.

최광호 (2018),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대금결제방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3(2), 159-180.

한낙현 (2016), 화환신용장거래의 통관절차 상 수취B/L에서 요구되는 “본
선적재부기”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17(4),
193-212.

Arthur Fama, Jr. (1985), Letters of Credit : The Role of Issuer
Discretion in Determining Documentary Compliance, 53
Fordham L. Rev, 1519-1539.

Boris Kozolchyk (1990),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56 *Brook. L. Rev*, 45-75.

Harvard University (1980), Fraud in the Transaction: Enjoining Letters of Credit During the Iranian Revolution, *Harvard Law Review*, 93(5), 992-1015.

John F. Dolan (2002), A Principled Exception to the Strict Compliance Rule in Trilateral LC Transactions, *Wayne State University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 08-02, 1-18.

Mohd Hwaidi (2014), The story of the English strict compliance principle in letters of credit and its consistency with the UCP.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Regulation*, 29(2), 71-81.

Steven C. Rattner (1985), Letters of credit : A return to the Historical Documentary Compliance Standard, 46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457-485..

<학위 논문>

김능우 (2016),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부당한 인수·지급거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김상조 (2014),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Adam, M.I.M. (1993), *The Perceived Problems in the Utilisation of Letters of Credit : A Comparative Study*, Aberdeen University, Thesis of Ph.D..

Roberto Bergami (2011), *Risk Management in Australian Manufacturing Exports: the Case of Letters of Credit to ASEAN*,
Victoria University, Australia. Thesis of Ph.D..

〈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28. 2013카합1372 결정.

Banco Espanol de Credito v. State Street Bank & Trust Co., 385 F. 2d
230 (1967).

BasicNet S.p.A. v. CFP Servs. Ltd., 120 A.D.3d 97, (2014).

Beyene v. Irving Trust Co., 762 F.2d 4 (1985).

Blonder & Co., Inc. v. Citibank, N.A., 808 N.Y.S.2d 214 (2006).

Consolidated Aluminum Corp. v. Bank of Virginia, 544 F.Supp. 386 (1982).

Courtaulds North America, Inc. v. North Carolina National Bank. 528 F.2d 802 (1975).

Davis O'Brien Lumber Co. v. Bank of Montreal. [1951] 3 D.L.R. 536.

Dulien Steel Products, Inc., of Wash. v. Bankers Trust Co., 189 F. Supp. 922 (S.D.N.Y. 1960).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 Ltd., [1927] 27 Lloyd's List Law Rep. 49, 52.

First Wisconsin Nat. Bank of Milwaukee v. Forsyth Leather Co., 189 Wis. 9, (1926).

Flagship Cruises, Ltd. v. New England Merchants Nat. Bank of Boston, 569 F.2d 699 (1978).

Fortis Bank SA/NV Stemcor UK Ltd v. Indian Overseas Bank, [2011] EWCA Civ 58.

In re Sanders-Langsam Tobacco Co., Inc., 224 B.R. 1 (1998).

International Banking Corporation v. Irving Nat. Bank, 274 F. 122, (1921).

JH Rayner & Co Ltd v. Hambro's Bank Ltd, [1943] K.B. 37.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 SLR 565.

Krediet 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 [1999] 1 Lloyd's Rep 219.

Kumagai-Zenecon Construction Pte Ltd. v. Arab Bank plc [1997] 3 SLR 770.

Nissho Iwai Europe PLC v. Korea First Bank, 99 N.Y.2d 115 (2002).

North Am Mfrs Export Associates Inc v. Chase Nat Bank of City of New York, 77 F.Supp. 55 (S.D.N.Y. 1948).

Old Colony Trust Co. v. Lawyers' Title & Trust Co. 297 F. 152 (1924).

O'Meara Co. v. National Park Bank of N.Y. 239 N.Y. 386, (1926).

Peoples State Bank of Clay County v. Gulf Oil Corp., 446 N.E.2d 1358 (1983)

Philipp Bros., Inc. v. Oil Country Specialists, Ltd. 787 S.W.2d 38 (1990).

RD Harbottle (Mercantile) Ltd v.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 [1978] Q.B. 146.

Roman Ceramics Corp. v. Peoples National Bank, 714 F.2d 1207 (1983).

Synergy Center, Ltd. v. Lone Star Franchising, Inc. 63 S.W.3d 561 (2001).

Sztejn v. Schroder Banking Corp. 177 Misc. 719, 31 N.Y.S.2d 631 (1941).

Toyota Tsusho Corp. v. Comerica Bank, 929 F.Supp. 1065 (1996).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Canada [1983] 1 A.C. 168

Urquhart Lindsay & Co Ltd v. Eastern Bank Ltd [1922] 1 K.B.318.

Vallejo v. Wheeler [1774] 98 E.R. 1012.

Voest-Alpine Intern. Corp. v. Chase Manhattan Bank, N.A. 707 F.2d 680 (1983).

〈ICC Banking Commission's Opinion〉

ICC Banking Commission (1995-2004), Official Opinion R519/TA556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5-2008), Official Opinion R629/TA672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75/TA754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79/TA736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15/TA677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18/TA691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28/TA685.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3/TA689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5/TA737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49/TA705 rev.

ICC Banking Commission (2009–2011), Official Opinion, R777/TA694.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10/TA817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37/TA765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1/TA796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3/TA789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04/TA826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23/TA782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3/TA816 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6/TA768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2–2016), Official Opinion, R847/TA833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7), Official Opinion, TA857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7), Official Opinion, TA878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8), Official Opinion, TA880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8), Official Opinion, TA883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87.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90rev.

ICC Banking Commission (2019), Official Opinion, TA891rev.

ICC Banking Commission (2021), Official Opinion, TA913rev.

〈관 련 법 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Uniform Commercial Code (1995 Revision)

ICC (1993),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___ (2007),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___ (2011), Incoterms® 2010.

___ (2013),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745.

___ (2019), Incoterms® 2020.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두산백과, <https://url.kr/mzi6ob>.

법률저널, <https://url.kr/bqan51>.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191209>.

세계인문지리사전, <https://url.kr/718nid>

위키백과사전, <https://url.kr/c7qok3>.

위키백과사전, <https://url.kr/r7zhp3>.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s://url.kr/sb249h>.

한국무역협회, <https://url.kr/1dcb7w>.

Kotra해외시장뉴스, <https://url.kr/8om6sq>.

letterofcredit.biz, <https://url.kr/na261i>.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중심으로

오 동 민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국 문 요 약

국제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은 급부로서 물품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 의무를 동반한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확약하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행 위험인 신용위험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의만으로는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당사자의 상업신용을 은행이 개입하여 신용장을 매개로 은행신용으로 전환시켜 상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이 주창하는 바는 '당사자 간의 이해 균형'으로 대변된다. 서류의 독립·추상성이라는 신용장의 특징은 '당사자 권리 보호의 균형'으로 틀을 이루고 있으며, 서류심사의 일반 해석원칙의 관점에서 엄밀일치의 기준과 상당일치의 기준이 양립하며 무역시장에서의 변화에 기대어 '이익 균형'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왔다.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자 신용장 생태계에 녹아든 신용장의 특징과 서류심사의 기준이 무역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을 보호하고 무역을 촉진시키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성상들이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대리인인 은행 즉, 발행은행, 지정은행은 각각의 고객사인 수출상과 수입상 앞 신용공여에 대한 별도의 구상권을 가짐에도 과도한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 계약 당사자들에게 신용장 사용을 억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엄격·상당일치라는 양립된 원칙의 틀을 벗어나 신용장 거래가 지향하는 가치 특성을 도출하여 신용장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고 향후 있을 UCP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UCP 600 개정 이후 2021년도까지 'ICC 은행위원회'에 회부된 사례 216개 중 26개를 엄선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신뢰성·합리성·공정성이라는 신용장 거래의 지향 가치를 도출하였다. 신뢰성에서는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하위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성에서는 유연성, 수용성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하위 개념을 접목하였다. 공정성은 수익자측과 발행회인측으로 분별하여 당사자간의 공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신용장 거래의 지향가치의 신용장 거래 단계별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성은 원인계약 당사자들에게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합리성은 원인계약 당사자들이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한 후 신용장대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제시와 심사 과정에서 상호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특성을 지닌다. 공정성은 서류의 일치성 판단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이해 균형 조절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향 가치 강화 목적하에 지향 가치별로 UCP 개정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요 제언으로 신뢰성에서는 하자서류의 반환 시기를 특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합리성에서는 서명 도해가 포함된 Position Paper의 발간과 전자플랫폼에서 생성·출력된 종이 서류에 관한 판단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합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정성 관련 제언은 지급금지가처분은 강행법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급금지가처분의 인정 시기를 특정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온 신용장 서류의 '기계적 심사', '일치 정도의 심사'에서 탈피하여 신용장 거래의 세 가지 지향 가치 즉, 신뢰성·합리성·공정성을 기반한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 일치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용장 거래가 표방하는 상호 이해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일치 정도'에서 벗어난 상위 개념의 서류의 일치성 판단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신용장 서류 심사에 대한 이론적 가치 정립에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사례에서 나타난 쟁점과 그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UCP 개정 제언은 서류 일치성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화환신용장, 신용 위험, 이해 균형, 일치 정도, 신뢰성, 합리성, 공정성.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for Compliance Judgment of
Documents in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 Focusing on Balance of Interests of the Parties

Oh, Dong-M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international trading transactions, the seller bears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s a benefit, and the buyer accompanies the obligation to pay for it as a counter benefit.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shall not be guaranteed only by the good faith of the parties to the credit risk, which is a risk of default on the obligations each party committed to the other party. Accordingly, banks can intervene and convert the party's commercial credit to bank credit through a letter of credit, forcing the fulfillment of mutual obligations.

What UCP advocates is represented by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The characteristics of L/C, the independence and abstractness of documents, are framed by the 'balance of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interpretation principle of document examination, the criteria of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re compatible, and the 'profit balance' has been appropriately adjust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rade market.

The problem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C and the criteria for document

examination, which have been incorporated into L/C ecosystem to keep pac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show limitations in protecting exporters and importers who are parties to trade transactions and promoting trade. Rather, these characteristics strengthen the role as excessive protection devices and discourages the use of L/C to basic contract parties, even though banks, which are agents of trade transaction parties, i.e., issuing banks, and designated banks, have separate rights of indemnity for credit offerings to exporters and importer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redefine the criteria for compliance judgment of L/C documents and suggest future UCP revisions by deriving the value characteristics of L/C transactions beyond the framework of the compatible principles of strict and substantial compliance.

To this end, 26 out of 216 cases referred to the 'ICC Banking Committee' from the UCP 600 revision in 2007 until 2021 were carefully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derived the oriented value of L/C transaction : reliability, reasonableness, and fairness.

For reliability, we derived the sub-concepts of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For reasonableness, we grafted the sub-concepts of flexibility, acceptability and genuineness. For fairness, we tried to examine it between the parties by dividing fairness into the beneficiary's side and the issuer's side.

Through this study, firs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oriented value of L/C transaction to each stage. Reliability provided justification for the parties to the original contract in choosing L/C as a means of trade settlement. Reasonableness has the characteristic of facilitat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at a reasonable level to protect mutual interests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and examining documents for claiming the letter of credit after the parties to the cause contract have chosen L/C as the means of trade settlement. Fairness focuses on being used as a means of adjusting the

balance of interests of the results after judging the compliance of documents. Secon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oriented value, We would like to propose an UCP revision for each oriented value. As a major suggestion, Reliability of L/C can be improved by specifying the timing of the return of the defective document. Reasonableness should be strengthened by publishing Position Paper containing signature illustrations and adding criteria for judging paper documents generated and printed on electronic platforms. As for the proposal related to fairness, since the injunction of payment has the effect of compulsory laws, fairness should be improved by specifying the timing of recognition of the injunction.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new criteria for compliance judgment of documents in L/C transactions based on the three oriented values, namely reliability, reasonableness, and fairness, breaking away from the 'mechanical examination' and 'examination of the degree of compliance' of L/C documents.

Presenting the value criteria for judging the compliance of documents of a higher concept that deviates from the 'degree of compliance' to reach the mutual interests balance advocated by L/C transactions will be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theoretical value of L/C document examining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case, their implications, and proposals for UCP revision will be of practical help in managing the risk of document compliance.

Key-words :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credit risk, balance of interests, degree of compliance, reliability, reasonableness, fairness.